

발 간 등 록 번 호

51-B552667-000026-01



서울시복지재단 2023-45

서울시 발달장애인 안심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서울시 발달장애인 안심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책임연구

김현승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이의정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위촉연구원)

제 출 문

서울시장 귀하

「서울시 발달장애인 안심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결과물을 제출합니다.

2023. 11.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상철

연구요약

1 연구개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 돌봄 및 활동 공백 해소 필요
 - 2014년 국내 최초로 특정 장애유형만을 위한 단독 법률로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은 과거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발전에 중대한 변곡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
 - 동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전국 광역단위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기 시작되었고,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발달장애인 서비스 진입장벽은 한층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남
 - 하지만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도전적 행동, 신변처리의 어려움, 의사소통능력의 제약, 중복장애 등을 가진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거부를 당하고, 이용하게 되더라도 비자의적 서비스 종결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음
- 정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정책 환경 진단
 -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약자복지’를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
 - 이러한 기조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자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조항(제29조의3)이 신설되었고,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임
 - 이에 본 연구는 정부가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관할 주간 돌봄 및 낮 활동 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대상의 규모와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실천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의 정책변화에 조응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됨

❖ 연구의 내용과 방법

○ 연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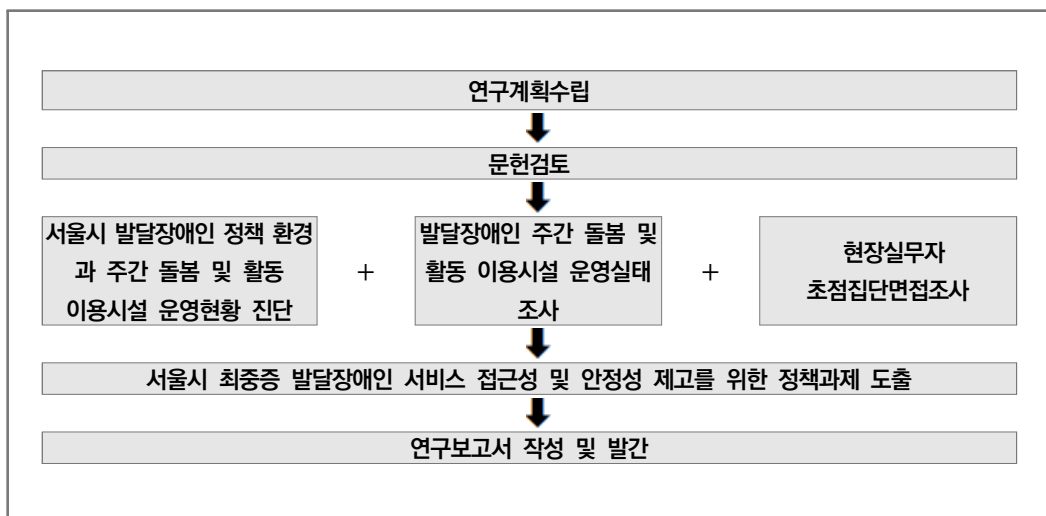
- 연구대상은 발달장애인에게 주간 돌봄 및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관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사업 수행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이들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임

○ 연구내용

- 서울시 발달장애인 인구구조 변화 추이와 서울시 발달장애인 정책 환경 진단
- 서울시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및 활동 서비스 이용시설의 운영실태 파악
- 현장실무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 및 안정성 담보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
- 정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과제 제안

○ 연구방법

- 서울시 거주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규모와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의 운영 실태 파악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문헌검토, 서울시 발달장애 인구 동향과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 운영 현황 분석,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 실태조사, 현장실무자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Ⅰ 요약 그림 1 Ⅰ 연구추진체계도

2 주요 결과

1) 서울시 발달장애인 정책 환경과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 현황

❖ 서울시 발달장애 인구 현황 및 변동 추이

- 2022년 말 기준 서울시 등록 발달장애인 수는 35,125명으로, 전국에서 경기도(58,732명) 다음으로 발달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
- 2015년 이후 서울시 전체 등록 장애인은 소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발달장애인은 2015년 29,447명에서 2022년 35,125명으로 5,678명 증가함
- 특히, 발달장애인 내 자폐성장애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6.2%에서 2022년 21.3%로 증가하였고, 증감률은 지적장애인 11.9%, 자폐성장애편 57.3%(2,730명)로 자폐성장애편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향후 자폐성장애편의 주간 돌봄 및 활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연령대별 분포율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30세 이하의 연령대는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감소하고 있으나, 30세 이상의 연령대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발달장애인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서울시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및 활동시설 이용 운영현황

- 서울시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34개소(미지원 시설 포함),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23개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5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43개소(미지원 시설 포함)가 운영 중에 있음
- 주간 돌봄 및 이용시설의 이용자 총 현원은 약 6,570명이며, 이중 발달장애인이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2)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 운영실태

❖ 이용기간 및 이용연령 제한

- (이용기간 제한) 전체 기관 중 32.3%가 이용기간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용기간 제한이 있는 기관의 평균 이용가능 기간은 5.4년임
- (이용연령 제한) 전체 기관 중 56.5%가 이용자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연령제한이 있는 기관의 이용가능 평균 하한연령은 18.6세, 상한연령은 52.0세임

❖ 입소대기

- (입소 대기자 수) 전체 기관 중 39.8%가 입소대기자가 있으며, 이들 기관의 입소대기 인원은 총원 2,112명, 기관 당 평균 19.7명임
- (입소 전 대기기간) 입소까지 '1년 이상 ~ 3년 미만' 대기해야 하는 기관이 가장 많으며 (47.7%), 평균 대기기간은 25.9개월(약 2년 2개월)임

❖ 입소심사 및 거절·타 시설의뢰

- (입소심사 기준) 입소심사 시 도전적 행동 여부, 신변처리 가능여부, 장애유형, 근로 능력 수준 등이 주로 고려되고 있음
- (입소 거절/타시설 의뢰) 전체 기관의 31.2%가 도전적 행동, 근로능력, 정원초과, 이용자격이 다른 장애유형 등의 사례로 입소를 거절하거나 타 시설로 의뢰한 적이 있음

❖ 퇴소 및 비자의적 서비스 종결

- (퇴소 발달장애인) 전체 기관 중 83.3%가 최근 3년간 퇴소한 발달장애인이 있으며, 이들 기관의 퇴소 발달장애인 총원은 1,119명, 기관 당 평균 5.0명으로 나타남
- (퇴소 사유) 본인 의사에 따른 종결, 전원, 가족의사에 따른 종결, 이용기간 만료 순임
- (비자의적 서비스 종결 공식절차 마련 여부) 대다수(90.3%)가 공식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64.0%)는 비교적 낮게 나타남
- (퇴소결정 시 고려기준) 보호자의 이용 종결의사, 다른 이용자의 안전문제, 이용기간 만료 여부가 퇴소결정 시 주요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음

Ⅰ 요약표 1 Ⅰ 기관 일반적 현황

		전체 기관	기관유형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 시설
이용기간 제한	이용기간 제한 기관	32.3%	27.6%	100.0%	100.0%	7.5%
	최대 이용가능 기간	5.4년	6.2년	5.0년	5.0년	4.8년
이용자 연령 제한	연령제한 있는 기관	56.5%	55.2%	100.0%	100.0%	38.7%
	하한 연령	만 18.6세	만 18.6세	만 19.0세	만 18.0세	만 18.9세
	상한 연령	만 52.0세	만 48.5세	만 45.0세	만 50.0세	만 56.1세
입소대기	입소대기자 있는 기관	39.8%	72.4%	0.0%	28.0%	15.1%
	대기자 총원	2,112명	1,933명	-	51명	128명
	기관 당 평균 대기자 수	19.7명	23.0명	-	7.3명	8.0명
	이용자 정원 대비 비율	36.3%	133.4%	-	6.7%	3.6%
	평균 입소대기 기간	2년 2개월	2년 5개월	-	1년 7개월	1년 1개월
입소심사 및 거절·타시설 의뢰	입소심사 시 고려기준	1) 도전적 행동 2) 근로능력 3) 정원초과	1) 도전적 행동 2) 신변처리 3) 장애유형	1) 도전적 행동 2) 장애정도 3) 장애유형	1) 관할 구민 2) 장애유형 3) 연령	1) 근로능력 2) 신변처리 3) 도전적 행동
	입소거절 사례	31.2%	33.6%	22.7%	16.0%	34.0%
	입소거절 주된 사유	도전적 행동	도전적 행동	정원 초과	장애유형	근로능력
퇴소 발달 장애인	퇴소발달장애인이 있는 기관	83.3%	78.4%	72.7%	100.0%	86.8%
	퇴소발달장애인 총원	1,119명	282명	47명	300명	490명
	이용자 정원 대비 퇴소율	19.2%	19.5%	51.1%	39.5%	13.9%
	퇴소 사유	1) 본인 종결 2) 전원 3) 가족 종결	1) 전원 2) 가족 종결 3) 본인 종결	1) 전원 2) 가족 종결 3) 기간만료	1) 전원 2) 가족 종결 3) 기간만료	1) 본인 종결 2) 전원 3) 가족 종결
비자의적 서비스 종결	결정 시 공식절차 마련 기관	90.3%	90.5%	100.0%	64.0%	94.3%
	우선 고려기준	1) 보호자 의사 2) 타인 안전 3) 기간 만료	1) 보호자 의사 2) 타인 안전 3) 기간 만료	1) 기간 만료 2) 보호자 의사 3) 타인 안전	1) 기간 만료 2) 보호자 의사 3) 타인 안전	1) 보호자 의사 2) 타인 안전 3) 이용자 안전

❖ 이용자 세부사항

- (정원 및 현원) 이용자 정원은 총 5,826명, 이용자 현원은 총 5,310명으로, 정원 대비 충원율은 91.1%(정원 대비 516명 부족)로 나타남
- (종사자 대비 이용자) 종사자 1인당 이용자 수는 평균 3.5명¹⁾이며, 기관유형별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9명,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1.7명,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2명, 직업재활시설 4.7명으로,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1인당 이용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 남성이 65.8%, 여성이 34.2%이며, 특히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의 남성 이용자 비율이 76.2%로 다른 유형의 기관 대비 높음
- (연령대) 전체 기관의 이용자 평균 연령은 34.9세이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33.4세)과 직업재활시설(37.5세)이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26.9세)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27.4세) 대비 이용자의 평균 연령이 높음
- (주장애 및 부장애) 전체 이용자 중 발달장애인이 89.3%이며, 주장애와 중복(부)장애 합산 기준으로는 발달장애인이 91.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의사소통수준) '구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용자는 75.9%이며, 반면 '구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24.1%를 차지함
- (일상생활수행능력) '혼자서 가능한' 이용자는 61.9%이며,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는 38.1%를 차지함
- (도전적 행동 여부) 도전적 행동이 없는 이용자는 73.5%이며, 도전적 행동이 있는 이용자는 26.5%를 차지함
- (최종증 발달장애인) '구어 의사소통이 불가능' +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 + '도전적 행동'이 있는 최종증 발달장애인은 전체 이용자의 9.6%를 차지함
- (평균 이용기간) 이용자의 평균 이용기간은 7.3년이며,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평균 2.2년) 및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평균 2.4년)의 이용기간이 비교적 짧음
- (입소 사유)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은 '가족의 돌봄 경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사회교육 및 훈련', '가족의 돌봄 경감', 직업재활시설은

1) 종사자 현원에는 기관장, 행정/사무요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돌봄을 담당하는 종사자 1인당 이용자수는 평균 3.5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고용 및 직업훈련’이 주된 입소 사유로 조사됨

| 요약표 2 | 이용자 현황 요약표

		전체 기관	기관유형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 시설	
이용자 정원 및 현원	정원(기관당 평균)	21.7명	12.5명	4.2명	30.4명	33.3명	
	총 정원	5,826명	1,449명	92명	759명	3,526명	
	현원(기관당 평균)	19.7명	11.6명	3.6명	26.4명	30.4명	
	총 현원	5,310명	1,348명	80명	659명	3,223명	
	이용자 총원율	91.1%	93.0%	87.0%	86.8%	91.4%	
	종사자 1인당 이용자	3.5명	2.9명	1.7명	2.2명	4.7명	
이용자 인적 사항	인구 통계	성별(남성:여성)	65.8%:34.2%	65.7%:34.3%	76.2%:23.8%	67.5%:32.5%	65.1%:34.9%
		평균 연령	34.9세	33.4세	26.9세	27.4세	37.5세
	주장애 유형	발달장애	89.3%	88.9%	67.9%	97.9%	88.2%
		지적장애	69.7%	64.2%	22.6%	62.8%	74.9%
		자폐성 장애	19.7%	24.7%	45.2%	35.1%	13.3%
		발달장애 외	10.7%	11.1%	32.1%	2.1%	11.8%
	주장애 중복	발달장애	91.4%	93.4%	86.9%	100.0%	88.7%
		발달장애 외	8.6%	6.6%	13.1%	0.0%	11.3%
	의사 소통	구어 의사소통 가능	75.9%	52.1%	52.4%	57.4%	91.1%
		구어 의사소통 불가	24.1%	47.9%	47.6%	42.6%	8.9%
	일상 생활	혼자서 가능	61.9%	23.8%	20.2%	38.4%	84.8%
		도움 필요	38.1%	76.2%	79.8%	61.6%	15.2%
	도전적 행동	도전적 행동 없음	73.5%	50.6%	19.0%	51.6%	89.8%
		도전적 행동 있음	26.5%	49.4%	81.0%	48.3%	10.2%
	돌봄 난이도	난이도 최저	49%	12.2%	0.0%	18.2%	73.3%
난이도 최고		9.6%	23.1%	31.0%	18.7%	1.1%	
현 시설 이용	이용기간 평균	7.3년	8.0년	2.2년	2.4년	8.3년	
	주된 입소사유	고용/직업훈련	가족 돌봄 경감	가족 돌봄 경감	사회교육/훈련	고용/직업훈련	

❖ 종사자 세부사항

- (정원 및 현원) 종사자 정원 총 1,573명, 현원 총 1,499명으로, 종사자 정원 대비 충원율은 95.3%(정원 대비 74명 부족)로 나타남
- (성별) 남성 47.8%, 여성 52.2%로 여성이 근소하게 높게 나타남
- (연령대) 20대 및 30대 연령대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평균 연령은 36.5세임
- (재직연수) 평균 재직연수는 3.9년이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3.9년)과 직업재활시설(5.1년) 대비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2.7년)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2.0년) 소속 종사자들의 평균 재직연수가 비교적 낮음
- (퇴사자 수) 최근 3년간 퇴사한 종사자 수는 969명으로 종사자 정원(1,573명) 대비 61.6%를 차지하며, 기관유형별로는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100.0%)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98.0%)의 퇴사율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49.0%)과 직업재활시설(52.6%) 대비 월등히 높음
- (퇴사 사유) 개인사유(질환, 학업), 이직, 경력개발, 업무과중, 임금조건 순으로 나타남

▣ 요약표 3 ▣ 종사자 현황 요약표

		전체 기관	기관유형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 시설
종사자 정원 및 현원	정원 (기관당 평균)	5.8명	4.1명	2.1명	12.1명	7.0명
	총 정원	1,573명	480명	47명	302명	744명
	현원 (기관당 평균)	5.6명	4.0명	2.1명	12.0명	6.5명
	총 현원	1,499명	464명	47명	301명	687명
	종사자 충원율	95.3%	96.7%	100.0%	99.7%	92.3%
종사자 인적사항	성별 (남성:여성)	47.8%:52.2%	43.4%:56.6%	51.0%:49.0%	42.4%:57.6%	53.5%:46.5%
	평균 연령	36.5세	36.2세	32.6세	32.9세	38.9세
	현 기관 평균 재직연수	3.9년	3.9년	2.7년	2.0년	5.1년
최근 3년간 퇴사자	퇴사 종사자 총원	969명	235명	47명	296명	391명
	기관당 평균 퇴사자 수	3.6명	2.0명	2.1명	11.8명	3.7명
	정원 대비 퇴사자 비율	61.6%	49.0%	100.0%	98.0%	52.6%

❖ 최종증 발달장애 이용자 관련 어려움 및 대응수준

- (돌봄 관련 어려운 점) 도전적 행동 대처, 의사소통 지원, 보호자의 비협조적 태도, 신변 처리 지원, 건강지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 수는 총 1,324명으로 전체 이용자 현원(5,310명)의 24.9%를 차지하며, 기관유형별 현원 대비 도전적 행동 이용자 비율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7.8%,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83.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48.1%, 직업재활시설 9.2%로 조사됨
- (도전적 행동 유형) '타해 행동'(29.9%)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자해 행동' (26.5%), '관심 끌기'(23.0%) 순이며,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경우 '타해 행동'의 비율이 다른 기관 대비 비교적 높음
- (최근 1개월간 도전적 행동 발생빈도) 대체로 '5회 이하'가 가장 일반적이나,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경우, '6회 이상~10회 미만', '10회 이상' 발생빈도가 다른 기관유형 대비 비교적 높음
-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서비스 종결) 전체 기관의 31.1%가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서비스 종결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에서 보다 많음
- (서비스 종결 시 고려사항) '다른 이용자의 안전문제'(72.8%)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다음으로 '이용자 본인의 안전문제'(15.4%) 순임
- (도전적 행동 대처 문서화된 규정·매뉴얼 마련 여부) 전체 기관의 76.8%가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신체적 개입 필요 시 사전 동의 절차) '서면 동의' 66.7%, '구두 동의' 21.1%이며, 사전 동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12.3%임
- (도전적 행동 대처수준) 평균 대처수준은 평균 3.74점(5점 척도)이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4.13점)에서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직업재활시설(3.40점)은 가장 낮게 평가함

❖ 종사자 후속조치 및 소진 수준

- (후속조치)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을 경험한 종사자를 위한 후속조치로는 '슈퍼비전', '상해발생 시'치료비 지원', '휴식/휴가 제공' 순으로 나타남
- (소진수준) 종사자 전체 평균 2.44점(5점 척도)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종사자의 소진수

- 준을 3분위로 구분한 후 상위 33%이상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팀장 또는 팀원 직위 종사자
 - 장애인분야 재직경력(연수)이 적을수록, 연령대가 적을수록, 현원 대비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이용자 비율이 높은 기관일수록 소진수준이 높은 종사자가 많음
 - 정서적 고갈 수준은 기관유형별로는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종사자 직위별로는 팀장 또는 팀원의 정서적 고갈 수준이 보다 높음

❖ 도전적 행동 대처 교육

- (도전적 행동 대처 교육 경험) 종사자 대부분(88.2%)이 도전적 행동 대처 교육을 경험(이수)하였으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69.2%)는 비교적 낮게 나타남
- (도전적 행동 관련 희망 교육내용)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처행동 제시방법’, ‘도전적 행동 발생 시 신체적 대처방법’, ‘도전적 행동 예방 전략’, ‘도전적 행동의 원인 및 특성’, ‘종사자의 스트레스 및 소진관리’ 순으로 나타남

❖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인을 위한 해결과제

- (기관 차원의 과제) ‘기존 시설 내 인력 추가 지원’, ‘시설의 물리적 환경개선’, ‘도전적 행동 지원 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 순으로 나타남
- (서울시 차원의 과제) ‘기존 시설의 인력 지원’, ‘지역사회 돌봄 및 낮활동 이용시설 확충’, ‘최중증 발달장애인 특화서비스 확대’ 순으로 나타남

❖ 요약표 4 ❖ 발달장애 이용자 관련 어려움 및 대처방안 요약표

		전체 기관	기관유형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최중증 낮활동 지원 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 시설
돌봄 관련 어려운 점		도전적 행동 >의사소통 지원 >보호자 비협조 >신변처리 지원	도전적 행동 >의사소통 지원 >신변처리 지원 >보호자 비협조	도전적 행동 >의사소통 지원 >보호자 비협조 >신변처리 지원	도전적 행동 >신변처리 지원 >보호자 비협조 >의사소통 지원	도전적 행동 >의사소통 지원 >보호자 비협조 >건강 지원
도전적 행동 이용자	도전적 행동 이용자 수	1,324명	644명	67명	317명	296명
	이용자 현원 대비 비율	24.9%	47.8%	83.8%	48.1%	9.2%

		전체 기관	기관유형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최중증 낮활동 지원 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 시설
도전적 행동 유형	타해 행동	29.9%	29.2%	56.7%	37.9%	16.9%
	자해 행동	26.5%	28.3%	20.9%	27.1%	23.3%
	관심 끌기	23.0%	21.1%	10.4%	18.0%	35.5%
도전적 행동 대처 수준	도전적 행동 피해·상해 발생빈도	5회 이하(40.8%) >없음(31.6%)	5회 이하(50.0%) >없음(21.2%)	6~10회(28.6%) >5회 이하(23.8%)	5회 이하(40.0%) 6~10회(24.0%)	없음(56.4%) >5회 이하(33.3%)
	서비스 종결사례 있는 기관	31.1%	35.6%	9.5%	16.0%	35.9%
	근거규정·매뉴얼 마련 기관	76.8%	89.4%	71.4%	92.0%	56.4%
	신체적 개입 사전동의 기관	87.7%	98.1%	90.5%	92.0%	71.8%
	서면 동의	66.7%	90.4%	90.5%	72.0%	26.9%
	구두 동의	21.1%	7.7%	0.0%	20.0%	44.9%
	대처수준 (5점 척도)	3.74점	3.86점	3.97점	4.13점	3.40점
중사자 소진 수준	2.44점	2.41점	2.63점	2.50점	2.42점	
	소진수준 高 중사자 비율	-	30.2%	54.5%	40.0%	31.1%
	소진수준 低 중사자 비율	-	35.3%	18.2%	28.0%	35.8%
도전적 행동 대처 교육 이수경험		88.2%	97.1%	100.0%	100.0%	69.2%
도전적 행동 관련 희망 교육내용		다처행동제시방법 >사회적 대처방법 >예방전략 >원인 및 특성	다처행동제시방법 >사회적 대처방법 >예방전략 >원인 및 특성	다처행동제시방법 >예방전략 >사회적 대처방법 >원인 및 특성	예방전략 >다처행동제시방법 >사회적 대처방법 >예방전략 >원인 및 특성	다처행동제시방법 >사회적 대처방법 >예방전략 >원인 및 특성

3) 현장중사자 초점집단면접조사(FGI)

❖ 발달장애 이용자의 고령화·중증화 및 욕구의 다변화

- 기존 발달장애 이용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은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복지일자리 등 새로운 대체서비스들로 유입되고 있는 반면,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들만이 전통적인 시설 기반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로 유입되고 있는 추세임
- 발달장애 이용자들의 고령화·중증화로 인해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용자와 보호자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도 단순 보호 및 돌봄에서

문화여가활동, 취업, 주거 및 자립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실천현장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범위의 확대를 요구받고 있으나,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중증화·욕구의 다변화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요구 사항들을 모두 수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음

❖ 최종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판단기준

- (혼자서 신변처리 불가능) 스스로 신변처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은 주간 돌봄 및 활동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서비스 거부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는 종사자들로 하여금 신변처리 지원 활동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임
- (의사소통 제약) 구두로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발달장애인들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를 넘어서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고, 언어를 통해 자신의 요구 사항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
- (중복장애 및 건강문제 동반) 발달장애 외 정신장애, 일상적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신체장애 등을 동반한 발달장애인들은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의 실천역량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향이 있음
- (도전적 행동) 자·타해, 성적 행동 등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종사자의 소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용하게 되더라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비자의적 서비스 종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제약요인

- (종사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실천역량 부족) 과거 대비 도전적 행동 대처 등 교육·훈련의 기회가 많아지긴 하였으나, 기존 종사자들의 소진에 따른 잦은 이·퇴직으로 인해 전문지식과 실천경험을 갖춘 인력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열악한 시설환경)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신체장애 동반 발달장애인의 경우 시설의 물리적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밀집도, 소음, 빛 등 도전적 행동을 자극하는 환경적 요인들이 최소화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시설들은 그러한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임

- (기존 이용자와 융화의 어려움)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기존 보호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서비스 거부로 이어지는 사례가 흔히 발생함
- (물리적 거리의 접근성 제약) 이동에 제약이 있거나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통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이용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시설이용이 쉽지 않음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 및 안정성 제고 방안

- (서비스 지원방식의 다양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 돌봄 및 활동 시설의 서비스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지원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현행 전담기관 집중지원형(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과 개인별 집중지원형(성인주간활동서비스 일대일 지원) 외에도 단일기관 내 장애정도 및 돌봄 요구 수준에 따른 차등화 지원방식과 개인별 및 그룹 혼합 지원방식 등 다양한 지원방식이 필요함
- (이용기간 제한의 폐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기간 개입이 필요하고, 낮은 환경과 사람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이기 쉽고, 서비스 거부로 인해 새로운 기관을 찾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기간 제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포용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종사자의 실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양질의 인력이 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의 인력 증원, 가산수당 도입, 대체인력 지원, 심리상담 지원, 법률적 보호체계 마련 등의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3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결과의 함의

❖ 발달장애 인구의 고령화·중증화

- 서울시 발달장애 인구의 고령화·중증화 현상이 동시에 관찰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의사소통능력 제약, 도전적 행동 등 장애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자폐성장애편이 발달장애인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과 동시에 고령화에 따라 기존 발달장애에 더해 노화에 따른 기능 및 인지 능력의 저하된 발달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와 더불어 젊은 연령층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은 성인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장애인복지일자리 등의 새로운 대체서비스로 유입되고 있는 반면에 고령·중증 발달장애인만이 전통적인 시설 기반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에 남아 있거나 새롭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임
- 이러한 발달장애 인구의 고령화·중증화를 고려하여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 실천 현장에서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시설 기반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에 대한 수요 감소

-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이용자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기관이 142개소, 충족률은 91.1%, 총 부족 인원 516명으로 나타남
- 이는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일자리사업(예시: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기존 시설 기반 주간 돌봄 및 활동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고, 수요가 분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간 돌봄 및 활동 서비스와의 관계정립, 서비스의 차별화 등을 통해 시설 기반 주간 돌봄 및 활동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규모와 서비스 이용 장벽요인

-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의 발달장애 이용자 중 최종증 발달장애인 이용자 규모는 9.6%(479명)로 추정됨
- 서울시 전체 발달장애인 중 최종증 발달장애인은 약 1,760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27%만 시설 기반 주간 돌봄 및 활동 시설을 이용 중에 있으며, 나머지 73%(약 1,280명)는 다른 대체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가족의 전적인 돌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장벽은 장애특성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실천역량 부족, 열악한 시설환경, 기존 이용자와의 융화의 어려움, 물리적 거리의 접근성 등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문제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종사자의 소진에 따른 잦은 인력교체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

- 주간 돌봄 및 활동 서비스 이용시설 소속 종사자의 재직경력은 ‘1년 미만’(26.9%)과 ‘1년 이상 ~ 3년 미만’(28.3%)이 과반을 차지하고, 평균 재직연수는 3.9년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종사자 정원(1,573명) 대비 퇴사율은 61.6%로 매우 높은 수준임
-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 실천현장에서 종사자들이 이탈하는 현상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인력을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2) 정책 제언

❖ 이용기간 및 이용자 연령상한 제한의 단계적 폐지

- 최종증 발달장애인은 낯선 사람과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서비스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기관을 찾고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지원인력 입장에서도 최종증 발달장애 이용자의 이력과 성향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보다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잦은 기관 및 인력의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음
- 이용기간과 이용자 연령상한을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기자 적체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이용자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기관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최근 새로운

대체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시설 기반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용기간과 이용자 연령상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선정기준 마련

- 최근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긴 하였으나,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개념정의 및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개념정의 문제는 정책대상의 규모를 추정하고,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학계·현장·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유지를 위한 개선과제

- (전문 인력의 양성) 2024년 6월부터 추진될 계획인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과 그룹형 일대일 지원의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지원인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실천역량을 갖춘 인력을 미리부터 양성해나갈 필요가 있음
- (인력 증원) 최종증 발달장애인에게 개별화된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담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외의 이용시설에도 상당수의 최종증 발달장애인들이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이들 시설에 대한 인력지원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체인력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종사자가 휴가, 병가, 교육 참여 등의 사유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이 지원되지 않아 남아 있는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하므로 대체인력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 (가산수당 도입) 최종증 발달장애인 다수 이용시설의 경우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은 다른 기관 소속 종사자들과 비슷하여 노동시장에서 기피하는 일자리로 여겨져 인력 채용과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으므로 이들 기관 소속 종사자들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피해보상 및 인권보호 지원체계 마련) 도전적 행동 등을 가진 최종증 발달장애인을 지

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신체적 상해나 심리적 소진을 겪게 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불가피한 신체적 개입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오해를 받아서 법률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의 피해보상 및 인권보호를 위해 상해치료 및 심리상담, 변호사 선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5
3. 연구의 방법	7
제2장 서울시 발달장애인 정책 환경 및 주간 돌봄 및 이용시설 현황	9
1. 발달장애 인구 현황 및 변동 추이	11
2. 중앙정부 및 서울시 발달장애인 정책	22
3.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 현황	36
4. 소결	44
제3장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 운영실태	47
1. 조사개요	49
2. 분석결과	52
3. 소결	112
제4장 현장실무자 초점집단면접조사(FGI)	115
1. 조사 개요	117
2. 조사결과	119
3. 소결	142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45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함의	147
2. 정책 제언	152
참고문헌	158

표 목차

[표 1-1] 연구대상	6
[표 2-1] 전국 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 현황	11
[표 2-2] 전국 등록 발달장애인 추이	12
[표 2-3] 시도별 발달장애인 현황	12
[표 2-4] 전국 연령별 발달장애인 현황	14
[표 2-5] 서울시 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 현황	15
[표 2-6] 서울시 발달장애인 연도별 인구동향	16
[표 2-7] 발달장애 내 장애유형별 비중 변화 및 증가율	17
[표 2-8] 연령별 발달장애인 변화 추이	17
[표 2-9] 장애유형별·연령별 발달장애인 변화 추이	19
[표 2-10] 자치구별 발달장애인 분포율 및 비중	20
[표 2-11] 자치구 연령별 발달장애인 현황	21
[표 2-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22
[표 2-13] 2023년 장애인관련 예산(안)	25
[표 2-14] 제1차-제5차 장애인종합계획의 변화 과정	26
[표 2-15]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사업(안)	30
[표 2-16]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	31
[표 2-17]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업내용	36
[표 2-18]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현황(2022.12월말 기준)	37
[표 2-1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내용	38
[표 2-2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현황(2022.12월말 기준)	39
[표 2-21]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내용	40
[표 2-22]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내용(2022.12월말 기준)	40
[표 2-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내용	41
[표 2-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2022.12월말 기준)	43
[표 2-2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 규모 및 이용자 현황(2022.12월말 기준)	43

[표 2-2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유형별 이용자 현황(2022.12월말 기준)	43
[표 3-1] 조사 내용	50
[표 3-2] 조사 회수율	51
[표 3-3] 조사방법별 참여 현황	51
[표 3-4] 주중 및 주말 기관 운영률	52
[표 3-5] 주당 기관 운영일수	52
[표 3-6] 기관 운영시간 유형	53
[표 3-7] 전일제 운영기관 이용시간	53
[표 3-8] 반일제 운영기관 이용시간	54
[표 3-9] 이용기간 제한	54
[표 3-10] 최대 이용가능 기간	55
[표 3-11] 이용자 연령제한	55
[표 3-12] 이용가능 하한 연령	56
[표 3-13] 이용가능 상한 연령	56
[표 3-14] 입소 대기자 유무	57
[표 3-15] 입소대기자 수	58
[표 3-16] 이용자 정원 대비 입소대기자 수	58
[표 3-17] 입소 전 평균 대기기간	59
[표 3-18] 입소심사 시 고려기준(1~3순위 합계)	61
[표 3-19] 타 시설 의뢰 또는 입소거절 사례 여부	61
[표 3-20] 타 시설 의뢰 또는 입소 거절 주요 이유	62
[표 3-21] 최근 3년간 퇴소 발달장애인 유무	63
[표 3-22] 최근 3년간 실제 퇴소 발달장애인 수	63
[표 3-23]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 퇴소 사유	64
[표 3-24] 비자의적 서비스 종결(퇴소) 결정 공식절차 마련 여부	65
[표 3-25] 비자의적 서비스 종결(퇴소) 결정 시 우선 고려기준	66
[표 3-26] 이용자 정원 (빈도수)	66
[표 3-27] 기관유형별 실제 이용자 정원	67
[표 3-28] 종사자 정원 대비 이용자 정원	67
[표 3-29] 기관유형별 이용자 현원	68

[표 3-30] 이용자 정원 대비 현원 부족 기관수	69
[표 3-31] 이용자 정원 대비 현원 부족 인원	69
[표 3-32] 종사자 현원 대비 이용자 현원	70
[표 3-33] 이용자 성별	71
[표 3-34] 이용자 연령 (빈도수)	71
[표 3-35] 주장애 유형	72
[표 3-36] 주장애 유형_세부	72
[표 3-37] 중복장애 유형	73
[표 3-38] 중복장애 유형(세부)	73
[표 3-39] 주장애 및 중복장애 유형	73
[표 3-40] 장애정도	74
[표 3-41] 의사소통능력	75
[표 3-42] 일상생활수행능력	76
[표 3-43] 도전적 행동 수준	77
[표 3-44] 기관유형별 최종증 발달장애 이용자 비중	79
[표 3-45] 약물 복용 또는 투약 관리 필요 여부	79
[표 3-46] 휠체어 사용 여부	80
[표 3-47] 현재 이용시설 이용기간 (빈도수)	81
[표 3-48] 주된 입소 사유	82
[표 3-49] 1주 평균 이용일수	82
[표 3-50] 1일 평균 이용시간	82
[표 3-51] 현재 시설 입소 전에 타 시설 이용 개소 수	83
[표 3-52] 직전 이용시설 유형	84
[표 3-53] 직전 이용시설 퇴소 사유	85
[표 3-54] 기관유형별 종사자 정원	86
[표 3-55] 기관당 종사자 평균 정원	86
[표 3-56] 기관유형별 실제 종사자 현원	87
[표 3-57] 기관당 종사자 평균 현원	87
[표 3-58] 종사자 정원 대비 현원 부족 기관수	88
[표 3-59] 종사자 정원 대비 현원 부족 인원	88

[표 3-60] 기관당 종사자 평균 정원 및 현원	88
[표 3-61] 종사자 성별	89
[표 3-62] 종사자 연령대 분포율	90
[표 3-63] 종사자 현 기관 재직경력	91
[표 3-64] 종사자 자격사항	91
[표 3-65] 최근 3년간 실제 퇴사 종사자 수	92
[표 3-66] 종사자 퇴사 사유(1~3순위 합계)	93
[표 3-67] 종사자 퇴사 사유(1순위)	94
[표 3-68]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어려운 점(1~3순위 합계)	95
[표 3-69] 실제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인 수	95
[표 3-70] 종사자 현원 대비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인 수	96
[표 3-71] 도전적 행동 행위유형별 장애인 수	97
[표 3-72] 최근 1개월간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상해 발생빈도	97
[표 3-73]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서비스 종결 사례 유무	98
[표 3-74]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서비스 종결 시 고려사항	99
[표 3-75] 도전적 행동 대처 문서화된 근거규정 및 매뉴얼 마련 여부	99
[표 3-76] 도전적 행동 대처 신체적 개입 필요 시 사전 동의 절차 마련 여부	100
[표 3-77] 도전적 행동 대처방식 해당여부	101
[표 3-78] 도전적 행동 대처능력	102
[표 3-79] 도전적 행동 경험 후 후속조치 해당여부	103
[표 3-80] 종사자 소진수준_정서적 고갈	104
[표 3-81] 종사자 소진수준_이용자에 대한 비인격화	105
[표 3-82] 종사자 소진수준_개인적 성취감 상실	106
[표 3-83] 종사자 소진수준_전체 항목 합산	107
[표 3-84] 종사자 소진수준별 특성	108
[표 3-85] 도전적 행동 대처 관련 내·외부 교육이수 여부	109
[표 3-86] 도전적 행동 관련 희망 교육내용(1~3순위 합계)	110
[표 3-87]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인 우선 해결과제	110
[표 3-88]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1~3순위 합계)	111
[표 4-1] 초점집단면접조사(FGI) 현장종사자의 인적사항	118
[표 4-2] 현장종사자 FGI 논의주제 및 세부내용	119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추진체계도	8
[그림 2-1] 발달장애 내 지적·자폐성 비중 변화 추이	16
[그림 2-2] 발달장애인 내 장애유형의 비중 변화 추이	18
[그림 2-3]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의 전 및 목표	24
[그림 2-4]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	28
[그림 2-5] 제1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비전도	34
[그림 2-6] 제2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비전도	35
[그림 3-1] 기관당 입소 대기자 수(평균 인원)	57
[그림 3-2] 입소 전 평균 대기기간(빈도수)	59
[그림 3-3] 입소심사 시 고려기준 (전체 기관)	60
[그림 3-4] 기관유형별 입소심사 시 고려기준(1~3순위 합계)	60
[그림 3-5] 타 시설 의뢰 또는 입소거절 주요 이유	62
[그림 3-6]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 퇴소 사유	64
[그림 3-7] 기관유형별 비자의적 서비스 종결(퇴소) 결정 시 우선 고려기준	65
[그림 3-8] 이용자 정원 대비 현원 부족 기관수	68
[그림 3-9] 이용자 성별	70
[그림 3-10] 이용자 연령	71
[그림 3-11] 장애정도	74
[그림 3-12] 의사소통능력	75
[그림 3-13] 일상생활수행능력	76
[그림 3-14] 도전적 행동 수준	77
[그림 3-15] 전체 이용시설의 최중증 발달장애 이용자 규모	78
[그림 3-16] 기관유형별 최중증 발달장애 이용자 비중	78
[그림 3-17] 현재 이용시설 이용기간	80
[그림 3-18] 주된 입소 사유	81
[그림 3-19] 직전 이용시설 유형(기관유형별)	84

[그림 3-20] 직전 이용시설 퇴소 사유(기관유형별)	85
[그림 3-21] 종사자 성별	89
[그림 3-22] 종사자 연령대	90
[그림 3-23] 종사자 현 기관 재직경력	91
[그림 3-24] 종사자 퇴사 사유(1~3순위 내림차순)	93
[그림 3-25]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어려운 점	94
[그림 3-26] 도전적 행동 행위유형별 장애인 수	96
[그림 3-27]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서비스 종결 사례 유무	98
[그림 3-28] 도전적 행동 대처방식 해당여부 (기관유형별)	100
[그림 3-29] 도전적 행동 경험 후 후속조치 해당여부(기관유형별)	102
[그림 3-30] 도전적 행동 관련 희망 교육내용	109
[그림 3-31]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111

제 1 장

서론

Seoul
Welfare
Foundation

www.welfare.seoul.kr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내 최초로 특정 장애유형만을 다루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의 제정은 국내 장애인정책의 발전과정에서 중대한 변곡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지 및 의사소통 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다(최복천 외, 2016). 하지만 동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전국 광역단위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기 시작하였고, 2019년부터는 학령기 이후 갈 곳 없는 발달장애인의 주간 돌봄 및 활동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가 신규로 도입되었다. 그 결과,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대폭적으로 확대되면서 서비스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왔다(서원선, 최복천, 이상준, 2021; 유수진, 이은혜, 한정은, 2020). 하지만 도전적 행동 등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들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의 돌봄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강정배, 박계신, 손희경, 2020; 김미옥, 김고은, 정민아, 2019; 김성희 외, 2022). 동시에 최근 몇 년 동안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도전적 행동 등을 가진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학계·현장 등에서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을 만큼 관련 연구가 축적되지 않아 왔으며,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도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도전적 행동, 신변처리 및 의사소통에 기능제약이 상당하여 강도 높은 지원이 필요

한 집단으로 정의되고 있다(김미옥, 2023). 이들 집단은 기존 서비스 지원체계에서 기피 대상으로 여겨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미옥, 김고은, 정민아, 2019).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약자복지’를 표방하며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터운 지원하는 것을 복지정책의 기조로 정하고, 최종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임을 예고해왔다. 정부는 2022년 5월 최종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체계의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바 있다(국무조정실, 2023). 그리고 2022년 6월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재활 및 발달 지원)과 제29조의3(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이 신설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이번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도전적 행동, 신변처리의 어려움, 의사소통능력의 제약, 중복장애 등으로 인해 기간 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배제되어 왔던 최종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취미여가,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의 근거 마련된 것이다. 뒤이어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22. 11월)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 3월)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최종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임을 예고하였다(보건복지부, 2022, 2023a). 그리고 2024년 장애인 복지 예산안에는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보건복지부, 2023b), 2024년 6월부터는 최종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돌봄 지원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주간 그룹형 일대일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23c). 이처럼 정부는 도전적 행동 등으로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앞서 최종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해왔다. 서울시는 「제1기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2016-2020)」 수립·발표하면서 핵심사업 중에 하나로 ‘최종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활성화’를 제시한 바 있다(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2017). 이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최종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하여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23개소(발달장애인 17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이외에도 학령기 이후 갈 곳이 없는 성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간 돌봄 및 활동 공백을 해소하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6년 3월부터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선도적인 사업들은 중앙정부의 최종증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견인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김성희 외, 2022).

정부가 2024년 6월부터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임

에 따라 그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던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및 낮활동 관련 사업들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해왔던 사업들을 정부의 신규 사업으로 편입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형태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 일대일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할 것인지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기존 연구에서 성인주간활동서비스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검토가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기는 하나(김미옥 외, 2018), 전통적인 시설 기반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 세팅에서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 관할 주간 돌봄 및 낮활동 시설을 이용 중에 있는 발달장애인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규모와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실천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준비 또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1)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및 활동 서비스 가운데 이용시설로써 주간 돌봄 및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사업 수행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이들 이용시설을 이용 중인 발달장애인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타 기관과 차별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나,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낮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에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2023년 6월 말 기준 서울시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32개소,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사업 수행기관 23개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5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43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표 1-1 연구대상

(단위: 개소)

구분	설치 근거	목적	개소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132개소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장애인복지법 제9조, 서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도전행동을 하는 성인 발달 및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낮시간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행동변화와 지역사회 적응 도모	23개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지원),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학령기 이후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응 교육 등을 제공하는 시설	25개소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	143개소

2) 내용

본 연구는 서울시 관할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및 활동 서비스 이용시설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진단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서울시 발달장애인 인구구조 변화 추이와 서울시 발달장애인 정책 환경을 진단한다.

둘째, 서울시 관할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및 활동 서비스 이용시설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살펴본다.

셋째, 최중증 발달장애자녀를 둔 보호자와 현장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과 안정성 담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넷째, 중앙정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과제를 제안한다.

3 연구의 방법

1) 문헌검토 및 통계자료 분석

서울시 발달장애인 정책 환경을 진단하고자 발달장애인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발달장애인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 관련 법률, 정부 및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관련 기본계획과 발표 및 보도 자료를 검토하였다.

2) 전문가 자문회의

발달장애인 관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계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1차 자문회의에서는 연구의 초점 및 내용 등 연구모형설계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2차 자문회의에서는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가 준비해야 할 대응과제들이 무엇인지에 관한 집중적인 자문을 구하였다.

3)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 실태조사

서울시 관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32개소²⁾,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 23개소³⁾,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32개소로 총 312개소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방법은 각 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개별 시설에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참여 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과 온라인 설문조사 URL을 발송하고, 각 기관의 1인이 대표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URL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조사대상 기관(312개소) 중 온라인조사의 경우 269개 기관(회수율 86.2%), 전자 우편 조사의 경우 256개 기관(회수율 82.1%)이 조사에 참여하였다.⁵⁾

2) 서울시 미지원 기관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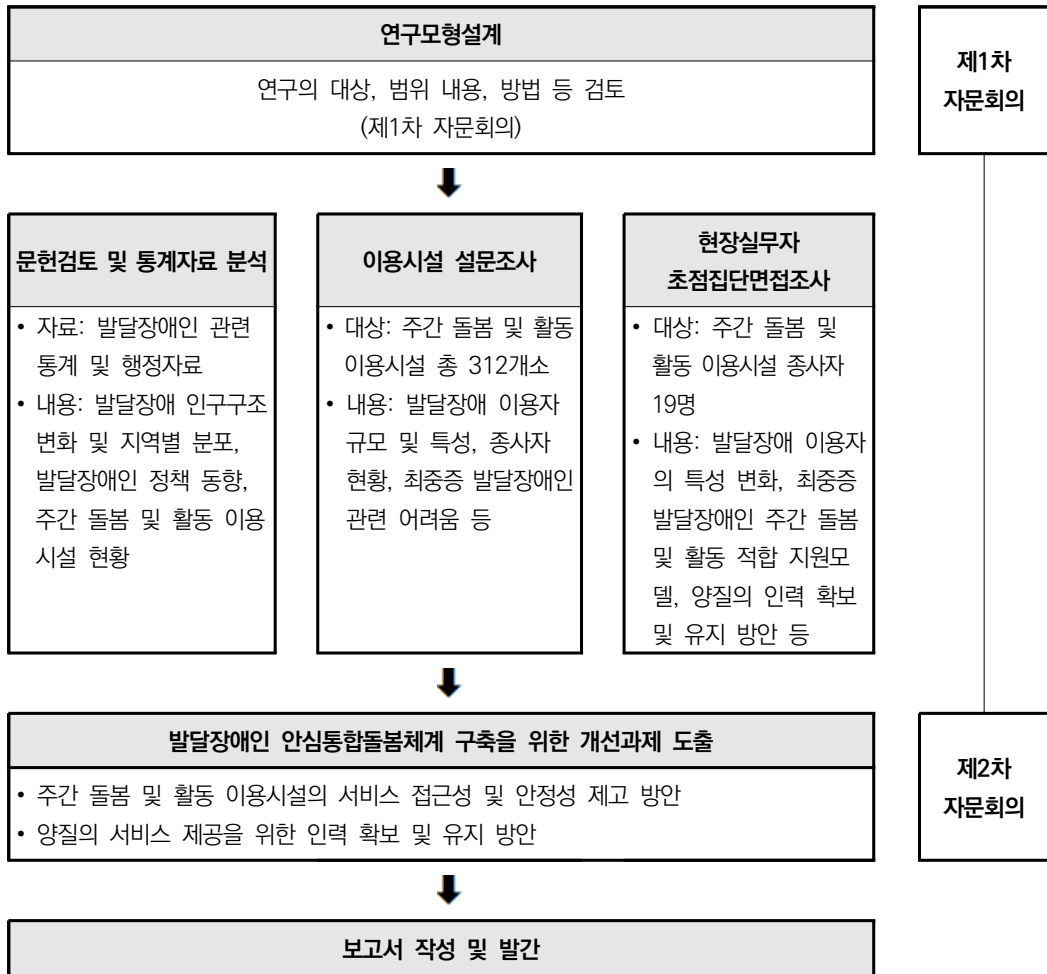
3) 발달장애인 17개소, 뇌병변장애인 5개소, 시각중복 1개소

4)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미가입 시설 미포함

5) 조사대상 기관은 온라인조사와 전자 우편조사(엑셀조사표를 활용한 종사자 및 이용자 인적사항 조사)를 모두 참여하여야 하나,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기관은 1가지 종류의 조사에만 참여한 기관이 있음

4) 현장실무자 초점집단면접조사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실천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각 시설의 협회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추천을 받아서 모집되었다. 면접진행은 각 시설별로 4~5인으로 4개의 그룹을 구성하여 대면집단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논의주제는 크게 최근 이용자의 특성 변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실천현장에서의 어려움, 실천현장의 대처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구성되었다.



Ⅱ 그림 1-1 Ⅱ 연구추진체계도

제2장

서울시 발달장애인 정책 환경 및 주간 돌봄·활동 이용시설 현황

Seoul
Welfare
Foundation

www.welfare.seoul.kr



제2장

서울시 발달장애인 정책 환경 및 주간 돌봄·활동 이용시설 현황

1 발달장애 인구 현황 및 변동 추이

1) 전국

(1) 전체

2022년 기준 전국 등록 장애인은 총 2,652,860명이며, 이중 지적장애인은 225,708명(8.5%), 자폐성장애인은 37,603명(1.4%)으로 발달장애인은 9.9%(263,311명)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등록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9%로, 발달장애인은 지체장애인(44.3%), 청각장애인(16.0%)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다.

표 2-1 전국 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인원	2,652,860	1,176,291	245,477	250,767	425,224	23,349	225,708	37,603
비율	100.0	44.3	9.3	9.5	16.0	0.9	8.5	1.4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인원	104,424	105,842	5,078	11,451	15,066	2,725	16,779	7,076
비율	3.9	4.0	0.2	0.4	0.6	0.1	0.6	0.3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2023). 2015-2022년 장애인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5&vw_cd=MT_ZTITLE&list_id=&scrl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docId=00099&markType=S&itmNm=%EC%A0%84%EA%B5%AD에서 2023.6.30. 인출 및 재구성

발달장애인 인구는 2015년 210,855명에서 2022년 263,311명으로 24.9%(52,456명)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서비스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은 2015년 189,752명에서 2022년 225,708명으로 18.9%(35,956명) 증가한 반면, 자폐성장어인은 2015년 21,103명에서 2022년 37,603명으로 78.2%(16,500명) 증가하여 지적장애인 대비 자폐성장어인이 증가추세가 압도적이다.

표 2-2 전국 등록 발달장애인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5 (a)	2017	2019	2021	2022 (b)	증감인원 (증가율: b-a/a×100)	
전국 장애인 수		2,490,406	2,545,637	2,618,918	2,644,700	2,652,860	162,454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인원	189,752	200,903	212,936	221,557	225,708	35,956
		비율	7.6	7.9	8.1	8.4	8.5	18.9
	자폐성장어인	인원	21,103	24,698	28,678	33,650	37,603	16,500
		비율	0.8	1.0	1.1	1.3	1.4	78.2
	전체	인원	210,855	225,601	241,614	255,207	263,311	52,456
		비율	8.5	8.9	9.2	9.6	9.9	24.9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2023). 2015~2022년 장애인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5&vw_cd=MT_ZTITLE&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docId=00099&markType=S&itmNm=%EC%A0%84%EA%B5%AD에서 2023.6.30. 인출 및 재구성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58,732명(22.3%)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35,125명, 13.3%), 경남(19,007명, 7.2%), 경북(18,545명, 7.0%) 순으로 확인된다. 서울(13.3%)과 경기(22.3%)의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의 35.6%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1/3 이상이 서울경기지역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시도별 발달장애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어인		발달장애인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225,708	100.0	37,603	100.0	263,311	100.0
서울	27,634	12.2	7,491	19.9	35,125	13.3
부산	12,644	5.6	2,522	6.7	15,166	5.8

구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래인		발달장애인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대 구	10,680	4.7	1,548	4.1	12,228	4.6
인 천	11,414	5.1	2,031	5.4	13,445	5.1
광 주	7,461	3.3	1,072	2.9	8,533	3.2
대 전	7,009	3.1	1,188	3.2	8,197	3.1
울 산	4,667	2.1	807	2.1	5,474	2.1
세 종	1,181	0.5	265	0.7	1,446	0.5
경 기	48,448	21.5	10,284	27.3	58,732	22.3
강 원	8,622	3.8	961	2.6	9,583	3.6
충 북	10,996	4.9	995	2.6	11,991	4.6
충 남	12,662	5.6	1,359	3.6	14,021	5.3
전 북	12,823	5.7	1,060	2.8	13,883	5.3
전 남	12,467	5.5	1,043	2.8	13,510	5.1
경 북	16,943	7.5	1,602	4.3	18,545	7.0
경 남	16,409	7.3	2,598	6.9	19,007	7.2
제 주	3,648	1.6	777	2.1	4,425	1.7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2023). 2015-2022년 장애인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5&vw_cd=MT_ZTITLE&list_id=&scrl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docId=00099&markType=S&itmNm=%EC%A0%84%EA%B5%AD에서 2023.6.30. 인출 및 재구성

(2) 연령

연령별 발달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20~29세가 23.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0~19세(17.6%), 30~39세(16.9%), 40~49세(13.5%)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기(10~19세)와 성인기(20~29세, 30~39세)의 발달장애인이 전체의 과반(58.0%)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영유아·아동기(0~9세)의 발달장애인은 7.8%, 고령(60~69세, 70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9.7%로 확인된다.

전국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서울수도 20~29세(25.8%), 10~19세(18.7%), 30~39세(18.5%)의 비중이 높고, 전국 대비 0~9세, 10~19세, 20~29세, 30~29세의 비중이 높으며,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의 비중은 낮다. 따라서 40세를 기점으로 하여 영유아·아동기·청소년기·성인초기기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2-4 】 전국 연령별 발달장애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합계
전체	인원	20,522	46,411	61,935	44,530	35,531	29,054	18,588	6,740	263,311
	비율	7.8	17.6	23.5	16.9	13.5	11.0	7.1	2.6	100.0
서울	인원	2,976	6,582	9,048	6,499	4,540	3,126	1,783	571	35,125
	비율	8.5	18.7	25.8	18.5	12.9	8.9	5.1	1.6	100.0
부산	인원	1,380	2,722	3,604	2,638	2,126	1,546	872	278	15,166
	비율	9.1	17.9	23.8	17.4	14.0	10.2	5.7	1.8	100.0
대구	인원	991	2,109	3,082	2,203	1,634	1,260	720	229	12,228
	비율	8.1	17.2	25.2	18.0	13.4	10.3	5.9	1.9	100.0
인천	인원	1,149	2,639	3,478	2,397	1,586	1,223	713	260	13,445
	비율	8.5	19.6	25.9	17.8	11.8	9.1	5.3	1.9	100.0
광주	인원	632	1,653	2,126	1,532	1,132	843	452	163	8,533
	비율	7.4	19.4	24.9	18.0	13.3	9.9	5.3	1.9	100.0
대전	인원	628	1,563	2,142	1,412	1,065	798	440	149	8,197
	비율	7.7	19.1	26.1	17.2	13.0	9.7	5.4	1.8	100.0
울산	인원	476	1,018	1,393	986	719	463	308	111	5,474
	비율	8.7	18.6	25.4	18.0	13.1	8.5	5.6	2.0	100.0
세종	인원	162	329	277	203	168	147	117	43	1,446
	비율	11.2	22.8	19.2	14.0	11.6	10.2	8.1	3.0	100.0
경기	인원	5,566	12,053	15,335	9,705	6,563	5,202	3,270	1,038	58,732
	비율	9.5	20.5	26.1	16.5	11.2	8.9	5.6	1.8	100.0
강원	인원	557	1,401	2,016	1,511	1,570	1,321	881	326	9,583
	비율	5.8	14.6	21.0	15.8	16.4	13.8	9.2	3.4	100.0
충북	인원	654	1,783	2,496	2,142	1,782	1,607	1,136	391	11,991
	비율	5.5	14.9	20.8	17.9	14.9	13.4	9.5	3.3	100.0
충남	인원	952	2,184	2,872	2,198	2,150	1,830	1,311	524	14,021
	비율	6.8	15.6	20.5	15.7	15.3	13.1	9.4	3.7	100.0
전북	인원	702	1,910	2,732	2,252	2,225	2,056	1,408	598	13,883
	비율	5.1	13.8	19.7	16.2	16.0	14.8	10.1	4.3	100.0
전남	인원	689	1,846	2,596	2,098	2,136	2,144	1,428	573	13,510
	비율	5.1	13.7	19.2	15.5	15.8	15.9	10.6	4.2	100.0
경북	인원	1,073	2,643	3,622	3,080	2,915	2,626	1,850	736	18,545
	비율	5.8	14.3	19.5	16.6	15.7	14.2	10.0	4.0	100.0
경남	인원	1,476	3,040	4,101	3,011	2,694	2,424	1,626	635	19,007
	비율	7.8	16.0	21.6	15.8	14.2	12.8	8.6	3.3	100.0
제주	인원	459	936	1,015	663	526	438	273	115	4,425
	비율	10.4	21.2	22.9	15.0	11.9	9.9	6.2	2.6	100.0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2023). 2015~2022년 장애인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5&vw_cd=MT_ZTITLE&list_id=&scr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docId=00099&markType=S&itmNm=%EC%A0%84%EA%B5%AD에서 2023.6.30. 인출 및 재구성

2) 서울시

(1) 전체

2022년 기준 서울시 등록 장애인은 391,859명으로, 이중 지적장애인 27,634명(7.1%), 자폐성장애인 7,491명(1.9%)으로 발달장애인이 전체의 9.0%(35,125명)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42.0%(164,464명)으로 가장 많고, 청각장애인 15.8%(61,995명), 시각장애인 10.5%(40,991명), 뇌병변 장애인 10.2%(39,859명) 다음으로 발달장애인은 다섯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5 서울시 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인원	391,859	164,464	39,859	40,991	61,995	3,421	27,634	7,491
비율	100.0	42.0	10.2	10.5	15.8	0.9	7.1	1.9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인원	16,546	18,883	998	2,156	2,715	385	3,087	1,234
비율	4.2	4.8	0.3	0.6	0.7	0.1	0.8	0.3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2023). 서울시 장애인 현황(장애유형별/연령별) 통계. <https://data.seoul.go.kr/dataList/10577/S/2/datasetView.do>에서 2023.6.30. 인출 및 재구성

2015년 이후 등록 장애인의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장애인은 2015년 393,245명에서 2022년 391,859명으로 0.4%(-1,386명) 소폭 감소한 반면에 발달장애인은 2015년 29,447명(7.5%)에서 2022년 35,125명(9.0%)으로 19.3%(5,67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2-6 서울시 발달장애인 연도별 인구동향

(단위: 명, %)

구분		2015 (a)	2017	2019	2021	2022 (b)	증감인원 (증감률: $b-a/a \times 100$)
전체	인원	393,245	391,753	394,843	392,123	391,859	-1,386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0.4
발달 장애인	인원	29,447	31,055	32,878	34,185	35,125	5,678
	비율	7.5	7.9	8.3	8.7	9.0	19.3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2023). 서울시 장애인 현황(장애유형별/연령별) 통계. <https://data.seoul.go.kr/dataList/10577/S/2/datasetView.do>에서 2023.6.30. 인출 및 재구성

(2) 지적·자폐성 장애유형별

발달장애 내 지적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83.8%에서 2022년 7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자폐성장애인은 2015년 16.2%에서 2022년 21.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대비 2022년 발달장애인 증가율은 19.3%(5,678명)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 11.9%(2,948명), 자폐성장애인 57.3%(2,730명)로 자폐성장애인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발달장애인 내 장애유형 비중을 변화추이를 고려해 볼 때 향후 자폐성장애인의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의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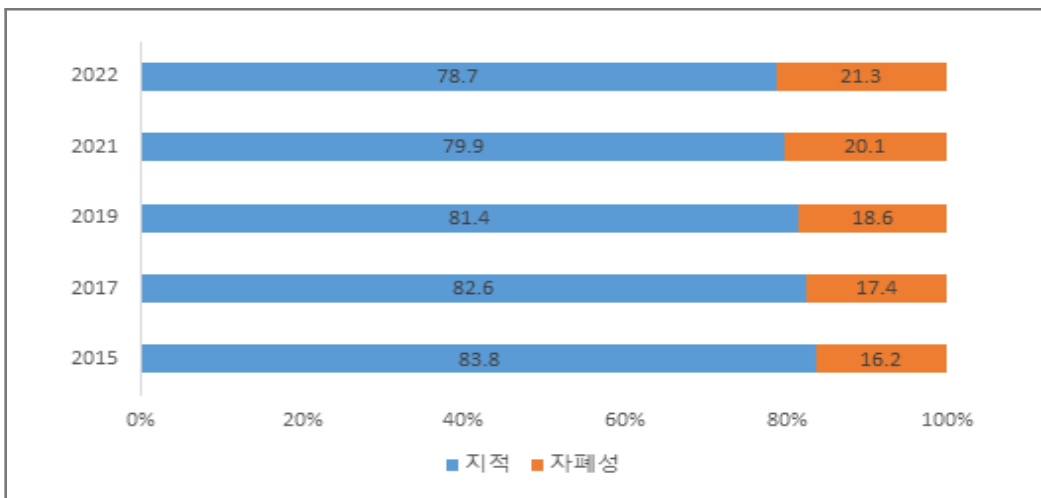


그림 2-1 발달장애 내 지적·자폐성 비중 변화 추이

표 2-7 발달장애 내 장애유형별 비중 변화 및 증가율

(단위: 명, %)

구분		2015 (a)	2017	2019	2021	2022 (b)	증감인원 (b-a/a×100)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인원	24,686	25,654	26,778	27,330	27,634	2,948
		비율	83.8	82.6	81.4	79.9	78.7	11.9
	자폐성장애인	인원	4,761	5,401	6,100	6,855	7,491	2,730
		비율	16.2	17.4	18.6	20.1	21.3	57.3
	전체	인원	29,447	31,055	32,878	34,185	35,125	5,678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9.3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2023). 서울시 장애인 현황(장애유형별/연령별) 통계. <https://data.seoul.go.kr/dataList/10577/S/2/datasetView.do>에서 2023.6.30. 인출 및 재구성

(3) 연령

서울시 전체 발달장애인의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20~29세가 25.8%(9,048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0~19세(18.7%, 6,582명), 30~39세(18.5%, 6,499명) 순으로, 20~30대의 성인기의 발달장애인이 44.3%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분포율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0~19세(2015년 23.4% → 2022년 18.7%)와 20~29세(2015년 26.7% → 2022년 25.8%)는 2015년 대비 2022년 감소한 반면, 그 외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10~19세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60~69세(2015년 3.2% → 2022년 5.1%)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발달장애인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8 연령별 발달장애인 변화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5	2017	2019	2021	2022
0~9세	인원	2,256	2,492	2,828	2,826	2,976
	비율	7.7	8.0	8.6	8.3	8.5
10~19세	인원	6,887	6,602	6,270	6,316	6,582
	비율	23.4	21.3	19.1	18.5	18.7
20~29세	인원	7,879	8,531	9,120	9,256	9,048
	비율	26.7	27.5	27.7	27.1	25.8
30~39세	인원	5,015	5,313	5,796	6,207	6,499
	비율	17.0	17.1	17.6	18.2	18.5

구분		2015	2017	2019	2021	2022
40~49세	인원	3,722	3,991	4,188	4,392	4,540
	비율	12.6	12.9	12.7	12.8	12.9
50~59세	인원	2,364	2,521	2,751	2,958	3,126
	비율	8.0	8.1	8.4	8.7	8.9
60~69세	인원	940	1,161	1,427	1,695	1,783
	비율	3.2	3.7	4.3	5.0	5.1
70세 이상	인원	384	444	498	535	571
	비율	1.3	1.4	1.5	1.6	1.6
합계	인원	29,447	31,055	32,878	34,185	35,125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2023). 서울시 장애인 현황(장애유형별/연령별) 통계. <https://data.seoul.go.kr/dataList/10577/S/2/datasetView.do>에서 2023.6.30. 인출 및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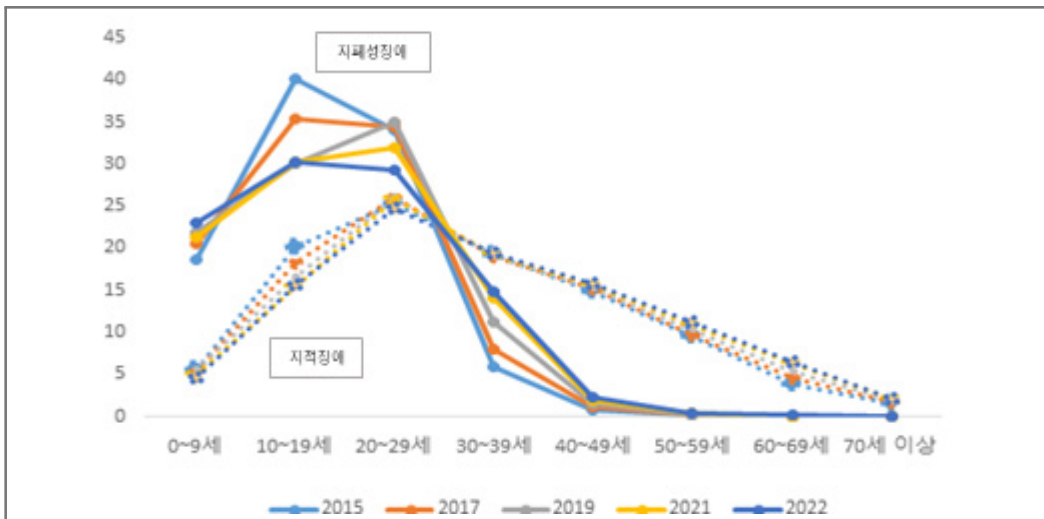


그림 2-2 | 발달장애인 내 장애유형의 비중 변화 추이

발달장애 내 세부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모두 평균연령이 증가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10~19세의 비중이 2015년 20.1%에서 2022년 15.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40세 이상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60~69세는 2015년 3.8%에서 2022년 6.4%로 그 증가폭이 두드러져, 지적장애인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폐성장애인도 지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10~19세의 비중이 2015년 40.2%에서 2022년 30.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40세 미만이 97.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0세 이상의 중고령 자폐성장애인은 2.6%에 불과하여,

발달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세부 장애유형별로 평균수명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9 장애유형별·연령별 발달장애인 변화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5		2017		2019		2021		2022	
		지적	자폐	지적	자폐	지적	자폐	지적	자폐	지적	자폐
0~9세	인원	1,366	890	1,382	1,110	1,493	1,335	1,357	1,469	1,246	1,730
	비율	5.5	18.7	5.4	20.6	5.6	21.9	5.0	21.4	4.5	23.1
10~19세	인원	4,972	1,915	4,682	1,920	4,434	1,836	4,236	2,080	4,318	2,264
	비율	20.1	40.2	18.3	35.5	16.6	30.1	15.5	30.3	15.6	30.2
20~29세	인원	6,254	1,625	6,665	1,866	6,982	2,138	7,060	2,196	6,851	2,197
	비율	25.3	34.1	26.0	34.5	26.1	35.0	25.8	32.0	24.8	29.3
30~39세	인원	4,733	282	4,880	433	5,109	687	5,245	962	5,392	1,107
	비율	19.2	5.9	19.0	8.0	19.1	11.3	19.2	14.0	19.5	14.8
40~49세	인원	3,682	40	3,928	63	4,096	92	4,265	127	4,373	167
	비율	14.9	0.8	15.3	1.2	15.3	1.5	15.6	1.9	15.8	2.2
50~59세	인원	2,355	9	2,513	8	2,740	11	2,940	18	3,104	22
	비율	9.5	0.2	9.8	0.1	10.2	0.2	10.8	0.3	11.2	0.3
60~69세	인원	940	0	1,160	1	1,426	1	1,692	3	1,779	4
	비율	3.8	0.0	4.5	0.0	5.3	0.0	6.2	0.0	6.4	0.1
70세 이상	인원	384	0	444	0	498	0	535	0	571	0
	비율	1.5	0.0	1.8	0.0	1.9	0.0	2.0	0.0	2.1	0.0
합계	인원	24,686	4,761	25,654	5,401	26,778	6,100	27,330	6,855	27,634	7,491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2023). 서울시 장애인 현황(장애유형별/연령별) 통계. <https://data.seoul.go.kr/dataList/10577/S/2/datasetView.do>에서 2023.6.30. 인출 및 재구성

(4) 자치구별·연령별

서울시 자치구별 발달장애인 분포율을 살펴보면, 노원구가 7.8%(2,746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강서구 7.0%(2,472명), 송파구 6.6%(2,321명), 은평구 6.4%(2,249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자치구는 5% 이하의 분포율을 보여 발달장애인이 특정 자치구에 밀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치구별 전체 장애인구 대비 발달장애인 비중은 송파구가 11.3%로 가장 높고, 뒤이어 강남구(10.9%), 강동구와 서초구(각각 10.7%), 노원구와 은평구(각각 10.3%) 순으로 나타났다. 중구가 6.9%로 가장 적고, 그 외 자치구는 7.2~8.8%로 서울시 전체(9.0%)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10 자치구별 발달장애인 분포율 및 비중

(단위: 명, %)

구분	발달장애인						장애인		발달 장애인 비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강남구	1,037	3.8	617	8.2	1,654	4.7	15,158	3.9	10.9
강동구	1,485	5.4	519	6.9	2,004	5.7	18,785	4.8	10.7
강북구	1,227	4.4	195	2.6	1,422	4.0	17,186	4.4	8.3
강서구	2,041	7.4	431	5.8	2,472	7.0	28,508	7.3	8.7
관악구	1,389	5.0	300	4.0	1,689	4.8	20,228	5.2	8.3
광진구	805	2.9	210	2.8	1,015	2.9	12,183	3.1	8.3
구로구	1,258	4.6	342	4.6	1,600	4.6	18,520	4.7	8.6
금천구	791	2.9	148	2.0	939	2.7	11,615	3.0	8.1
노원구	2,321	8.4	425	5.7	2,746	7.8	26,696	6.8	10.3
도봉구	1,110	4.0	210	2.8	1,320	3.8	15,345	3.9	8.6
동대문구	916	3.3	193	2.6	1,109	3.2	15,481	4.0	7.2
동작구	895	3.2	259	3.5	1,154	3.3	14,317	3.7	8.1
마포구	853	3.1	245	3.3	1,098	3.1	12,904	3.3	8.5
서대문구	824	3.0	201	2.7	1,025	2.9	12,348	3.2	8.3
서초구	749	2.7	336	4.5	1,085	3.1	10,158	2.6	10.7
성동구	704	2.5	211	2.8	915	2.6	11,092	2.8	8.2
성북구	1,176	4.3	272	3.6	1,448	4.1	17,471	4.5	8.3
송파구	1,558	5.6	763	10.2	2,321	6.6	20,571	5.2	11.3
양천구	1,201	4.3	342	4.6	1,543	4.4	17,621	4.5	8.8
영등포구	879	3.2	258	3.4	1,137	3.2	14,654	3.7	7.8
용산구	526	1.9	142	1.9	668	1.9	7,621	1.9	8.8
은평구	1,837	6.6	412	5.5	2,249	6.4	21,732	5.5	10.3
종로구	399	1.4	109	1.5	508	1.4	5,834	1.5	8.7
중구	307	1.1	76	1.0	383	1.1	5,552	1.4	6.9
중랑구	1,346	4.9	275	3.7	1,621	4.6	20,279	5.2	8.0
합계	27,634	100.0	7,491	100.0	35,125	100.0	391,859	100.0	9.0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2023). 서울시 장애인 현황(장애유형별/연령별) 통계. <https://data.seoul.go.kr/dataList/10577/S/2/datasetView.do>에서 2023.6.30. 인출 및 재구성

자치구별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0~9세와 10~19세의 영유아·아동·청소년기는 송파구(각각 8.0%, 7.0%), 20~29세와 30~39세의 성인기는 노원구(각각 7.5%, 8.8%), 40~49세와 50~59세의 중·장년기는 노원구(각각 8.8%, 8.7%)와 강서구(각각 8.0%, 8.3%), 60세 이상의 노년기는 강서구(19.1%)에서 각각 높게 나타나, 지역별로 연령 편중 현상이 확인되었다.

【 표 2-11 】 자치구 연령별 발달장애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시	2,976	100.0	6,582	100.0	9,048	100.0	6,499	100.0	4,540	100.0	3,126	100.0	1,783	100.0	571	100.0
강남구	165	5.5	400	6.1	400	4.4	286	4.4	179	3.9	98	3.1	94	5.3	32	5.6
강동구	174	5.8	423	6.4	525	5.8	372	5.7	224	4.9	164	5.2	97	5.4	25	4.4
강북구	107	3.6	207	3.1	387	4.3	266	4.1	191	4.2	158	5.1	83	4.7	23	4.0
강서구	186	6.3	365	5.5	566	6.3	501	7.7	362	8.0	258	8.3	184	10.3	50	8.8
관악구	134	4.5	304	4.6	451	5.0	314	4.8	210	4.6	160	5.1	86	4.8	30	5.3
광진구	68	2.3	185	2.8	281	3.1	192	3.0	149	3.3	83	2.7	44	2.5	13	2.3
구로구	150	5.0	319	4.8	391	4.3	332	5.1	198	4.4	116	3.7	72	4.0	22	3.9
금천구	76	2.6	178	2.7	237	2.6	181	2.8	117	2.6	95	3.0	44	2.5	11	1.9
노원구	166	5.6	435	6.6	678	7.5	569	8.8	399	8.8	271	8.7	173	9.7	55	9.6
도봉구	99	3.3	222	3.4	382	4.2	245	3.8	181	4.0	121	3.9	55	3.1	15	2.6
동대문구	77	2.6	181	2.7	267	3.0	214	3.3	157	3.5	123	3.9	68	3.8	22	3.9
동작구	98	3.3	202	3.1	303	3.3	201	3.1	145	3.2	110	3.5	67	3.8	28	4.9
마포구	96	3.2	221	3.4	300	3.3	186	2.9	141	3.1	83	2.7	53	3.0	18	3.2
서대문구	105	3.5	210	3.2	276	3.1	150	2.3	129	2.8	89	2.8	53	3.0	13	2.3
서초구	131	4.4	285	4.3	277	3.1	181	2.8	105	2.3	64	2.0	27	1.5	15	2.6
성동구	94	3.2	149	2.3	271	3.0	154	2.4	97	2.1	87	2.8	53	3.0	10	1.8
성북구	127	4.3	312	4.7	383	4.2	224	3.4	189	4.2	129	4.1	64	3.6	20	3.5
송파구	237	8.0	459	7.0	603	6.7	471	7.2	275	6.1	163	5.2	76	4.3	37	6.5
양천구	139	4.7	344	5.2	408	4.5	264	4.1	183	4.0	118	3.8	72	4.0	15	2.6
영등포구	100	3.4	234	3.6	285	3.1	213	3.3	151	3.3	96	3.1	39	2.2	19	3.3
용산구	60	2.0	139	2.1	146	1.6	112	1.7	101	2.2	72	2.3	25	1.4	13	2.3
은평구	192	6.5	426	6.5	552	6.1	384	5.9	318	7.0	225	7.2	115	6.4	37	6.5
종로구	38	1.3	88	1.3	125	1.4	96	1.5	58	1.3	62	2.0	32	1.8	9	1.6
중구	28	0.9	46	0.7	104	1.1	68	1.0	66	1.5	39	1.2	24	1.3	8	1.4
중랑구	129	4.3	248	3.8	450	5.0	323	5.0	215	4.7	142	4.5	83	4.7	31	5.4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2023). 서울시 장애인 현황(장애유형별/연령별) 통계. <https://data.seoul.go.kr/dataList/10577/S/2/datasetView.do>에서 2023.6.30. 인출 및 재구성

2 중앙정부 및 서울시 발달장애인 정책

1) 중앙정부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법」은 국내 최초로 특정 장애유형만을 다룬 단독 법률로써 2014년 5월 2일에 제정되어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한다. 이를 위해서 발달장애인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발달장애인 권리의 보장(제2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제3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제4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제5장), 보칙(제6장), 벌칙(제7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2-12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발달장애인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책무, 실태조사 등
제2장 발달장애인 권리의 보장	자기결정권의 보장,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지원, 자조단체의 결성 등,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신고의무,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복지서비스의 신청,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계좌의 관리 등, 조기진단 및 개입, 재활 및 발달지원,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소득보장, 거주시설돌봄 지원, 주간활동방과후 활동 지원 등
제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상담지원, 휴식지원 등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센터의 임무,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서비스의 제공 등
제6장 보칙	지도와 감독, 보고와 검사, 위암위탁
제7장 벌칙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

출처: 국가법령센터(20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0%9C%EB%8B%AC%EC%9E%A5%EC%95%A0%EC%9D%B8%EA%B6%8C%EB%A6%AC%EB%B3%B4%EC%9E%A5%EB%B0%8F%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에서 2023.7.30. 인출

한편, 2022년 5월 29일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국가 책임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인해 돌봄 부담이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생활,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 전문적·통합적 통합돌봄서비스 제공하고자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이 신설된 점이다. 이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23c).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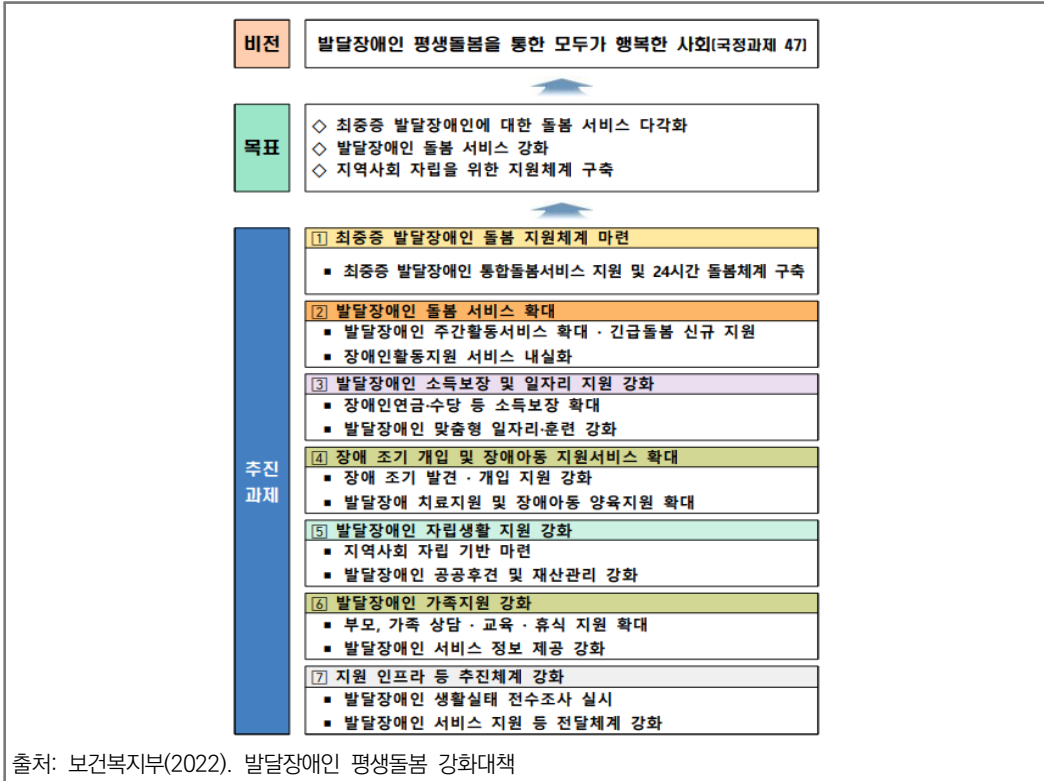
[시행일: 2024. 6. 11.] 제29조의3

출처: 국가법령센터(20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0%9C%EB%8B%AC%EC%9E%A5%EC%95%A0%EC%9D%B8%EA%B6%8C%EB%A6%AC%EB%B3%B4%EC%9E%A5%EB%B0%8F%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에서 2023.7.30. 인출

(2) 발달장애인 관련 기본계획

①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중앙정부는 발달장애 특성과 가족부담 경감을 고려한 서비스의 도입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왔으나, 여전히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은 해결되지 않았고, 개인의 특성이나 욕구에 맞춘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강정배, 박계신, 손희경, 2021, 김미옥, 2023). 그리고 최근 연달아 발달장애인 가족 사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부모단체 추모행사나 언론 보도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및 2차 생애주기별 대책 수립의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를 통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지원 강화를 통한 국정과제의 이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1월 ‘발달장애인 평생돌봄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7대 중점과제와 2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Ⅱ 그림 2-3 Ⅱ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의 전 및 목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체계 마련’,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강화’, ‘장애 조기개입 및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지원 인프라 등 추진체계 강화’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체계 마련: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24.6월),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 확대, 24시간 활동지원 강화 및 활동지원사의 가산급여 지원대상단가 확대, 주간활동서비스의 1인 집중서비스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일일적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산정특례 및 65세 미만 노인설 질환자 등 활동지원 대상 확대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강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인상, 발달장애인 특화 신규 직무 개발, 표준사업장 확장, 공공부문 고용의무 이행 독려 및 근로지원인·직무지도원 배치

- 장애 조기 개입 및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확대: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및 신청 절차 간소화 추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및 바우처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확충, 장애돌보미 지원시간 확대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시설·재가 장애인, 집중돌봄 대상 등 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 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모형 개발, 시범사업 실시 및 본사업 추진, 공공후견인 확대 및 활동비용 인상, 공공신탁 시범사업 실시 및 본사업 추진
-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부모상담 확대, 영유아가성인전환기 등 부모교육 및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기술훈련 강화, 가족휴식 확대, 위기가구 긴급전화, AI 안부확인 서비스 개발 및 지원
- 지원 인프라 등 추진체계 강화: 전수조사 모형 개발 및 선도 지역 대상 적용조사, 지자체 전수조사 추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역장애인통합지원센터 등 전달체계 기능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표 2-13 | 2023년 장애인관련 예산(안)

(단위: 억원, 억원, %(억원))

		'22	'23(안)	증가율(증가액)
장애인 맞춤형 지원	장애인연금	8,326	8,787	5.5(460)
	장애수당(기초)	816	1,429	75.1(613)
	장애수당(차상위 등)	608	721	18.5(113)
	장애인일자리지원	1,853	2,073	11.9(220)
	장애인활동지원	17,405	19,919	14.4(2,514)
	발달장애인 지원	2,080	2,528	21.5(447)
	장애아동가족지원	1,492	1,757	17.8(266)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신규)	-	6	-

출처: 보건복지부(2023b).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편성.

② 제6차('23~27)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8년부터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다. 1998년 이후 2023년 현재 까지 총 6차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차~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비전, 세부과제, 주요정책 등 각 종합계획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2-14 제1차-제5차 장애인종합계획의 변화 과정

구분	1차('98~02)	2차('03~07)	3차('08~12)	4차('13~17)	5차('18~22)
비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보장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통합적 사회실현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 사회
세부 과제	3대 분야 71개 세부과제	7대 분야 103개 세부과제	4대 분야 58개 세부과제	4대 분야 71개 세부과제	5대 분야 70개 세부과제
주요 정책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 고용 지원	장애수당 확대, 장애아 무상보육, 문화바우처 도입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도입	장애등급제 개편, 맞춤형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권리보장 및 종합 지원체계 구축, 탈 시설주거지원
참여부처	3개 부처	5대 부처	12개 부처	12개 부처	12개 부처

출처: 보건복지부(2023a).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새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장애인정책 추진전략과 실행과제로 전차년도 계획의 성과 분석과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수립되었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두텁게 지원하고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확대하며, 수요자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살아가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이다. 본 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하며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9대 정책분야, 30개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 1대 정책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 결정권 강화'에서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 마련'을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추진과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낮 활동서비스 고도화',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지원 확대'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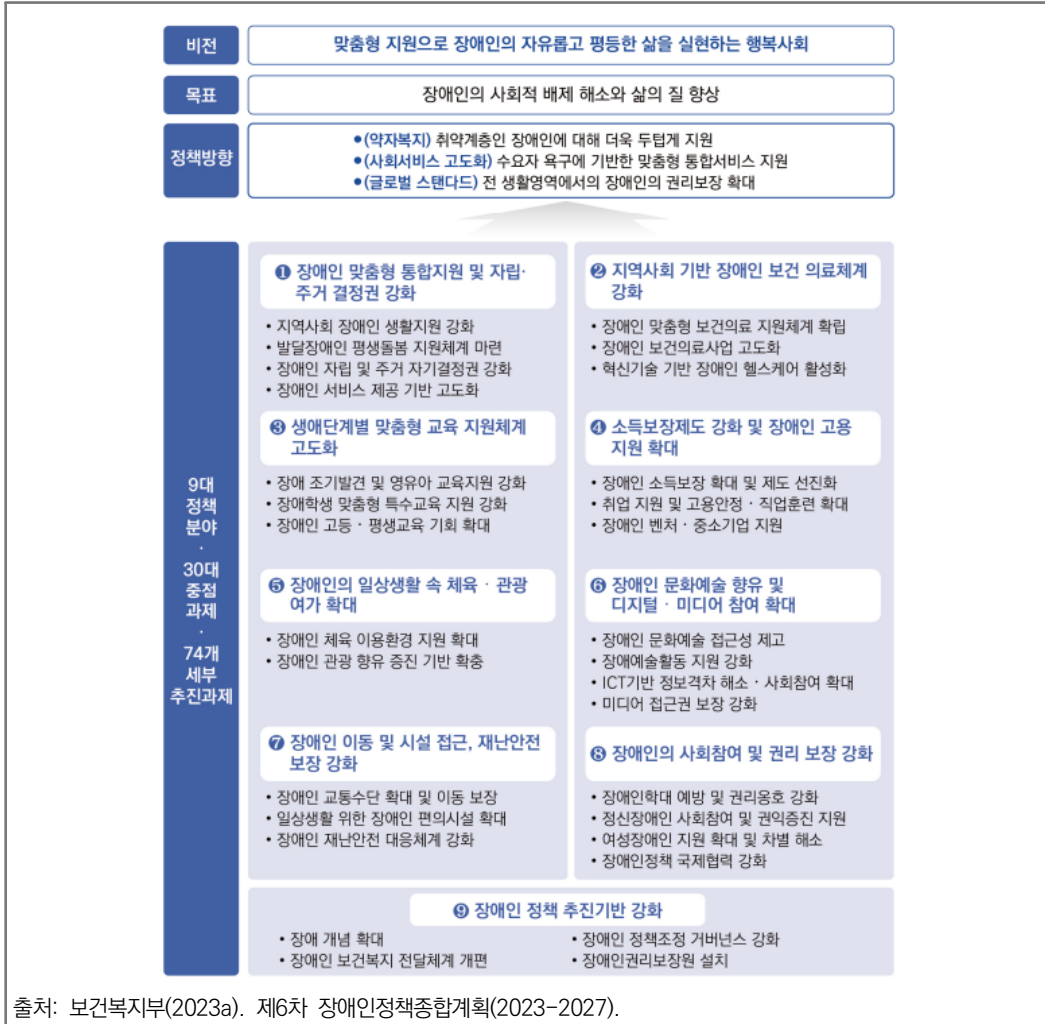
첫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체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욕구,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24시간 지원체제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야간 지원, 주간 지원, 치료 지원, 부모·가족 지원, 자립 지원, 지원 인프라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야간 지원: 최중증 24시간 돌봄지원의 전국 확대, 24시간 재가 돌봄 지원, 취약시간 돌봄 강화를 위한 보완적 돌봄 서비스 개발(응급안전안심서비스, 콜센터, 긴급돌봄 등)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지원: 1인 집중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주간보호시설 우선 입소 지원, 농어촌 등 주간활동 참여가 어려운 지역의 복지관 일대일 낮활동 지원 강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치료 지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전국 확충 및 권역별·지역단위별 설치방안 마련, 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조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 최중증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 등을 통한 부모상담 및 교육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개발 및 지자체 시행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공공 주도(국민연금공단 수탁)의 공공신탁 시범사업 및 본 사업 실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 확대 및 법률 지원 등 권익옹호 강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인프라 강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인력 및 인프라 확충 등

둘째, 발달장애인 낮 활동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며, 낮 활동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방과후 1인 집중서비스, 고령층농어촌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방과후 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담 주간보호시설 도입·확대 등 장애정도·연령·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의 다각화가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 지원 확대를 위해 부모교육상담, 가족휴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7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일시돌봄체계가 마련된다. 긴급돌봄센터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평가 후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그림 2-4】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

③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최종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1:1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2022년 6월 개정된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하여 추진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23c).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크게 ‘최종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과 ‘최종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 강화’로 구분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 수준에 따라 전자는 24시간 개별 1:1 지원으로, 후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주간 개별 1:1 지원, 주간 그룹형 1:1 지원으로 배치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23c).

먼저, 24시간 개별 1:1 지원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광주시의 최종증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4년 기준 34개소가 운영될 계획이며, 장애인복지관, 주간 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통한 주간활동 및 공동생활 지원주택 융합지원 등 낮활동 지원 외에 주거지원이 포함된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다. 주간 활동 시에는 이용인 1명당 제공인력 1명을 추가 지원하여 낮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야간에는 지원주택에 제공인력을 지원하여 관계 형성 및 일상생활수행훈련을 지원한다.

주간 개별 1:1 지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챌린지2)과 비슷 형태로,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복지관 등에 시설 보강과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최종증 발달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용인 1명당 제공인력 1명이 지원되며, 개별 장애인의 욕구에 맞추어 독서, 산책, 체육, 음악, 미술활동 등 지역사회 생활훈련을 제공한다. 주간 그룹형 1:1 지원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간활동 1인 집중 서비스를 재편하여 새롭게 제공된다. 1:1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집중적·개별적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2~3인 그룹에 추가로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최종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은 지자체에 서비스 신청 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심사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개인별 장애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라 24시간 돌봄이나 주간 돌봄(개별/그룹형) 서비스를 배치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24.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수행기관 선정, 공간 개선, 돌봄 인력 채용 등의 사전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표 2-15 |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사업(안)

구분		24시간 개별 1:1 지원	주간 개별 1:1 지원	주간 그룹형 1:1 지원
이용자	연령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규모	340명	500명	1,500명
	선정기준	연구중		
서비스	서비스	24시간 1:1 돌봄 지원	낮시간 1:1 돌봄 지원	낮시간 그룹 활동 참여 지원
	주거지원	○	-	-
	제공시간	검토 중	검토 중	일 최대 8시간(주중) 월 최대 176시간 *확장형 기준
	본인부담금	검토 중	검토 중	본인부담금 없음
제공기관	기관수	전국 34개소 1개소당 최종증 10명 지원	전국 125개소 1개소당 최종증 4명 지원	주간활동바우처 제공기관
	운영주체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 포함)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 포함)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 포함)
	시설기준	99㎡이상	33㎡이상	이용자 1명당 3.3㎡이상의 전용공간 등
	인력기준	<주간종사자> 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장애인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야간종사자> 주간 종사자 자격 ①~⑦ + ⑧「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만65세 이하 연령제한 有)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평생교육사, 장애인에게 직접서비스 제공경험 1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학위소지자 등
지원내용	예산 약 997백만원(1개소)+ 바우처*(주간활동 수익금) *기본단가의 150%	예산 약 229백만원	바우처(주간활동) 수익금 *바우처 단가(16,150원)의 150%지급	

※ 음영부분은 사업내용 미확정

출처: 보건복지부(2023c).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추진 설명자료(2023.10.20.)

한편, 이를 반영하여 2023년 8월 30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으며,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이 대거 반영되었다. 장애인 관련 예산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맞춤형 지원’ 영역에서 연금 및 장애수당 인상, 일자리 확대 등 소득보장 강화와 관련하여 1,407억 원이 증가한 13,010억 원, 활동지원과 긴급돌봄 등 돌봄 영역에 있어서 3,226억 원이 증가한 24,203억 원으로, 총 37,213억 원(4,633억 증가)이 배정되었다(보건복지부, 2023b). 특히, 돌봄 영역에서의 예산안 증가가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발표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및 가족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신규 사업의 시행 및 기존 사업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갑작스런 돌봄 공백 발생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이 올해 4월부터 시작되었고, 발달장애인 개별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돌봄 서비스 등이 시행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23b).

2) 서울시

(1)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 추진에 대한 시정의 책무와 발달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견수렴, 지원 사업, 평생교육센터의 지정·지원 및 업무역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2-16】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2조 정의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함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홍보,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센터로 정의함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 - 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발달장애인의 조기발견·지원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의 재활 등과 관련한 연구조사·시행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계획,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제7조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시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름
제8조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 평생교육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함
제9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고도비만·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인문교양·직업능력 향상·기초 문해·문화·예술·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함
제10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해야함. 시장은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센터를 자치구에 설치할 수 있음 -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감독,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함 - 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그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B%B0%9C%EB%8B%AC%EC%9E%A5%EC%95%A0%EC%9D%B8%20%EA%B6%8C%EB%A6%AC%EB%B3%B4%EC%9E%A5%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iiBgcolor12>에서 2023.7.30. 인출

(2) 제1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16~2020)

「제1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16-2020)」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17년 9월 발표되었다(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2017.9.7). 「제1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16-2020)」은 ‘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 행복한 서울’을 비전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서울’,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서울’,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서울’의 3대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총 33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서울: 선배치·후후련 커리어플러스센터 설치, 미래형 직업재활시설 다양화 및 확대, 발달장애인 일자리 전담팀 구성 운영,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 확대, 자립생활센터 등에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서울: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신규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활성화, 재가 장애인 새로운 형태의 주거모형 개발·운영, 발달장애인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가활센터’ 조성·운영 등
-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서울: 중증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도입,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권익보장 제도 마련, 발달장애의 조기진단 및 진료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기본 구상 시범 운영 등

「제1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16-2020)」에 따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최중증 낮 활동 사업’ 등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발달장애인 서비스가 도입된 결과, 오랜 기간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을 경감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김현승, 이의정, 2020). 하지만 여전히 고령 발달장애인, 중복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인과 가족은 소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김현승, 이의정, 2020).



■ 그림 2-5 ■ 제1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비전도

(3) 제2기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1~2025)

「제2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1~2025)」은 발달장애인 인구구조의 변화,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긴급 돌봄의 필요성 증대,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가족 돌봄 부담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등 변화하는 서울시의 복지 환경을 반영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학계·현장 전문가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제1기 기본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의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다(김현승, 이의정, 2020).

「제2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1~2025)」의 비전은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도시 서울’로,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평생설계지원 강화’, ‘자기주도적 삶 및 자립생활 기반 확충’, ‘지역사회 공감 문화 조성’, ‘위기대응체계 마련 및 가족 지원 확대’, ‘복지와 기술 융합 스마트 서비스 기반 구축’의 5대 정책과제(중점분야)를 설정하고, 14개 핵심과제, 34사업(계속 11개, 확대 10개, 신규 13개)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책과제별 핵심사업(신규 사업만 제시)은 다음과 같다.

- 평생설계 지원 강화: 조기발견 및 증재서비스 강화, 발달장애학생 맞춤형 지원확대, 성인발달장애인 건강관리 및 낮 활동 지원 확대, 고령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기반 마련 등
- 자기주도적 삶 및 자립생활 기반 확충: 개인별 맞춤형 지원 강화,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및 고용 지원, 탈시설 및 지역사회 지원생활 기반 확충 등
- 지역사회 공감문화 조성: 도전적 행동 지원 강화, 문화예술체육 활동 향유기회 보장, 인권보호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 등
- 위기대응체계 마련 및 가족 지원: 위기가정 발굴 및 긴급 돌봄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및 지원 확대 등
- 복지와 기술 융합 스마트 서비스 기반 구축: 비대면 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지원의 선진화 등



그림 2-6 제2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비전도

3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 현황

본 절에서는 서울시가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3)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 목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및 제81조, 시행령 제4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을 지원한다.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 기능의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대상 및 내용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 낮활동 지원시설로, 서울시 거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일상생활, 여가활동, 교육·훈련, 지역사회적응활동, 특별활동 등 다양한 낮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지원대상, 급여시간/량, 서비스 단가, 서비스 내용, 제공인력 등 사업의 대략적인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2-17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업내용

	주요 내용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장애유형·성별에 따라 시설에서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선정방식	이용 장애인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자체 심의를 거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 중증 장애(중복 장애 등) 우선 배려
급여시간/량	월~금 09:00~18:00/기간마다 상이
서비스 단가	이용자 부담(이용료 최소 10,000원 ~ 최대 340,000원)

	주요 내용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지원: 식사 및 간식지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 및 일상생활훈련 등을 통해 자립 생활능력을 배양 ◦ 여가활동 지원: 의미있는 낮 시간 활동을 위한 문화·예술, 스포츠, 여가·취미 활동 등 체험위주의 여가활동 제공 ◦ 교육·훈련 지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전, 교양 및 언어·인지 등의 교육과 직업훈련, 사회구성원으로써의 권리의 이해를 위한 성교육, 인권교육 등의 교육·훈련 지원 ◦ 지역사회적응활동 지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대중교통 이용 등 활동 서비스 지원 ◦ 특별활동 지원: 여행, 캠프 및 기념일 활동 등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하고 정서함양을 통한 자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활동 서비스 지원 ◦ 자원봉사자 개발 및 실습생교육지도: 이용 장애인의 욕구와 사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개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사회복지 현장의 이해를 위한 사회복지 현장실습생 지도 ◦ 기타: 교통 편의 제공 및 가족 상담 등의 가족 지원 <p>※ 1개 시설당 이용 장애인 실인원은 최소 10인으로 운영</p>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p>(제공기관) 134개소(미지원 6개소 포함) (종사자 배치기준)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참고</p> <table border="1"> <thead> <tr> <th>직종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시설장</td> <td>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함(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타시설과 겸임 가능)</td> </tr> <tr> <td>사회재활교사</td> <td>이용장애인 3인당 1인 배치</td> </tr> <tr> <td>사무원</td> <td>시설당 1인(지자체 협의)</td> </tr> <tr> <td>기능직</td> <td>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능직 1인(단, 기른 직종이 겸직하는 경우 사회재활교사로 대체 배치 가능)</td> </tr> </tbody> </table> <p>- 재활치료를 위한 사회재활교사를 치료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재활상담사 등) 및 특수교사로 채용할 수 있음</p>	직종별	비고	시설장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함(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타시설과 겸임 가능)	사회재활교사	이용장애인 3인당 1인 배치	사무원	시설당 1인(지자체 협의)	기능직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능직 1인(단, 기른 직종이 겸직하는 경우 사회재활교사로 대체 배치 가능)
직종별	비고										
시설장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함(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타시설과 겸임 가능)										
사회재활교사	이용장애인 3인당 1인 배치										
사무원	시설당 1인(지자체 협의)										
기능직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능직 1인(단, 기른 직종이 겸직하는 경우 사회재활교사로 대체 배치 가능)										
유사서비스와의 중복이용 가능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보호시설 밖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가능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방과후서비스 이용 불가 										

출처: 보건복지부(2023d).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내부 행정자료 재구성

(3) 규모

2023년 1월말 기준 서울시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총 134개소가 있으며, 종사자는 515명, 이용정원은 1,692명으로 확인된다. 이용자 정원은 1,692명, 현원은 1,641명으로 약 50명 정도가 충원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2-18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현황(2022.12월말 기준)

(단위: 개소, 명)

지원여부	개소	유형별				종사자 현원	이용자 정원	이용자 현원
		시각	청각	뇌병변	중복			
계	134	5	2	7	120	515	1,692	1,641
지원	128	5	2	5	116	494	1,618	1,577
미지원	6	-	-	2	4	21	74	64

출처: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내부 행정자료를 재구성.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1) 목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 지원) 및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학령기 이후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응 교육 등을 제공한다.

(2) 대상 및 내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학령기 이후 만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교육, 건강, 돌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지원대상, 급여시간/량, 서비스 내용, 제공인력 등 사업의 대략적인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2-19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내용

	주요 내용
지원대상	학령기 이후(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소득기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선정방식	「발달장애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우선 선발하고 센터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입학대상자를 심사하여 선정
급여시간/량	월·금 09:00~18:00(단과반 2개소 시범운영)/이용기간 5년
서비스 단가	이용자 부담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건강, 돌봄 등 종합서비스 제공 ◦ 필수교육: 성인문자해독교육(의사소통), 사회적응, 건강관리, 직업전환 및 긍정적 행동 지원 등 ◦ 선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 문화, 스포츠 등 센터 이용 발달장애인이 필수과목 외에 희망하는 과목을 우선하여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목 지정 - 시설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완 및 필요성을 일정한 과목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제공기관) 24개소 - 재정부담 비율, 인접시설 활용도,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공모하여 운영 (제공인력) 센터당 12명 이상(이용인 3명당 교사 1명), 센터당 특수교사 1인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유사서비스와의 중복이용 가능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이용 불가 - 평생교육센터 밖에서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가능 - 평생교육센터 주 20시간 이내 이용자는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중복 이용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2023e).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의 내용을 재구성.

(3) 규모

2016년 노원구와 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시작으로 2022년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까지 총 24개소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개소·운영 중에 있다. 2023년 상반기에 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개소되면 모든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표 2-20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현황(2022.12월말 기준)

지원여부	개소	종사자		이용자		장애유형 (주장애 기준)		
						발달장애		발달 외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지적	자폐성	
계	25	302	301	759	659	415	230	14

출처: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내부 행정자료를 재구성.

3)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수행기관)

(1) 목적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은 도전행동을 하는 성인 발달 및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낮시간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와 지역사회의 적응을 지원한다.

(2) 대상 및 내용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의 발달, 뇌병변 장애인 중 도전행동으로 인해 그동안 낮활동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온 최종증 장애인에게 개인별 도전행동에 맞는 맞춤형 행동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각 복지관에서 개별 모집 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선정위원회의 사정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 복지관에 배치된다. 복지관에 배치되는 인원은 최대 4명으로, 이용 장애인의 개별화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배치한다.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급여시간/량, 서비스 내용, 제공인력 등 사업의 대략적인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발달장애인 안심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 표 2-21 】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내용

	주요 내용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발달, 시각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 중 - 발달장애인: 도전행동이 있는 최종증 장애인 - 뇌병변장애인: 중증 중복 뇌병변 장애인
소득기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선정방식	복지관에서 모집 후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 사정 평가 후 복지관에 배치
급여시간/량	주 4일(월, 화, 목, 금) 10:00~16:00/이용기간 최대 5년
서비스 단가	이용자 부담(이용료 20만원(수급자 감면), 식대비 별도)
서비스 내용	- 개인별 도전행동에 맞는 맞춤형 긍정행동지원 및 부모교육 - 이용인 배치기준: 개소당 4명 이내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제공기관) 23개소(발달 17, 뇌병변 5, 시각·중복 1) (제공인력) 개소당 전담 인력 2명, 보조인력(보람일자리) 2~4명
유사서비스와의 중복이용 가능여부	-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 주 20시간 이내 이용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출처: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내부 행정자료를 재정리

(3) 규모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은 자치구 최초로 서울시에서 2년간의 시범사업(2017.7.1.~2019.6.30.)으로 시작되었으며, 2019년 이후 사업이 확대되어 2023년 현재 2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자는 총 85명이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시설 17개소, 뇌병변장애인 시설 5개소, 시각·중복장애인 시설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12월말 현재 발달장애인 61명, 뇌병변장애인 24명이 이용하고 있다.

【 표 2-22 】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내용(2022.12월말 기준)

(단위: 개소, 명, 명)

시설	이용자	
	정원	현원
23 (발달 17, 뇌병변 5, 시각·중복 1)	96	85 (발달 61, 뇌병변 24)

출처: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내부 행정자료를 재정리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 목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시설설치) 및 제81조(비용보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직업적응훈련 등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2) 대상 및 내용

직업재활시설은 경쟁고용시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학령기 이후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설유형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수준에 따라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작업장,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근로작업장은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며, 경쟁고용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하는 하는 시설로써 최소기준 근로장애인 30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보호작업장은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등을 통해 근로사업장이나 경쟁 고용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로 최소기준 근로장애인 10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작업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훈련을 제공하여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 등으로 전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로 최소기준 훈련장애인 20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대상, 급여시간/량, 서비스 내용, 제공인력 등 사업의 대략적인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내용

	주요 내용
지원대상	학령기 이후(만 18세 이상) 장애인
소득기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급여시간	통상적으로 월~금 09:00~18:00/기관마다 상이
시설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 참고 ◦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장애인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

서울시 발달장애인 안심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			
		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시설별 이용 장애인 최소 인원)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최소 인원	근로장애인 10명	근로장애인 30명	근로장애인 20명
		*근로장애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계약을 체결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제공기관) 139개소 (제공인력) 종사자 배치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름				
	직종별	배치기준	비고		
	시설장	1명	시설당 1명		
	사무국장	1명	이용장애인 30명 이상인 경우 1명		
	직업훈련 교사	1명	-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 10명당 1명(10명 초과시 반올림)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 12명당 1명(12명 초과시 반올림하여 지원)		
	간호사	1명	이용장애인 50명 이상인 시설(단, 이용장애인의 건강상태 및 근로환경 등을 고려하여 간호사의 배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배치하지 않음)		
	영양사	1명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사무원	1명	시설당 1명		
	생산 및 판매관리기 사	1명	-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10명당 1명(10명 초과시 반올림하여 지원) -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20명당 1명(20명 초과시 반올림하여 지원)		
	시설관리기 사	1명	자체시설이나 기숙시설을 운영하거나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를 합산하여 50명 이상인 경우 시설당 1명		
조리원	1명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위생원	1명	급식시설 및 기숙시설이 있는 경우 배치			
유사서비스 중복이용 가능여부	- 직업재활시설 밖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가능 - 직업재활시설 20시간 이내 이용자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2023d) 2023 장애인복지시설 안내와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2023) 내부 행정자료를 정리 및 재구성

(3) 규모

2022년 12월말 기준 서울시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총 143개소로(미지원 시설 4개소 포함), 보호작업장 122개소, 근로사업장 12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 9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 장애인 수는 총 4,182명으로, 보호작업장 3,325명, 근로사업장 637명, 직업적응훈련시설 22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2022.12월말 기준)

(단위: 개소, 명)

	시설 수		종사자		이용자	
	지원 시설	미지원 시설	정원	현원 (인건비 지원)	정원	현원
보호작업장	118	4	705	642	-	3,325
근로사업장	12	-	183	182	-	637
직업적응훈련시설	9	-	38	38	-	220
합계	139	-	926	862	4,890	4,182

출처: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정책과(2023) 행정자료를 재정리함

시설 규모별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 48개소(34.53%, 이용 장애인 1,179명), 30인 이상 40인 미만 시설 40개소(27.78%, 이용 장애인 1,300명)로 전체 시설의 60% 이상(63.31%, 이용 장애인 2,479명)이 20인 이상 40인 미만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2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27개소(이용 장애인 414명), 50인 이상 대규모 시설은 10개소(이용 장애인 674명)가 운영되고 있다.

【표 2-2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 규모 및 이용자 현황(2022.12월말 기준)

(단위: 개소, 명)

	계	20인 미만	2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40인 미만	40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70인 미만	70인 이상
시설규모 (분포율)	139	27 (19.42%)	48 (34.53%)	40 (28.78%)	14 (10.07%)	7 (5.04%)	3 (2.16%)
이용 장애인	4,182	414	1,179	1,300	615	399	275

출처: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정책과(2023). 내부 행정자료를 재구성.

장애유형별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이용자 4,182명 중 지적장애인 2,780명, 자폐상 531명으로 발달장애인이 약 7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달 외는 20.8%로 확인된다.

【표 2-2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유형별 이용자 현황(2022.12월말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지적	자폐	시각	정신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	뇌전증	안면	심장	신장	기타
계	4,182	2,780	531	272	230	184	93	61	10	12	1	0	5	3
분포율	100.00	66.48	12.70	6.50	5.50	4.40	2.22	1.46	0.24	0.29	0.02	0.00	0.12	0.07

출처: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정책과(2023). 내부 행정자료를 재구성.

4 소결

본 장에서는 서울시 발달장애인의 주간 돌봄 및 활동 지원정책을 살펴보고자 서울시 발달장애 인구 현황 및 변동 추이,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정책 현황, 서울시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발달장애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자폐성 장애인의 증가 추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등록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 7.5% 대비 1.5% 증가한 수치이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내 지적장애인의 비중은 2015년 83.8%에서 2022년 78.7%로 감소한 반면, 자폐성장애인의 비중은 2015년 16.2%에서 2022년 21.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자폐성장장애인의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의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서울시 발달장애 인구의 고령화가 관찰되고 있다. 연령대별 분포율 변동추이를 살펴본 결과, 10~19세(2015년 23.4% → 2022년 18.7%)와 20~29세(2015년 26.7% → 2022년 25.8%)는 2015년 대비 2022년에 감소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5.1%에서 2022년 28.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최근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항(제29조의3)이 신설되면서 관련 사업이 추진될 계획임에 따라 서울시 발달장애인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6월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전적 행동 등을 가진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생활,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 지원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사업대상 규모와 발달장애인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및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최중증·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 돌봄 및 활동 공백 해소를 위해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들 사업을 정부의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로 흡수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정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이용자와 지원인력 일대일 매칭 구조로 운영될 계획이기에 서울시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지원인력의 규모를 파악하여 인력수급 문제 등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2장서울시 발달장애인 정책 환경
및 주간·돌봄·활동 이용시설
현황

제3장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 운영실태

Seoul
Welfare
Foundation

www.welfare.seoul.kr



제3장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 운영실태

1 조사개요

1) 목적

본 조사는 서울시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의 현황을 점검하여 중앙정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에 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2) 대상

조사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32개소(미지원 시설 5개소 포함),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 23개소⁶⁾,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개소, 직업재활시설 132개소로 총 31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 내용 및 자료수집

조사항목은 기관의 일반적 현황, 종사자 현황, 이용자 현황,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대처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최중증 낮활동 지원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로 발달장애인 17개소, 뇌병변장애인 5개소, 시각중복 1개소로 총 23개소 운영 중에 있음

| 표 3-1 | 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A. 기관의 일반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시설유형, 운영요일 및 운영시간, 최대이용기간 제한 여부 및 이용가능기간, 이용자 연령제한 여부 및 이용가능 연령, 대기자 수 및 평균 대기기간, 입소 심사 시 주요 고려기준, 이용신청 장애인 타시설 의뢰·입소거절 사례 여부 및 이유, 최근 퇴소 인원 및 사유, 비자의적 서비스 종결 시 공식절차 마련 여부 및 고려 기준
B. 발달장애 이용자의 특성 및 이용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정원 및 현원, 생년월일, 성별, 주소지, 주장애 및 중복장애유형, 장애정도, 돌봄 특이사항(의사소통수준, 일상생활 수행능력, 도전적 행동 수준, 기타), 현재 시설 이용이력 정보(입소일자, 입소사유, 주간이용일수, 일일이용 시간), 이전 시설 이용이력 정보(이용 시설 수, 이용 시설유형, 퇴소 사유)
C. 종사자 규모 및 인력수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정원 및 현원, 시설장 인적사항(성별, 연령, 겸직 여부, 상근 여부, 현 기관 재직 경력, 자격사항 등), 종사자 인적사항(직책, 성별, 연령, 현 기관 재직경력, 자격사항 등)7), 최근 퇴사인원 및 사유
D. 최종증 발달장애인 관련 실천현장에서의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관련 어려움 및 대처방식) 이용자 지원 시 어려운 점, 도전적 행동 이용자 수 및 행동유형, 이용자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서비스 종결 사례 여부 및 서비스 종결 결정 시 주요 고려요인, 이용자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상해 발생빈도, 도전적 행동 대처 문서화 근거 규정·매뉴얼 및 신체적 개입 필요 시 사전 동의 절차 마련 여부, 이용자 도전적 행동 대처방식, 이용자 도전적 행동 대처능력, 이용자 도전적 행동 경험 종사자 대상 후속조치, 종사자 소진수준, 도전적 행동 관련 내·외부 교육 이수 여부 및 교육 시 필요내용, 도전적 행동 장애인을 위한 해결과제,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 정책과제, 기타 의견(자유 기입)

자료 수집은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⁸⁾ 및 이메일 조사⁹⁾를 통해 이뤄졌다. 2023년 7월 기준 서울시 이용시설 목록을 토대로 각 기관의 대표 이메일로 조사목적, 내용, 참여 방법 등의 안내문과 조사 참여 링크(URL)를 발송한 후 각 기관의 소속 종사자 1인이 대표하여 설문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협회의 협조를 통해 안내메일을 발송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기관 총 312개소 중 온라인조사의 경우 269개 기관(회수율 86.2%), 이메일 조사의 경우 256개 기관(회수율 82.1%)이 조사에 참여하였다.¹⁰⁾ 온라인 조사와 이메일 조사에 모두 참여한 기관은 253개소로 회수율은 81.1%로 나타났다.

7) '③ 종사자 인적사항' 항목의 경우, 이메일 조사(엑셀조사표 배포·회수)를 통해 별도로 자료를 수집함

8) 각 기관별 종사자 1명이 대표하여 응답

9) 기관별 응답 편의를 위해 이용자 및 종사자 현황은 온라인 설문조사와 별도로 분리하여 이메일을 통한 조사표(엑셀 형식) 배포·회수 형식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음 (온라인조사 참여기관 269개소, 이메일 조사 참여기관 256개소임)

10) 조사대상 기관은 온라인조사와 이메일조사(엑셀조사표를 활용한 종사자 및 이용자 인적사항 조사)를 모두 참여하여야 하나,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기관은 1가지 종류의 조사에만 참여한 기관이 있음

표 3-2 조사 회수율

(Base: 전체 기관, 단위: 개소, (%))

		조사대상 기관수	온라인 조사		이메일 조사	
			참여기관수	회수율	참여기관수	회수율
전체 기관		312	269	(86.2)	256	(82.1)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32	116	(87.9)	111	(84.1)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3	22	(95.7)	23	(100.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25	(100.0)	25	(100.0)
	직업재활시설	132	106	(80.3)	97	(73.5)

표 3-3 조사방법별 참여 현황

(Base: 전체 기관, 단위: 개소)

		조사대상 기관수	조사 참여 현황			
			2개 조사 모두 참여	온라인조사 참여/ 엑셀표 조사 미참여	온라인조사 미참여/ 엑셀표 조사 참여	2개 조사 모두 미참여
전체 기관		312	253	16	3	40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32	110	6	1	15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3	22	0	1	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25	0	0	0
	직업재활시설	132	96	10	1	25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통계분석패키지(SPSS ver.22)를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기관유형별 집단 간 비교분석(중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을 실시하였다.

2 분석결과

1) 기관 일반현황

(1) 기관 운영 일반현황

① 운영요일 및 운영일수

전체 기관이 주중에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일부 기관은 주말에도 운영¹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운영일수는 대부분의 기관이 주 4일 또는 주 5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주중 및 주말 기관 운영률

(Base: 전체 기관, 단위: %)

	(기관수)	주중 운영 여부		주말 운영 여부	
		운영	비운영	운영	비운영
전체 기관	(269)	100.0	0.0	3.7	96.3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100.0	0.0	100.0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100.0	0.0	100.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100.0	0.0	100.0
	직업재활시설	(106)	100.0	0.0	9.4

【표 3-5】 주당 기관 운영일수

(Base: 전체 기관, 단위: %)

	(기관수)	주 4일	주 5일	주 6일	주 7일	
		전체 기관	(269)	7.8	88.5	2.2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0.0	100.0	0.0	0.0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100.0	0.0	0.0	0.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0.0	100.0	0.0	0.0
	직업재활시설	(106)	0.0	90.6	5.7	3.8

11) 직업재활기관 중 주말 운영기관은 서비스(세탁, 소독 등) 또는 판매시설(스토어) 등의 업종이 해당됨

② 기관 운영(이용)시간

대부분의 기관이 전일제를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반일제 또는 시간제 운영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6 】 기관 운영시간 유형

(Base: 전체 기관, 단위: %, 기관별 복수응답 가능)

	(기관수)	전일제		반일제		시간제		
		운영	비운영	운영	비운영	운영	비운영	
전체 기관	(269)	97.0	3.0	5.9	94.1	6.3	93.7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100.0	0.0	2.6	97.4	0.0	100.0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100.0	0.0	4.5	95.5	0.0	100.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100.0	0.0	12.0	88.0	0.0	100.0
	직업재활시설	(106)	92.5	7.5	8.5	91.5	16.0	84.0

전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다수(55.6%)의 기관이 '09시~18시'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및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관이 '10시~16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3-7 】 전일제 운영기관 이용시간

(Base: 전일제 운영기관, 단위: %)

	(사례수)	09:00~	10:00~	09:00~	09:00~	그 외	
		18:00	16:00	16:00	17:00		
전체 기관	(261)	55.6	16.9	6.9	10.7	10.0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71.6	3.4	4.3	6.9	13.8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18.2	72.7	4.5	4.5	0.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20.0	80.0	0.0	0.0	0.0
	직업재활시설	(98)	54.1	4.1	12.2	19.4	10.2

반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전 '09시~12시', '09시~13시'가 각각 18.8%, 오후 '13시~17시' 12.5%, '14시~18시' 18.8%로 각각 나타났다.

표 3-8 반일제 운영기관 이용시간

(Base: 반일제 운영기관, 단위: %)

		(기관수)	09:00~ 12:00	09:00~ 13:00	13:00~ 17:00	14:00~ 18:00	그 외
전체 기관		(16)	18.8	18.8	12.5	18.8	31.3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	0.0	0.0	0.0	100.0	0.0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1)	0.0	0.0	0.0	0.0	100.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3)	0.0	0.0	33.3	0.0	66.7
	직업재활시설	(9)	33.3	33.3	11.1	0.0	22.2

(2) 이용기간 제한

조사에 참여한 기관 중 32.3%(87개소)의 기관이 이용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27.6%(32개소)가 이용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경우에는 모든 기관이 이용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는 7.5%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이용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9 이용기간 제한

(Base: 전체 기관, 단위: 개소, (%))

		(기관수)	이용기간 제한 있음		이용기간 제한 없음	
전체 기관		(269)	87	(32.3)	182	(67.7)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32	(27.6)	84	(72.4)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22	(100.0)	0	(0.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25	(100.0)	0	(0.0)
	직업재활시설	(106)	8	(7.5)	98	(92.5)

이용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시설 가운데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기관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경우 서울시 지침에 따라 모든 기관이 최대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용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기관의 경우, 최대 이용가능 기간은 평균 5.4년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평균 6.2년으로 가장 긴 반면, 직업재활시설은 평균 4.8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3-10 】 최대 이용가능 기간

(Base: 이용기간 제한이 있는 기관, 단위: 년)

		(기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F 값	p 값
전체 기관		(87)	3.0	10.0	5.4	1.775	-	-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2)	3.0	10.0	6.2	2.693	3.537	0.018*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5.0	5.0	5.0	0.00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5.0	5.0	5.0	0.000		
	직업재활시설	(8)	3.0	6.0	4.8	1.488		

※ 유의성 검정 : ** p<0.01, * p<0.05

(3) 이용연령 제한

전체 기관 중 56.5%(152개소)가 이용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55.2%(64개소) 직업재활시설은 38.7%(41개소)가 이용자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경우에는 모든 시설에서 이용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3-11 】 이용자 연령제한

(Base: 전체 기관, 단위: 개소, (%))

		(기관수)	이용연령 제한 있음		이용연령 제한 없음	
전체 기관		(269)	152	(56.5)	117	(43.5)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64	(55.2)	52	(44.8)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22	(100.0)	0	(0.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25	(100.0)	0	(0.0)
	직업재활시설	(106)	41	(38.7)	65	(61.3)

이용가능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는 기관 가운데 이용가능 연령하한을 ‘만 18세’로 제한하고 있는 기관이 가장 많았으며(50.7%), 다음으로 ‘만 19세’(30.9%)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가능 연령상한 제한이 없는 기관이 가장 많았으며(46.7%), 다음으로 ‘만 60세 이상’(24.3%)이 가장 많았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대부분의 시설들은 연령상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이용가능 연령상한을 ‘만 40~49세’(29.7%), 직업재활시설은 ‘만 60세 이상’(63.4%)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 표 3-12 】 이용가능 하한 연령

(Base: 이용자 연령제한이 있는 기관, 단위: %, 세)

		(기관수)	만 17세 이하	만 18세	만 19세	만 20세	평균 연령
전체 기관		(152)	1.3	50.7	30.9	17.1	18.6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64)	1.6	59.4	18.8	20.3	18.6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0.0	0.0	100.0	0.0	19.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0.0	100.0	0.0	0.0	18.0
	직업재활시설	(41)	2.4	34.1	31.7	31.7	18.9

【 표 3-13 】 이용가능 상한 연령

(Base: 이용자 연령제한이 있는 기관, 단위: %, 세)

		(기관수)	만 30세 ~39세	만 40세 ~49세	만 50세 ~59세	만 60세 이상	연령상한 없음	평균 연령
전체 기관		(152)	6.6	15.1	7.2	24.3	46.7	52.0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64)	9.4	29.7	9.4	15.6	35.9	48.5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0.0	4.5	0.0	0.0	95.5	45.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4.0	0.0	0.0	4.0	92.0	50.0
	직업재활시설	(41)	7.3	7.3	12.2	63.4	9.8	56.1

(4) 입소대기자 현황

① 입소 대기자 유무

입소 대기자 유무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관 중 39.8%(107개소)가 입소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72.4%(84개소)가 입소 대기자가 있으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28.0%(7개소), 직업재활시설은 15.1%(16개소)¹²⁾로 나타났다. 반면,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의 경우, 모든 기관에서 입소 대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12)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별도의 공식적인 대기는 받지 않고 이용자 결원 시 공개 모집 또는 공개채용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는 기관이 다수 차지하고 있음

13)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입소대기는 받지 않고, 이용자 결원 시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3-14 입소 대기자 유무

(Base: 전체 기관, 단위: 개소, (%))

		(기관수)	입소 대기자 있음		입소 대기자 없음	
전체 기관		(269)	107	(39.8)	162	(60.2)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84	(72.4)	32	(27.6)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0	(0.0)	22	(100.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7	(28.0)	18	(72.0)
	직업재활시설	(106)	16	(15.1)	90	(84.9)

입소 대기자가 있는 시설의 평균 입소대기자 수는 평균 19.7명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은 11.3명, 자폐성 장애인은 6.8명, 발달장애 외는 1.6명으로 나타나 대기자 가운데 발달장애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유형별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기관 당 평균 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기관당 평균 7.3명, 직업재활시설 기관당 평균 8.0명으로 각각 나타났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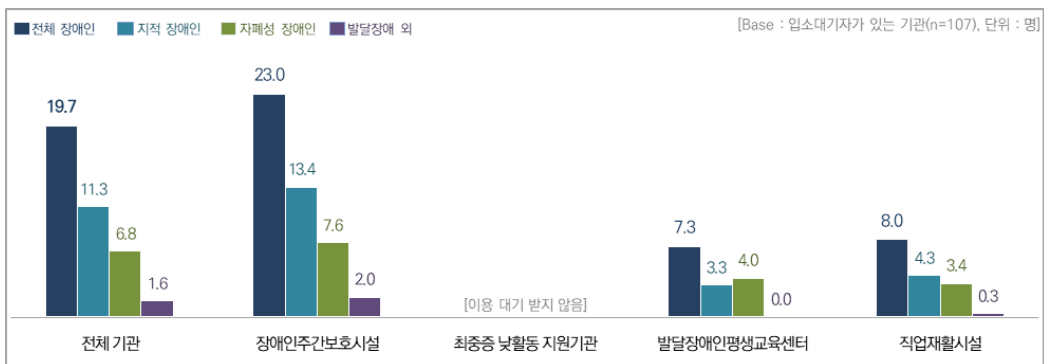


그림 3-1 기관당 입소 대기자 수(평균 인원)

② 입소 대기자 인원

입소 대기자가 있다고 응답한 기관(107개 기관)의 총 입소 대기자는 2,112명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인 1,213명, 자폐성 장애인 724명, 발달장애 외 장애인 175명으로 조사되었다. 입소대기자가 가장 많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입소 대기자는 총 1,933명이며, 이중 지적장애인은 1,122명, 자폐성 장애인은 641명, 발달장애 외 장애인은 170명으로 나타났다.

14) 이용자 정원은 전체 기관은 기관당 21.7명,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기관당 평균 12.5명,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평균 30.4명, 직업재활시설은 평균 33.3명임

■ 표 3-15 ■ 입소대기자 수

(Base: 입소대기자가 있는 기관, 단위: 명, (%))

		(기관수)	전체 입소 대기자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발달장애 외	
전체 기관		(107)	2,112	(100.0)	1,213	(57.4)	724	(34.3)	175	(8.3)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84)	1,933	(100.0)	1,122	(58)	641	(33.2)	170	(8.8)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0)	-	-	-	-	-	-	-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7)	51	(100.0)	23	(45.1)	28	(54.9)	0	(0)
	직업재활시설	(16)	128	(100.0)	68	(53.1)	55	(43)	5	(3.9)

이용자 총 정원(5,826명) 대비 입소대기자(2,112명)의 비율을 살펴보면 36.3%로 나타났다. 전체 기관유형 중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이용자 정원 대비 입소대기자 비율이 1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표 3-16 ■ 이용자 정원 대비 입소대기자 수

(Base: 전체 기관, 단위: 명, (%))

		(기관수)	입소대기 이용자(장애인) 수 (㉑)	이용자(장애인) 정원 (㉒)	이용자 정원 대비 입소대기자 비율 (㉑÷㉒)
전체 기관		(269)	2,112	5,826	(36.3)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1,933	1,449	(133.4)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	92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51	759	(6.7) ¹⁵⁾
	직업재활시설	(106)	128	3,526	(3.6)

② 입소 전 평균 대기기간

입소 대기자가 있는 기관의 경우, 이용자가 시설에 입소하기까지 '1년 이상 ~ 3년 미만' 대기해야 하는 기관이 가장 많았으며(47.7%), 다음으로 '3년 이상 ~ 5년 미만'(20.6%), '1년 미만'(18.7%)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시설에 입소하기까지 평균 25.9개월(약 2년 2개월)이 걸리는 개월 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입소대기기간이 29개월(2년 5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19.1개월(약 1년 7개월), 직업재활시설은 12.8개월(약 1년 1개월) 대기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직업재활시설이 낮은 이유는 별도의 공식적인 대기는 받지 않는 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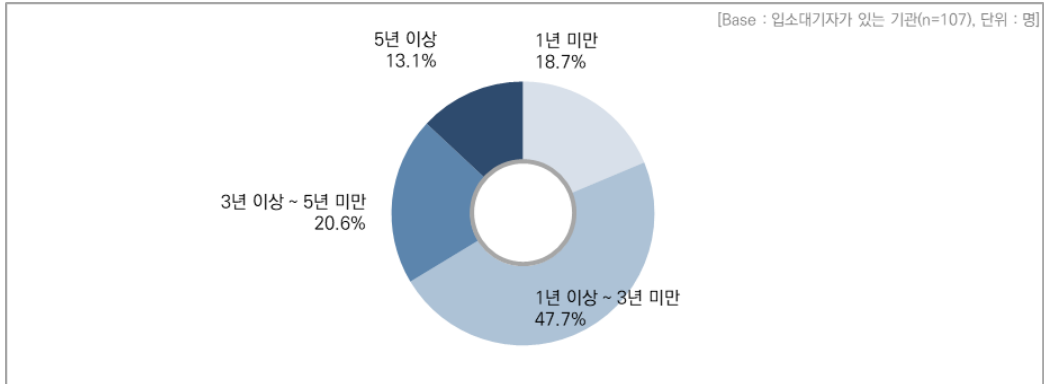


그림 3-2 | 입소 전 평균 대기기간(빈도수)

표 3-17 | 입소 전 평균 대기기간

(Base: 입소대기자가 있는 기관, 단위: %, 년)

		(기관수)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평균 대기기간
전체 기관		(107)	18.7	47.7	20.6	13.1	25.9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84)	15.5	45.2	22.6	16.7	29.0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0)	-	-	-	-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7)	14.3	57.1	28.6	0.0	19.1
	직업재활시설	(16)	37.5	56.3	6.3	0.0	12.8

(5) 입소 심사

① 입소심사 시 고려기준

1~3순위 합계 기준으로 입소심사 시 고려기준을 조사한 결과, '도전적 행동 여부'(56.9%)가 가장 고려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신변처리 가능여부'(41.6%), '장애유형'(41.3%), '근로 능력 수준'(30.5%), '장애정도'(28.6%), '연령'(2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전적 행동이 주간 이용시설 이용에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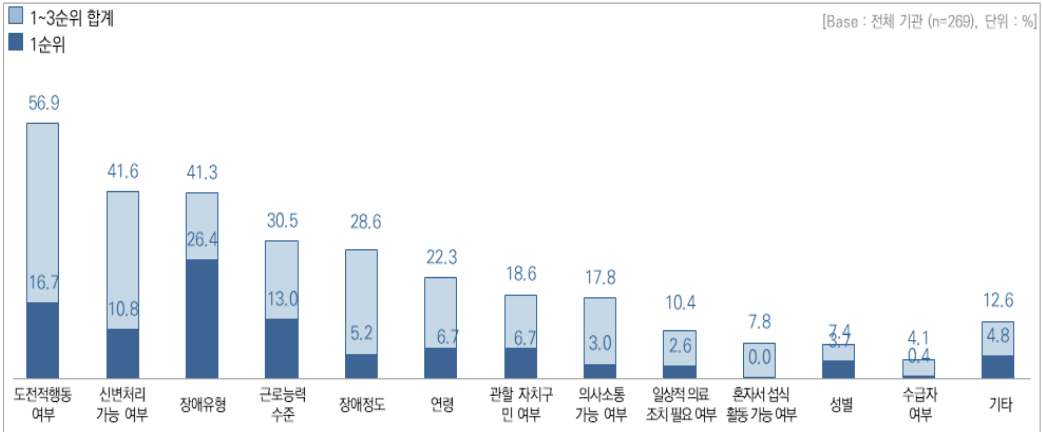


그림 3-3 | 입소심사 시 고려기준 (전체 기관)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도전적 행동 여부’, ‘신변처리 가능여부’, ‘장애유형’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반면,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은 ‘도전적 행동 여부’, ‘장애정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시설 관할 자치구민 여부’, ‘장애유형’, 직업재활시설은 ‘근로능력 수준’, ‘신변처리 가능여부’를 주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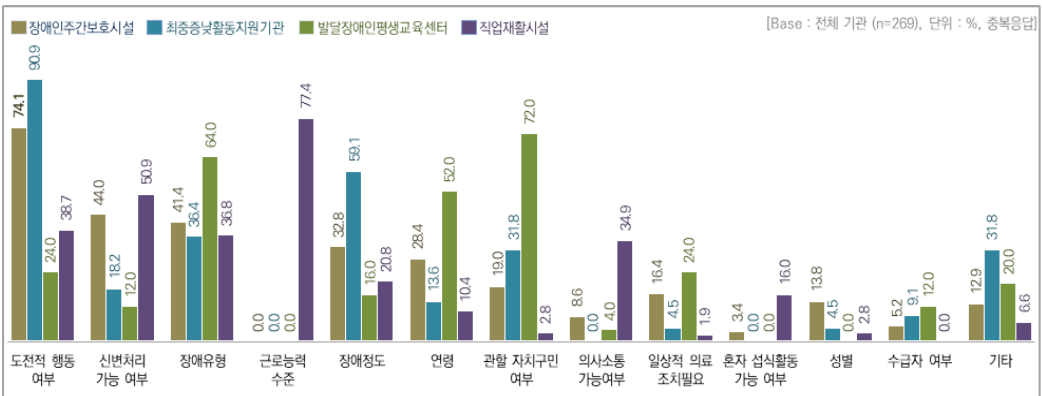


그림 3-4 | 기관유형별 입소심사 시 고려기준(1~3순위 합계)

표 3-18 입소심사 시 고려기준(1~3순위 합계)

(Base: 전체 기관, 단위: %, 중복응답)

	전체 기관	기관유형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 시설
(기관수)	(269)	(116)	(22)	(25)	(106)
도전적 행동 여부	56.9	74.1	90.9	24.0	38.7
신변처리(대소변 등) 가능 여부	41.6	44.0	18.2	12.0	50.9
장애유형	41.3	41.4	36.4	64.0	36.8
근로 능력 수준	30.5	0.0	0.0	0.0	77.4
장애정도	28.6	32.8	59.1	16.0	20.8
연령	22.3	28.4	13.6	52.0	10.4
시설 관할 자치구민 여부	18.6	19.0	31.8	72.0	2.8
의사소통 가능 여부	17.8	8.6	0.0	4.0	34.9
일상적 의료조치(석션 등) 필요 여부	10.4	16.4	4.5	24.0	1.9
혼자서 섭식활동 가능 여부	7.8	3.4	0.0	0.0	16.0
성별	7.4	13.8	4.5	0.0	2.8
수급자 여부	4.1	5.2	9.1	12.0	0.0
기타	12.6	12.9	31.8	20.0	6.6

② 타 시설 의뢰 또는 입소거절 사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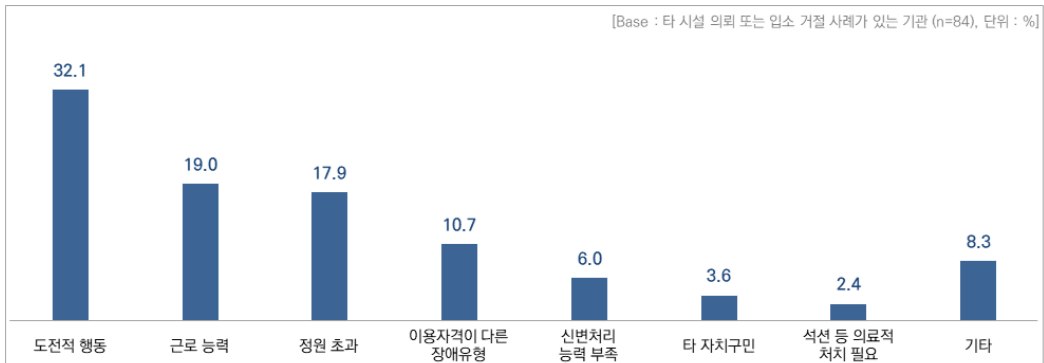
기관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을 타 시설로 의뢰하거나 입소 거절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기관 중 31.2%(84개소)의 기관이 타 시설 의뢰나 입소거절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33.6%(39개소), 최중증 장애인 낮 활동 지원기관은 22.7%(5개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16.0%(4개소), 직업재활시설은 34.0%(36개소)로 나타났다.

표 3-19 타 시설 의뢰 또는 입소거절 사례 여부

(Base: 전체 기관, 단위: 개소, (%))

		(기관수)	타 시설 의뢰 또는 입소 거절사례 있음		타 시설 의뢰 또는 입소 거절사례 없음	
전체 기관		(269)	84	(31.2)	185	(68.8)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39	(33.6)	77	(66.4)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5	(22.7)	17	(77.3)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4	(16.0)	21	(84.0)
	직업재활시설	(106)	36	(34.0)	70	(66.0)

타 시설 의뢰 또는 입소거절의 주요 이유로는 '도전적 행동'(32.1%)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근로능력'(19.0%), '정원초과'(17.9%), '이용자격이 다른 장애유형'(10.7%) 순¹⁶⁾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경우,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타 시설 의뢰 및 입소거절 사례가 다른 유형의 기관 대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림 3-5】 타 시설 의뢰 또는 입소거절 주요 이유

【표 3-20】 타 시설 의뢰 또는 입소 거절 주요 이유

(Base: 타 시설 의뢰 또는 입소거절 사례가 있는 기관, 단위: %)

	전체 기관	기관유형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 시설
(기관수)	(84)	(39)	(5)	(4)	(36)
도전적 행동	32.1	48.7	0.0	25.0	19.4
근로 능력	19.0	0.0	0.0	0.0	44.4
정원 초과	17.9	17.9	80.0	0.0	11.1
이용자격이 다른 장애유형	10.7	12.8	20.0	25.0	5.6
신변처리 능력 부족	6.0	0.0	0.0	25.0	11.1
타 자치구민	3.6	2.6	0.0	25.0	2.8
석션 등 의료적 처치 필요	2.4	2.6	0.0	0.0	2.8
기타	8.3	15.4	0.0	0.0	2.8

16) '근로능력'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전체 조사대상 기관 중 직업재활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직업재활 시설에서 입소거절 사례가 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6) 퇴소 및 비자의적 서비스 종결 현황

① 최근 3년간 퇴소 발달장애인

최근 3년간 퇴소 발달장애인 인원을 조사한 결과, 전체 기관 중 83.3%(224개소)의 기관에서 퇴소 발달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78.4%(91개소),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은 72.7%(16개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100.0%(25개소), 직업재활시설은 86.8%(92개소)로 나타났다.

표 3-21 | 최근 3년간 퇴소 발달장애인 유무

(Base: 전체 기관, 단위: 개소, (%))

		(기관수)	퇴소 발달장애인 있음		퇴소 발달장애인 없음	
전체 기관		(269)	224	(83.3)	45	(16.7)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91	(78.4)	25	(21.6)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16	(72.7)	6	(27.3)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25	(100.0)	0	(0.0)
	직업재활시설	(106)	92	(86.8)	14	(13.2)

최근 3년간 퇴소 발달장애인은 총 1,119명으로 전체 기관의 정원(5,826명) 중 1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정원 대비 퇴소율은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이 51.1%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39.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9.5%, 직업재활시설 13.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경우 이용기간이 5년으로 정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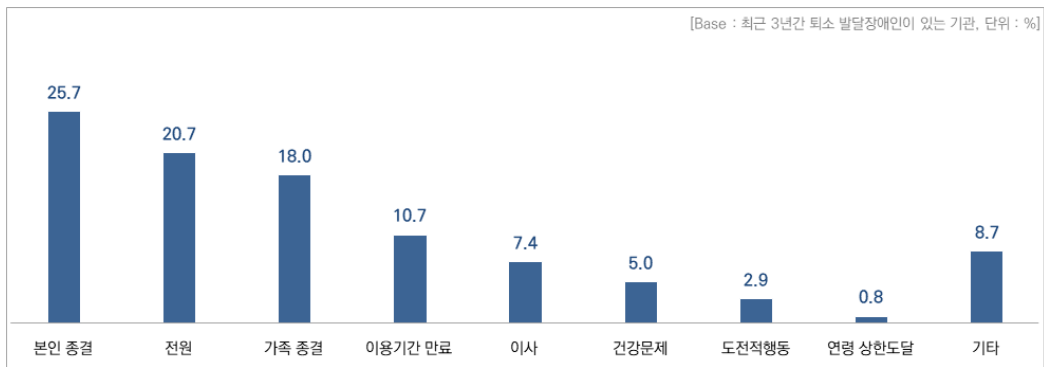
표 3-22 | 최근 3년간 실제 퇴소 발달장애인 수

(Base: 전체 기관, 단위: 명, (%))

		(기관수)	퇴소 발달장애인 수 (a)	이용자(장애인) 정원 (b)	이용자 정원 대비 퇴소율 (a÷b)
전체 기관		(269)	1,119	5,826	(19.2)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282	1,449	(19.5)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47	92	(51.1)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300	759	(39.5)
	직업재활시설	(106)	490	3,526	(13.9)

② 퇴소 사유

퇴소 사유로는 ‘본인 종결’(25.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원’(20.7%), ‘가족 종결’(18.0%), ‘이용기간 만료’(10.7%)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경우에는 ‘전원’, ‘가족종결’, ‘이용기간 만료’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는 ‘본인 종결’, ‘전원’, ‘가족 종결’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림 3-6】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 퇴소 사유

【표 3-23】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 퇴소 사유

(Base: 퇴소 발달장애인이 있는 기관, 단위: 명, (%))

	전체 기관		기관유형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 시설				
본인 종결	288	(25.7)	37	(13.1)	6	(12.8)	42	(14.0)	203	(41.4)
전원	232	(20.7)	73	(25.9)	20	(42.6)	73	(24.3)	66	(13.5)
가족 종결	201	(18.0)	65	(23.0)	7	(14.9)	72	(24.0)	57	(11.6)
이용기간 만료	120	(10.7)	34	(12.1)	7	(14.9)	64	(21.3)	15	(3.1)
이사	83	(7.4)	24	(8.5)	1	(2.1)	22	(7.3)	36	(7.3)
건강문제	56	(5.0)	18	(6.4)	0	(0.0)	14	(4.7)	24	(4.9)
도전적 행동	33	(2.9)	12	(4.3)	0	(0.0)	2	(0.7)	19	(3.9)
연령 상한도달	9	(0.8)	5	(1.8)	0	(0.0)	0	(0.0)	4	(0.8)
기타	97	(8.7)	14	(5.0)	6	(12.8)	11	(3.7)	66	(13.5)
합계	1,119	(100.0)	282	(100.0)	47	(100.0)	300	(100.0)	490	(100.0)

③ 비자의적 서비스 종결(퇴소) 결정 공식절차 마련 여부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90.3%, 243개소)의 기관들이 이용자의 비자의적 서비스 종결(퇴소) 결정을 위한 공식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의 경우에 모든 기관에서 공식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64.0%)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3-24 비자의적 서비스 종결(퇴소) 결정 공식절차 마련 여부

(Base: 전체 기관, 단위: 개소, (%))

		(기관수)	공식절차 있음		공식절차 없음	
전체 기관		(269)	243	(90.3)	26	(9.7)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105	(90.5)	11	(9.5)
	최종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22	(100.0)	0	(0.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16	(64.0)	9	(36.0)
	직업재활시설	(106)	100	(94.3)	6	(5.7)

비자의적 서비스 종결(퇴소) 결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을 조사한 결과, ‘보호자 이용 종결의사’(32.3%)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다른 이용자의 안전문제’(26.0%), ‘이용기간 만료 여부’(17.8%), ‘이용자의 건강문제’(9.7%)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이용자의 안전문제’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도전적 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의 경우 비자의적 서비스 종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경우, ‘이용기간 만료 여부’의 비율이 각각 54.5%, 56.0%로 다른 기관유형 대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기관의 경우 이용기관이 기본 5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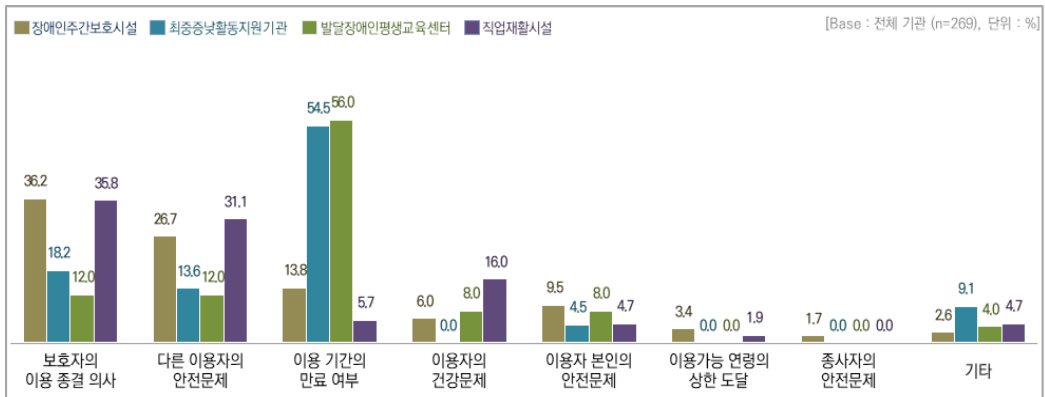


그림 3-7 기관유형별 비자의적 서비스 종결(퇴소) 결정 시 우선 고려기준

【 표 3-25 】 비자의적 서비스 종결(퇴소) 결정 시 우선 고려기준

(Base: 전체 기관, 단위: %)

	전체 기관	기관유형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 시설
(기관수)	(269)	(116)	(22)	(25)	(106)
보호자의 이용 종결 의사	32.3	36.2	18.2	12.0	35.8
다른 이용자의 안전문제	26.0	26.7	13.6	12.0	31.1
이용 기간의 만료 여부	17.8	13.8	54.5	56.0	5.7
이용자의 건강문제	9.7	6.0	0.0	8.0	16.0
이용자 본인의 안전문제	7.1	9.5	4.5	8.0	4.7
이용가능 연령의 상한 도달	2.2	3.4	0.0	0.0	1.9
종사자의 안전문제	0.7	1.7	0.0	0.0	0.0
기타	4.1	2.6	9.1	4.0	4.7

2) 이용자 현황 및 특성

(1) 이용자 정원 및 현원

기관 당 이용자 정원은 평균 21.7명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이용자 정원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5명,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은 4.2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30.417)명, 직업재활시설은 33.3명으로 나타났다.

【 표 3-26 】 이용자 정원 (빈도수)

(Base: 전체 기관, 단위: %, 명)

		(기관수)	10명 이하	11~20명	21~30명	31명 이상	평균 인원
전체 기관		(269)	24.2	33.8	26.8	15.2	21.7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34.5	64.7	0.9	0.0	12.5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100.0	0.0	0.0	0.0	4.2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0.0	0.0	92.0	8.0	30.4
	직업재활시설	(106)	2.8	15.1	45.3	36.8	33.3

17)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경우, 지침 상 이용자 정원은 30명이나, 일부 기관의 경우 지자체와 별도 협약을 통해 이용자와 종사자 정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있음

전체 기관(269개 기관)의 이용자 총 정원은 5,826명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449명(기관 당 12.5명),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은 92명(기관 당 4.2명),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759명(기관 당 30.4명), 직업재활시설은 3,526명(기관 당 33.3명)으로 직업재활시설의 정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3-27 】 기관유형별 실제 이용자 정원

(Base: 전체 기관, 단위: 명)

		(기관수)	이용자 정원	기관 당 정원 평균
전체 기관		(269)	5,826	21.7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1,449	12.5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92	4.2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759	30.4
	직업재활시설	(106)	3,526	33.3

종사자 정원 대비 이용자 정원(종사자 1인당 이용자 수)을 분석한 결과, 종사자 1인당 이용자 3.7명¹⁸⁾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종사자 정원 대비 이용자 정원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0명,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2.0명,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명, 직업재활시설 4.7명으로 나타났다.

【 표 3-28 】 종사자 정원 대비 이용자 정원

(Base: 전체 기관, 단위: 명)

		(기관수)	기관당 종사자 정원 (a)	기관당 이용자 정원 (b)	종사자 1인당 이용자 수 (a÷b)
전체 기관		(269)	5.85	21.7	3.7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4.14	12.5	3.0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2.14	4.2	2.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12.08	30.4	2.5
	직업재활시설	(106)	7.02	33.3	4.7

18) 종사자 정원에는 기관장, 행정/사무요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돌봄을 담당하는 종사자 1인당 이용자 수는 평균 3.7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경우, 종사자 정원에 센터장 및 팀장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돌봄 인력(사회복지사, 특수교사)은 10명 내외이며, 지침 상 종사자 1인당 이용자 수는 3명임

② 이용자 현원

전체 기관(269개 기관)의 총 이용자 현원은 5,310명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자 현원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1,348명,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은 80명,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659명, 직업재활시설은 3,223명으로 직업재활시설의 현원이 가장 많았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이 3,707명(69.8%)으로 가장 많고, 자폐성 장애인 1,023명(19.3%), 발달장애 외 장애인은 580명(10.9%)로 조사되었다.

표 3-29 기관유형별 이용자 현원

(Base: 전체 기관, 단위: 명, (%))

(기관수)		이용자 전체	이용자		
			지적	자폐성	발달장애 외
전체 기관 (269)		5,310 (100.0)	3,707 (69.8)	1,023 (19.3)	580 (10.9)
기 관 유 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1,348 (100.0)	858 (63.6)	325 (24.1)	165 (12.2)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80 (100.0)	19 (23.8)	38 (47.5)	23 (28.8)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659 (100.0)	415 (63.0)	230 (34.9)	14 (2.1)
	직업재활시설 (106)	3,223 (100.0)	2,415 (74.9)	430 (13.3)	378 (11.7)

③ 이용자 정원 대비 현원 충원율

이용자 정원과 현원이 동일한 기관은 36.4%(98개소),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기관은 52.8%(142개소)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이용자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기관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4.0%(51개소),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36.4%(8개소), 발달장애인평생 교육센터 76.0%(19개소), 직업재활시설 60.4%(64개소)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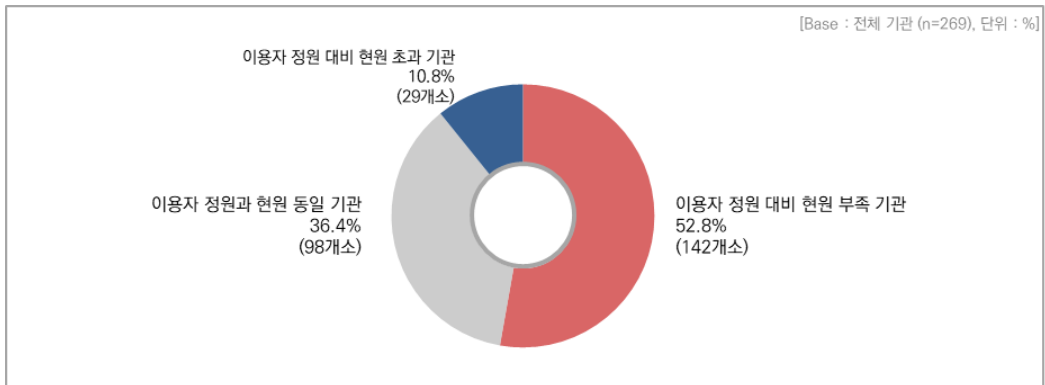


그림 3-8 이용자 정원 대비 현원 부족 기관수

【 표 3-30 】 이용자 정원 대비 현원 부족 기관수

(Base: 전체 기관 단위: 개소, (%))

	전체 기관		기관유형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 시설				
정원 대비 현원 부족	142	(52.8)	51	(44.0)	8	(36.4)	19	(76.0)	64	(60.4)
정원과 현원 동일	98	(36.4)	50	(43.1)	14	(63.6)	6	(24.0)	28	(26.4)
정원 대비 현원 초과	29	(10.8)	15	(12.9)	0	(0.0)	0	(0.0)	14	(13.2)
합계	269	(100.0)	116	(100.0)	22	(100.0)	25	(100.0)	106	(100.0)

전체 기관의 이용자 정원(5,826명) 대비 현원(5,310명)이 부족한 총 인원은 516명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충원율은 91.1%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93.0%(101명 부족),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87.0%(12명 부족),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86.8%(100명 부족), 직업재활시설 91.4%(303명 부족)로 나타났다.

【 표 3-31 】 이용자 정원 대비 현원 부족 인원

(Base: 전체 기관, 단위: 명, %)

		(기관수)	이용자 총 정원 (㉑)	이용자 총 현원 (㉒)	차이 (㉒-㉑)	이용자 충원율 (㉑÷㉒)
전체 기관		(269)	5,826	5,310	-516	91.1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1,449	1,348	-101	93.0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92	80	-12	87.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759	659	-100	86.8
	직업재활시설	(106)	3,526	3,223	-303	91.4

한편, 종사자 1인 당 이용자 수는 평균 3.5명¹⁹⁾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9명,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1.7명,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2명, 직업재활시설 4.7명으로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당 이용자 지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9) 종사자 현원에는 기관장, 행정/사무요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돌봄을 담당하는 종사자 1인당 이용자 수는 평균 3.5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32 | 종사자 현원 대비 이용자 현원

(Base: 전체 기관, 단위: 명)

		(기관수)	기관당 종사자 현원 (a)	기관당 이용자 현원 (b)	종사자 1인당 이용자 수 (a÷b)
전체 기관		(269)	5.57	19.7	3.5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4.00	11.6	2.9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2.14	3.6	1.7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12.04	26.4	2.2
	직업재활시설	(106)	6.48	30.4	4.7

(2)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장애특성²⁰⁾

① 성별

전체 기관의 이용자 성별을 조사한 결과, 남성 65.8%(3,285명), 여성 34.2%(1,709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의 경우 남성 이용자 비율이 76.2%로 다른 유형의 기관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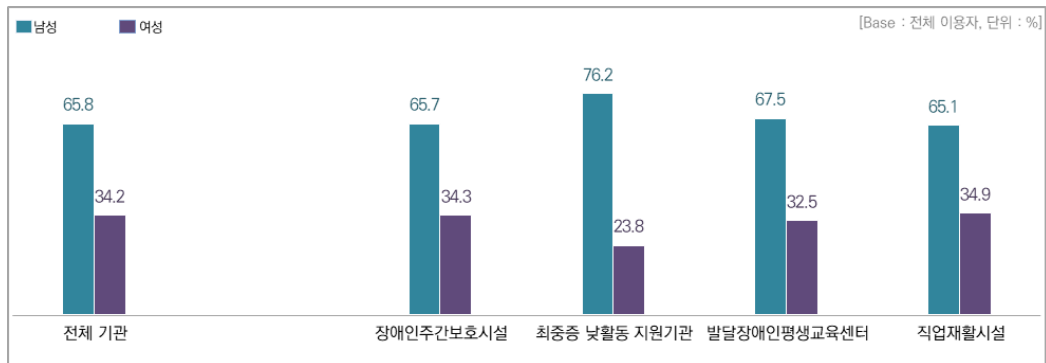


그림 3-9 | 이용자 성별

20) 이메일 조사(엑셀조사표를 활용한 종사자 및 이용자 인적사항 조사) 결과이며, 온라인조사에 참여한 기관 중 일부 기관이 이메일 조사 미참여로 인해 이용자 현원(5,310명)과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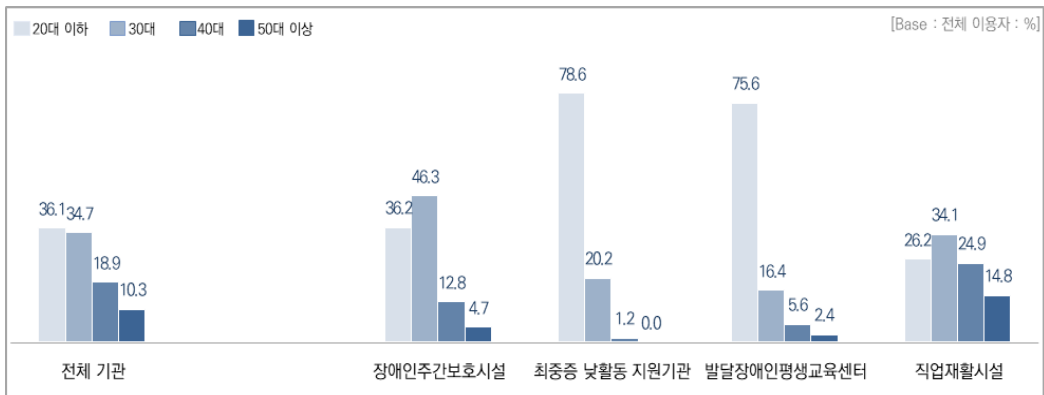
| 표 3-33 | 이용자 성별

(Base: 전체 이용자 단위: 명, (%))

		(사례수)	남성		여성	
전체 기관		(4,994)	3,285	(65.8)	1,709	(34.2)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88)	846	(65.7)	442	(34.3)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84)	64	(76.2)	20	(23.8)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659)	445	(67.5)	214	(32.5)
	직업재활시설	(2,963)	1,930	(65.1)	1,033	(34.9)

② 연령(대)

20대 이하 및 30대 연령대의 이용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체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34.9세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평균 연령이 각각 37.5세, 33.4세로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26.9세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7.4세 대비 이용자의 평균 연령이 비교적 높았다.



| 그림 3-10 | 이용자 연령

| 표 3-34 | 이용자 연령 (빈도수)

(Base: 전체 이용자, 단위: %, 세)

		(사례수)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평균 연령
전체 기관		(4,994)	36.1	34.7	18.9	10.3	34.9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88)	36.2	46.3	12.8	4.7	33.4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84)	78.6	20.2	1.2	0.0	26.9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659)	75.6	16.4	5.6	2.4	27.4
	직업재활시설	(2,963)	26.2	34.1	24.9	14.8	37.5

③ 장애유형

전체 기관의 이용자 4,994명 중 발달장애인이 4,461명(89.3%), 발달장애 외 장애인은 533명(10.7%)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세부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 3,479명(69.7%), 자폐성장애인 982명(19.7%)으로 지적장애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표 3-35 】 주장애 유형

(Base: 전체 이용자, 단위: 명, (%))

	전체	발달장애		발달장애 외		
		지적	자폐성	지적	자폐성	
전체 기관	4,994 (100.0)	4,461 (89.3)	3,479 (69.7)	982 (19.7)	533 (10.7)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88 (100.0)	1,145 (88.9)	827 (64.2)	318 (24.7)	143 (11.1)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84 (100.0)	57 (67.9)	19 (22.6)	38 (45.2)	27 (32.1)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659 (100.0)	645 (97.9)	414 (62.8)	231 (35.1)	14 (2.1)
	직업재활시설	2,963 (100.0)	2,614 (88.2)	2,219 (74.9)	395 (13.3)	349 (11.8)

※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의 '발달장애 외'는 뇌병변, 시각 등

※ 평생교육센터의 '발달장애 외'는 뇌병변 중복장애(지적장애가 부장애인 경우)에 해당

【 표 3-36 】 주장애 유형_세부

(Base: 전체 이용자, 단위: 명, (%))

	전체 기관	기관유형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 시설	
발달 장애	지적	3,479 (69.7)	827 (64.2)	19 (22.6)	414 (62.8)	2,219 (74.9)
	자폐성	982 (19.7)	318 (24.7)	38 (45.2)	231 (35.1)	395 (13.3)
발달 장애 외	뇌병변	174 (3.5)	93 (7.2)	24 (28.6)	14 (2.1)	43 (1.5)
	지체	112 (2.2)	13 (1.0)	0 (0.0)	0 (0.0)	99 (3.3)
	청각/언어	50 (1.0)	0 (0.0)	0 (0.0)	0 (0.0)	50 (1.7)
	시각	42 (0.8)	32 (2.5)	3 (3.6)	0 (0.0)	7 (0.2)
	정신	146 (2.9)	4 (0.3)	0 (0.0)	0 (0.0)	142 (4.8)
	기타	9 (0.2)	1 (0.1)	0 (0.0)	0 (0.0)	8 (0.3)
계	4,994 (100.0)	1,288 (100.0)	84 (100.0)	659 (100.0)	2,963 (100.0)	

전체 이용자 중 222명(4.5%)은 중복장애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발달장애 외는 560명(11.2%)으로 나타났다. 반면, 4,302명(86.1%)은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3-37 】 중복장애 유형

(Base: 전체 이용자, 단위: 명, (%), 중복응답)

		전체	발달장애	발달장애 외	중복장애 없음
전체 기관		4,994 (100.0)	222 (4.5)	560 (11.2)	4,302 (86.1)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88 (100.0)	127 (9.9)	247 (19.2)	988 (76.7)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84 (100.0)	20 (23.8)	12 (14.3)	54 (64.3)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659 (100.0)	39 (6.0)	149 (22.7)	483 (73.3)
	직업재활시설	2,963 (100.0)	36 (1.2)	152 (4.9)	2,777 (93.7)

【 표 3-38 】 중복장애 유형(세부)

(Base: 전체 이용자, 단위: 명, (%), 중복응답)

		전체 기관	기관유형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 시설
발달 장애	지적	174 (3.5)	94 (7.3)	17 (20.2)	36 (5.5)	27 (0.9)
	자폐성	48 (1.0)	33 (2.6)	3 (3.6)	3 (0.5)	9 (0.3)
발달 장애 외	뇌병변	155 (3.1)	52 (4.0)	3 (3.6)	73 (11.1)	27 (0.9)
	지체	75 (1.5)	36 (2.8)	1 (1.2)	13 (2.0)	25 (0.8)
	청각/언어	144 (2.9)	86 (6.7)	0 (0.0)	21 (3.2)	37 (1.2)
	시각	66 (1.3)	22 (1.7)	1 (1.2)	12 (1.8)	31 (1.0)
	정신	43 (0.9)	15 (1.2)	1 (1.2)	5 (0.8)	22 (0.7)
	기타	77 (1.5)	36 (2.8)	6 (7.1)	25 (3.8)	10 (0.3)
중복장애 없음		4,302 (86.1)	988 (76.7)	54 (64.3)	483 (73.3)	2,777 (93.7)

전체 이용자의 주장애나 부장애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 규모를 살펴보면, 91.4%(4,564명)가 해당되며, 발달장애 외는 8.6%(430명)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이용자의 90% 이상이 주장애 또는 부장애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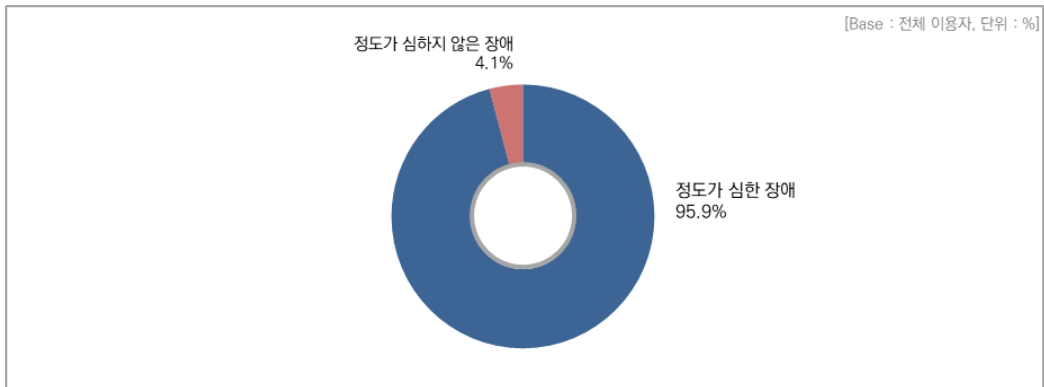
【 표 3-39 】 주장애 및 중복장애 유형

(Base: 전체 이용자, 단위: 명, (%))

		전체	발달장애	발달장애 외
전체 기관		4,994 (100.0)	4,564 (91.4)	430 (8.6)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88 (100.0)	1,203 (93.4)	85 (6.6)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84 (100.0)	73 (86.9)	11 (13.1)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659 (100.0)	659 (100.0)	0 (0.0)
	직업재활시설	2,963 (100.0)	2,629 (88.7)	334 (11.3)

④ 장애 정도

전체 이용자의 장애정도를 살펴보면, ‘장애정도가 심한’ 이용자가 대다수(4,789명, 9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및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장애정도가 심한’ 이용자 비율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 대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3-11 ■ 장애정도

■ 표 3-40 ■ 장애정도

(Base: 전체 이용자, 단위: 명, (%))

		(사례수)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전체 기관		(4,994)	4,789	(95.9)	205	(4.1)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88)	1,219	(94.6)	69	(5.4)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84)	84	(100.0)	0	(0.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659)	651	(98.8)	8	(1.2)
	직업재활시설	(2,963)	2,835	(95.7)	128	(4.3)

⑤ 의사소통능력

전체 이용자 중 ‘구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용자는 3,792명(75.9%)이며, ‘구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1,202명(24.1%)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업재활시설의 ‘구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용자 비율이 비교적 높은 반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의 이용자 비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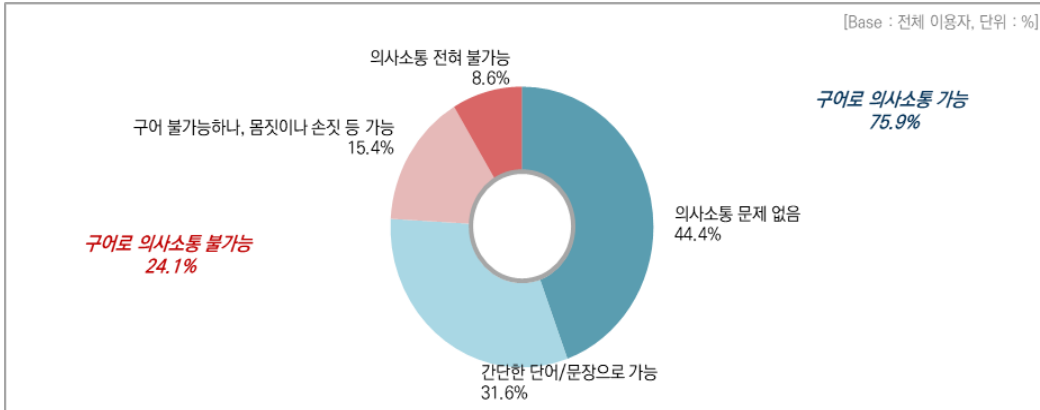


그림 3-12 | 의사소통능력

표 3-41 | 의사소통능력

(Base: 전체 이용자, 단위: 명, (%))

	(사례수)	구어 의사소통 가능			구어 의사소통 불가능		
		의사소통 문제없음	간단한 단어/문장으로 가능	구어 불가능하나, 몸짓이나 손짓 등으로 가능	의사소통 전혀 불가능		
전체 기관	(4,994)	3,792 (75.9)	2,216 (44.4)	1,576 (31.6)	1,202 (24.1)	771 (15.4)	431 (8.6)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88)	671 (52.1)	200 (15.5)	471 (36.6)	617 (47.9)	352 (27.3)	265 (20.6)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84)	44 (52.4)	10 (11.9)	34 (40.5)	40 (47.6)	24 (28.6)	16 (19.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659)	378 (57.4)	161 (24.4)	217 (32.9)	281 (42.6)	190 (28.8)	91 (13.8)
	직업재활시설 (2,963)	2,699 (91.1)	1,845 (62.3)	854 (28.8)	264 (8.9)	205 (6.9)	59 (2.0)

⑥ 일상생활수행능력

전체 이용자 중 ‘일상생활(신변처리)이 혼자서 가능한’ 이용자는 3,089명(61.9%)이며,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는 1,905명(38.1%)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업재활시설의 ‘일상생활(신변처리)이 혼자서 가능한’ 이용자 비율이 가장 높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의 이용자 비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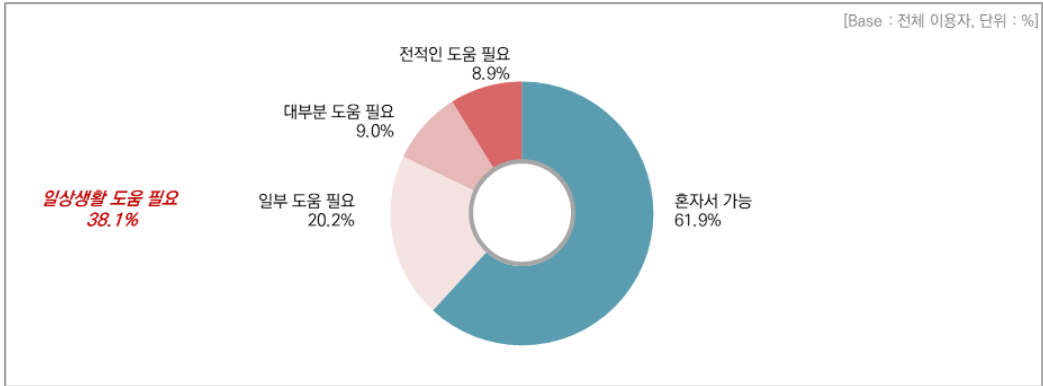


그림 3-13 | 일상생활수행능력

표 3-42 | 일상생활수행능력

(Base: 전체 이용자, 단위: 명, (%))

	(사례수)	혼자서 가능	도움 필요	도움 필요			
				일부 도움 필요	대부분 도움 필요	전적인 도움 필요	
전체 기관	(4,994)	3,089 (61.9)	1,905 (38.1)	1,010 (20.2)	451 (9.0)	444 (8.9)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88)	306 (23.8)	982 (76.2)	438 (34.0)	273 (21.2)	271 (21.0)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84)	17 (20.2)	67 (79.8)	28 (33.3)	14 (16.7)	25 (29.8)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659)	253 (38.4)	406 (61.6)	213 (32.3)	74 (11.2)	119 (18.1)
	직업재활시설	(2,963)	2,513 (84.8)	450 (15.2)	331 (11.2)	90 (3.0)	29 (1.0)

⑦ 도전적 행동

전체 이용자 중 ‘도전적 행동이 없는’ 이용자는 3,669명(73.5%), ‘도전적 행동이 있는’ 이용자는 1,324명(26.5%)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의 ‘도전적 행동이 있는’ 이용자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81.0%), 직업재활시설의 이용자 비율(10.2%)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도전적 행동이 있는’ 이용자 비율은 49.4%,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도전적 행동이 있는’ 이용자 비율은 48.3%로 거의 절반이 도전적 행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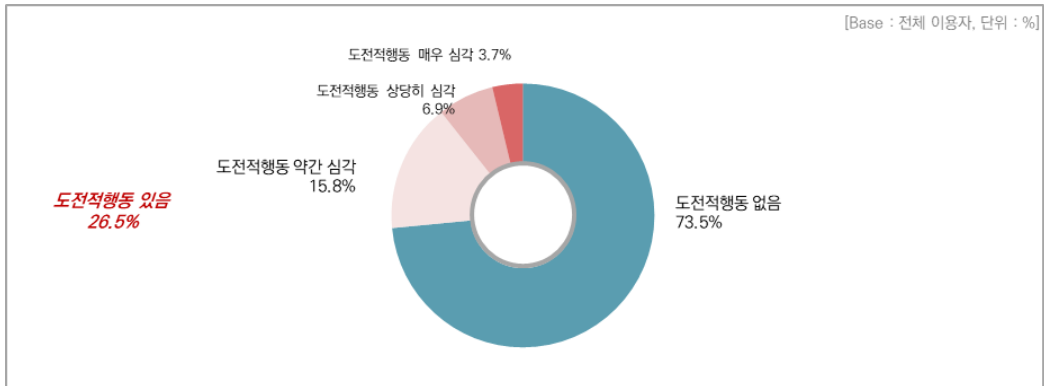


그림 3-14 도전적 행동 수준

표 3-43 도전적 행동 수준

(Base: 전체 이용자, 단위: 명, (%))

	(사례수)	도전적 행동 없음	도전적 행동 있음	도전적 행동 수준			
				약간 심각	상당히 심각	매우 심각	
전체 기관	(4,994)	3,669 (73.5)	1,324 (26.5)	791 (15.8)	347 (6.9)	187 (3.7)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88)	652 (50.6)	636 (49.4)	356 (27.6)	174 (13.5)	106 (8.2)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84)	16 (19.0)	68 (81.0)	13 (15.5)	30 (35.7)	25 (29.8)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659)	340 (51.6)	318 (48.3)	188 (28.5)	79 (12.0)	52 (7.9)
	직업재활시설	(2,963)	2,661 (89.8)	302 (10.2)	234 (7.9)	64 (2.2)	4 (0.1)

⑧ 최중증 발달장애인 이용자 규모

전체 이용자 중 '구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혼자서 가능하며, 도전적 행동이 없는' 이용자는 2,449명(49.0%)인 반면, '구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며, 도전적 행동'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 이용자 규모는 479명(9.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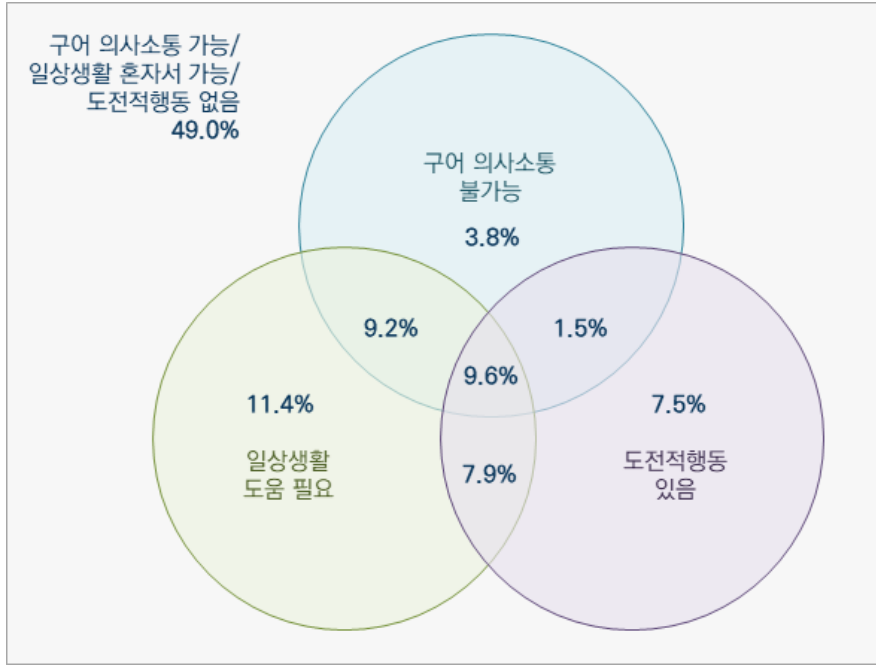


그림 3-15 전체 이용시설의 최종증 발달장애 이용자 규모

기관유형별로 최종증 발달장애 이용자의 규모를 살펴보면,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31.0%)이 가장 높으며, 뒤이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3.1%,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8.7%, 직업재활시설 1.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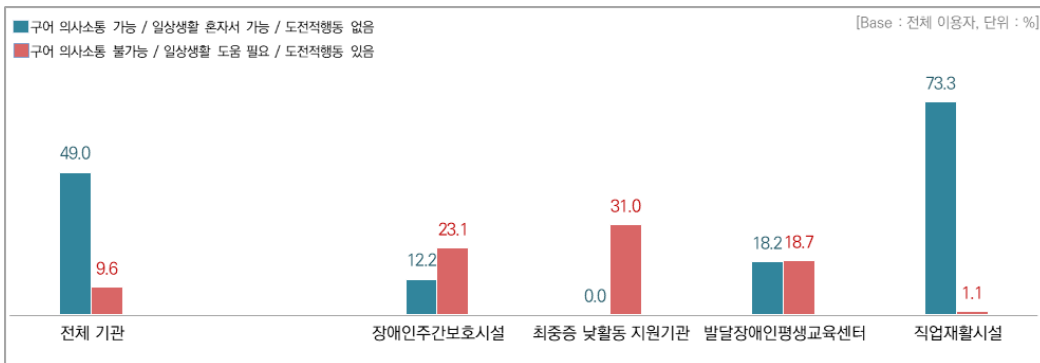


그림 3-16 기관유형별 최종증 발달장애 이용자 비중

표 3-44 기관유형별 최종증 발달장애 이용자 비중

(Base: 전체 이용자, 단위: 명, (%))

의사 소통	일상 생활 수행 능력	도전적 행동 여부	전체 기관	기관유형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최종증 낮활동 지원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 시설
구어 가능	혼자서 가능	없음	2,449 (49.0)	157 (12.2)	0 (0.0)	120 (18.2)	2,172 (73.3)
구어 가능	혼자서 가능	있음	375 (7.5)	88 (6.8)	15 (17.9)	84 (12.7)	188 (6.3)
구어 가능	도움 필요	없음	571 (11.4)	200 (15.5)	4 (4.8)	89 (13.5)	278 (9.4)
구어 가능	도움 필요	있음	397 (7.9)	226 (17.5)	25 (29.8)	85 (12.9)	61 (2.1)
구어 불가	혼자서 가능	없음	191 (3.8)	36 (2.8)	0 (0.0)	22 (3.3)	133 (4.5)
구어 불가	혼자서 가능	있음	74 (1.5)	25 (1.9)	2 (2.4)	27 (4.1)	20 (0.7)
구어 불가	도움 필요	없음	458 (9.2)	259 (20.1)	12 (14.3)	109 (16.5)	78 (2.6)
구어 불가	도움 필요	있음	479 (9.6)	297 (23.1)	26 (31.0)	123 (18.7)	33 (1.1)
전체			4,994 (100.0)	1,288 (100.0)	84 (100.0)	659 (100.0)	2,963 (100.0)

⑨ 약물 복용²¹⁾ 또는 투약 관리 필요 여부

전체 이용자 중 ‘약물을 복용하거나 투약관리가 필요한’ 이용자는 21.7%(1,086명)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최종증 낮활동 지원기관(56.0%) 및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45.8%)의 ‘약물을 복용하거나 투약관리가 필요한’ 이용자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3-45 약물 복용 또는 투약 관리 필요 여부

(Base: 전체 이용자, 단위: 명, (%))

		(사례수)	약물 복용/투약관리 필요		약물 복용/투약관리 불필요	
전체 기관		(4,994)	1,086	(21.7)	3,908	(78.3)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88)	347	(26.9)	941	(73.1)
	최종증 낮활동 지원기관	(84)	47	(56.0)	37	(44.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659)	302	(45.8)	357	(54.2)
	직업재활시설	(2,963)	390	(13.2)	2,573	(86.8)

21) 항정신성 약물 복용 이외에도 경기약/뇌전증약 복용, 고혈압/당뇨약/갑상선약 등의 복용을 포함

⑩ 휠체어 사용 여부

전체 이용자 중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4.4%(220명)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이용자(32.1%)의 휠체어 사용자 비율이 다른 유형의 기관 이용자 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표 3-46 】 휠체어 사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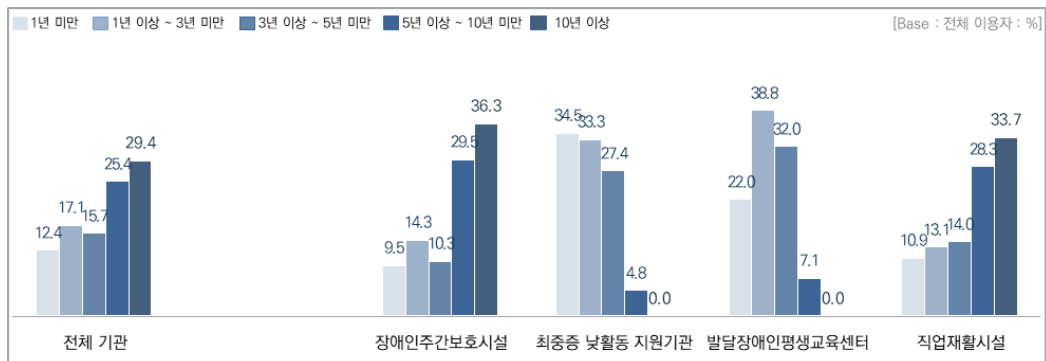
(Base: 전체 이용자, 단위: 명, (%))

		(사례수)	휠체어 사용		휠체어 비사용	
전체 기관		(4,994)	220	(4.4)	4,774	(95.6)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88)	113	(8.8)	1,175	(91.2)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84)	27	(32.1)	57	(67.9)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659)	58	(8.8)	601	(91.2)
	직업재활시설	(2,963)	22	(0.7)	2,941	(99.3)

(3) 이용자의 이력

① 현재 이용시설 이력

이용자의 현재 시설 이용 이력을 조사한 결과, '5년 이상 ~ 10년 미만'(25.4%) 또는 '10년 이상'(29.4%)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비율이 높으며, 평균 이용기간은 7.3년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업재활시설(평균 8.3년)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평균 8.0년)의 이용기간이 비교적 긴 반면,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평균 2.2년) 및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평균 2.4년)의 이용기간이 비교적 짧게 나타났다.



【 그림 3-17 】 현재 이용시설 이용기간

표 3-47 현재 이용시설 이용기간 (빈도수)

(Base: 전체 이용자, 단위: %, 년)

		(사례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 이용기간
전체 기관		(4,977)	12.4	17.1	15.7	25.4	29.4	7.3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88)	9.5	14.3	10.3	29.5	36.3	8.0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84)	34.5	33.3	27.4	4.8	0.0	2.2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659)	22.0	38.8	32.0	7.1	0.0	2.4
	직업재활시설	(2,946)	10.9	13.1	14.0	28.3	33.7	8.3

※ 이용자별 입소일 미기입자(1개 기관, 17명) 제외

② 입소 사유

현재 이용시설의 주요 입소 이유로 ‘고용 및 직업훈련’(51.8%)이라는 이용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의 돌봄 경감’(31.1%), ‘사회교육 및 훈련’(15.6%) 순²²⁾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은 ‘가족의 돌봄 경감’이 가장 높았으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사회교육 및 훈련’과 ‘가족의 돌봄 경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고용 및 직업 훈련’이 86.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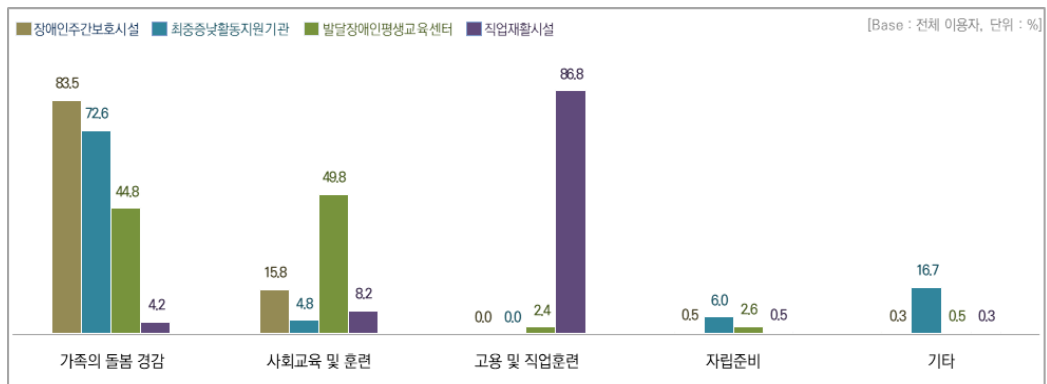


그림 3-18 주된 입소 사유

22) 현재 이용시설 입소사유로 ‘고용 및 직업훈련’이 높은 이유는 전체 조사대상 기관 중 직업재활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표 3-48 】 주된 입소 사유

(Base: 전체 이용자, 단위: %)

		(사례수)	가족의 돌봄 경감	사회교육 및 훈련	고용 및 직업훈련	자립준비	기타
전체 기관		(4,994)	31.1	15.6	51.8	0.9	0.6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88)	83.5	15.8	0.0	0.5	0.3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84)	72.6	4.8	0.0	6.0	16.7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659)	44.8	49.8	2.4	2.6	0.5
	직업재활시설	(2,963)	4.2	8.2	86.8	0.5	0.3

※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의 '기타'는 '도전적 행동 중재 또는 경감'

③ 일주 평균 이용일수 및 일 이용시간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현재 이용시설을 '주 5회' 또는 '주 4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 4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 4회'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이용시간은 대부분(91.0%)의 이용자가 현재 이용시설을 1일 평균 '5~8시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 1일 평균 '4시간 이하' 이용한다는 이용자의 비율이 다른 유형의 기관 대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표 3-49 】 1주 평균 이용일수

(Base: 전체 이용자, 단위: %)

		(사례수)	주 1회	주 2회	주 3회	주 4회	주 5회
전체 기관		(4,994)	1.2	0.5	1.2	2.3	94.8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88)	0.7	0.6	2.1	1.9	94.6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84)	0.0	1.2	1.2	88.1	9.5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659)	0.2	0.5	1.1	1.7	96.7
	직업재활시설	(2,963)	1.7	0.4	0.9	0.2	96.8

【 표 3-50 】 1일 평균 이용시간

(Base: 전체 이용자, 단위: %)

		(사례수)	4시간 이하	5~8시간	9시간 이상
전체 기관		(4,994)	7.8	91.0	1.1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88)	1.8	97.4	0.9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84)	4.8	95.2	0.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659)	1.5	98.5	0.0
	직업재활시설	(2,963)	11.9	86.5	1.6

④ 직전 시설 이용이력

현재 이용시설 입소 전 ‘1개소~2개소’(49.0%)를 이용한 이용자 비율이 높으며, 평균 0.7개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이전 이용시설이 없는’ 이용자도 47.5%로 비교적 많았으며²³⁾,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또는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중 ‘이전 이용시설이 없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표 3-51 ▣ 현재 시설 입소 전에 타 시설 이용 개소 수

(Base: 전체 이용자, 단위: %, 개소)

		(사례수)	없음	1~2개소	3~4개소	5개소 이상	평균 (개소)
전체 기관		(4,093)	47.5	49.0	3.3	0.3	0.7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58)	47.0	49.8	3.1	0.1	0.7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84)	27.4	65.5	6.0	1.2	1.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608)	32.6	59.5	6.7	1.2	1.0
	직업재활시설	(2,243)	52.5	45.1	2.3	0.1	0.6

※ 미기재 인원 제외

직전 이용시설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현재 이용시설 이전에 ‘직업재활시설’(30.0%)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다음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복지관’(23.6%) 순²⁴⁾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이용자의 이전 시설 이력을 살펴보면, 직업재활시설의 이용자는 직전에도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한 경우 51.0%로 가장 많았다. 이와 비슷하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는 직전에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62.2%)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반면,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이용자의 경우 ‘장애인주간보호시설’(34.4%)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19.7%),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용자의 경우, ‘복지관’(28.5%), ‘장애인주간보호시설’(21.7%)을 직전에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3)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의 ‘이전 이용시설 없음’의 응답률이 높은 이유로는 장기간 이용자가 많아 이전 이용시설의 유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도 일정정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임

24) 직전 이용시설 유형으로 ‘직업재활시설’의 응답률이 높은 이유로는 전체 조사대상 기관 중 직업재활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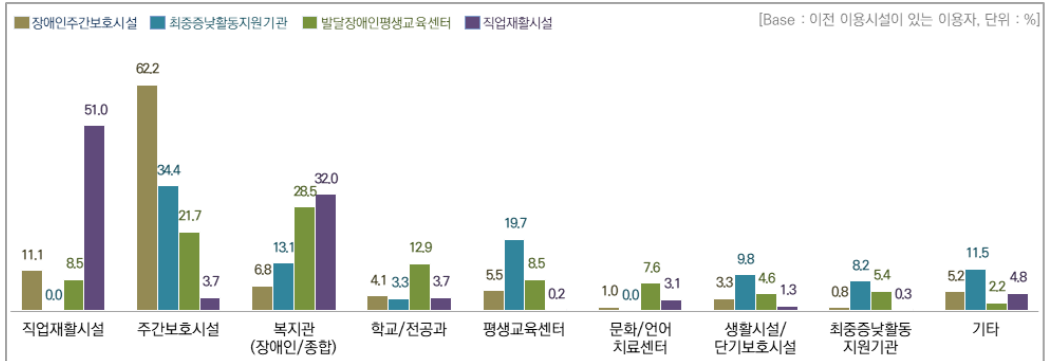


그림 3-19 직전 이용시설 유형(기관유형별)

표 3-52 직전 이용시설 유형

(Base: 이전 이용시설이 있는 이용자, %)

	전체 기관	기관유형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 시설
(기관수)	(2,150)	(614)	(61)	(410)	(1065)
직업재활시설	30.0	11.1	0.0	8.5	51.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4.7	62.2	34.4	21.7	3.7
복지관(장애인/종합)	23.6	6.8	13.1	28.5	32.0
(특수)학교/전공과	5.5	4.1	3.3	12.9	3.7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3.9	5.5	19.7	8.5	0.2
문화/언어 치료센터	3.3	1.0	0.0	7.6	3.1
생활시설/단기보호시설	2.7	3.3	9.8	4.6	1.3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1.6	0.8	8.2	5.4	0.3
기타/잘모름	4.6	5.2	11.5	2.2	4.8

⑤ 직전 시설 퇴소 사유

직전 시설에서 퇴소한 사유를 조사한 결과, ‘기관 내규에 따른 이용기간 만료’(33.7%)로 인해 퇴소한 이용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 의사에 따른 종결’(25.2%), ‘본인 의사에 따른 종결’(22.0%)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또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가족의사에 따른 종결’ 또는 ‘기관 내규에 따른 이용기간 만료’가 주된 사유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전원’이 주된 사유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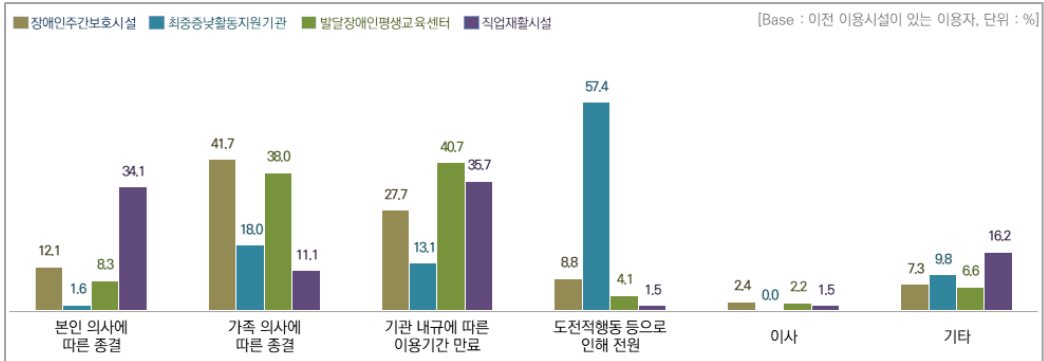


그림 3-20 직전 이용시설 퇴소 사유(기관유형별)

표 3-53 직전 이용시설 퇴소 사유

(Base: 이전 이용시설이 있는 이용자, 단위: %)

		(사례수)	본인의사 따른 종결	가족의사 따른 종결	기관내규 따른 이용기간 만료	도전적 행동으로 전원	이사	기타
전체 기관		(2,150)	22.0	25.2	33.7	5.7	1.9	11.6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614)	12.1	41.7	27.7	8.8	2.4	7.3
	최종증 낮활동 지원기관	(61)	1.6	18.0	13.1	57.4	0.0	9.8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410)	8.3	38.0	40.7	4.1	2.2	6.6
	직업재활시설	(1,065)	34.1	11.1	35.7	1.5	1.5	16.2

※ '기타'는 시설 폐쇄(폐업)/이전, 취업, 잘 모름 등임

3) 종사자 현황

(1) 종사자 정원 및 현원

① 종사자 정원

전체 기관(269개 기관)의 종사자 정원은 1,573명이며, 이 중 정규직은 1,560명, 계약직은 13명으로 조사되었다. 기관 유형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종사자 정원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480명,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은 47명,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302명, 직업재활시설은 744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관의 종사자 평균 정원은 5.8명으로 조사되었다. 기관유형별로 종사자 정원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4.1명,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은 2.1명²⁵⁾,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12.1명²⁶⁾, 직업재활시설은 7.0명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종사자 정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54 】 기관유형별 종사자 정원²⁷⁾

(Base: 전체 기관, 단위: 명, (%))

		(기관수)	종사자 전체		정규직		계약직	
					명	(%)	명	(%)
전체 기관		(269)	1,573	(100.0)	1,560	(99.2)	13	(0.8)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480	(100.0)	475	(99.0)	5	(1.0)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47	(100.0)	46	(97.9)	1	(2.1)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302	(100.0)	301	(99.7)	1	(0.3)
	직업재활시설	(106)	744	(100.0)	738	(99.2)	6	(0.8)

【 표 3-55 】 기관당 종사자 평균 정원

(Base: 전체 기관, 단위: 명)

		(기관수)	전체	
			명	평균
전체 기관		(269)	5.8	5.80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4.1	4.09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2.1	2.09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12.1	12.04
	직업재활시설	(106)	7.0	6.96

② 종사자 현원²⁸⁾

전체 기관(269개 기관)의 종사자 현원은 1,499명이며, 이 중 정규직은 1,468명, 계약직은 31명으로 조사되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464명,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은 47명,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301명, 직업재활시설은 687명으로 시설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직업재활시설의 현원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전체 기관의 종사자의 기관 당 평균 현원은 5.6명²⁹⁾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장애

25)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의 경우, 서울시 지침 상 종사자 정원은 2명이나, 총괄기관의 경우 3명까지 경상보조금을 지원, 강서뇌성마비복지관은 종사자 4명(이용자 8명)으로 운영 중에 있음

26)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경우, 서울시 지침 상 종사자 정원은 12명이나, 일부 기관의 경우 지자체와 별도 협약을 통해 이용자와 종사자 정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있으며, 구립(1개소)의 경우 종사자 정원은 10명임

27) 종사자 정원 및 현원은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기준이며, 기관 자체 예산 인력은 포함되지 않음

28) 종사자 정원 및 현원은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기준이며, 기관 자체 예산 인력은 포함되지 않음

29) 전체 기관 기준, 기관당 종사자 평균 정원은 5.8명이며, 정원 대비 현원 충원율은 약 95.3%임

인주간보호시설은 4.0명,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은 2.1명,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12.0명, 직업재활시설은 6.5 명으로 조사되었다.

【 표 3-56 】 기관유형별 실제 종사자 현황

(Base: 전체 기관, 단위: 명, (%))

		(기관수)	종사자 전체		정규직		계약직	
					명	(%)	명	(%)
전체 기관		(269)	1,499	(100.0)	1,468	(97.9)	31	(2.1)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464	(100.0)	451	(97.2)	13	(2.8)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47	(100.0)	45	(95.7)	2	(4.3)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301	(100.0)	296	(98.3)	5	(1.7)
	직업재활시설	(106)	687	(100.0)	676	(98.4)	11	(1.6)

【 표 3-57 】 기관당 종사자 평균 현황

(Base: 전체 기관, 단위: 명)

		(기관수)	전체		정규직	계약직
			명	(%)	명	(%)
전체 기관		(269)	5.6		5.46	0.12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4.0		3.89	0.11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2.1		2.05	0.09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12.0		11.84	0.20
	직업재활시설	(106)	6.5		6.38	0.10

③ 종사자 정원 대비 현황

종사자 정원과 현원이 동일한 기관은 81.4%(219개소), 종사자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기관은 18.6%(50개소)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종사자 정원과 현원이 동일한 기관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87.1%(101개소),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100.0%(22개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96.0%(24개소), 직업재활시설 67.9%(72개소)로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종사자 정원이 충족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 표 3-58 】 종사자 정원 대비 현원 부족 기관수

(Base: 전체 기관 단위: 개소, (%))

	전체 기관		기관유형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 시설	
정원과 현원 동일	219	(81.4)	101	(87.1)	22	(100.0)	24	(96.0)	72	(67.9)
정원대비 현원 1명 부족	34	(12.6)	14	(12.1)	0	(0.0)	1	(4.0)	19	(17.9)
정원대비 현원 2명 부족	9	(3.3)	1	(0.9)	0	(0.0)	0	(0.0)	8	(7.5)
정원대비 현원 3명 부족	6	(2.2)	0	(0.0)	0	(0.0)	0	(0.0)	6	(5.7)
정원대비 현원 4명 부족	1	(0.4)	0	(0.0)	0	(0.0)	0	(0.0)	1	(0.9)
합계	269	(100.0)	116	(100.0)	22	(100.0)	25	(100.0)	106	(100.0)

전체 기관의 종사자 정원 대비 현원 부족 인원은 총 74명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경우 정원-현원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직업재활시설은 정원 대비 현원이 57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관의 종사자 대비 현원 충원율 95.3%로 나타났으며,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충원율이 92.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표 3-59 】 종사자 정원 대비 현원 부족 인원

(Base: 전체 기관, 단위: 명, %)

		(기관수)	종사자 총 정원 (a)	종사자 총 현원 (b)	차이 (b-a)	종사자 충원율 (a÷b)
전체 기관		(269)	1,573	1,499	-74	95.3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480	464	-16	96.7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47	47	0	100.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302	301	-1	99.7
	직업재활시설	(106)	744	687	-57	92.3

【 표 3-60 】 기관당 종사자 평균 정원 및 현원

(Base: 전체 기관, 단위: 명, %)

		(기관수)	종사자 평균 정원 (a)	종사자 평균 현원 (b)	종사자 충원율 (b÷a)
전체 기관		(269)	5.8	5.6	95.3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4.1	4.0	96.7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2.1	2.1	100.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12.1	12.0	99.7
	직업재활시설	(106)	7.0	6.5	92.3

(2) 종사자 세부사항³⁰⁾

① 성별

전체 종사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47.8%(584명), 여성이 52.2%(637명)로 여성이 근소하게 많았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업재활시설은 남성 비율이 비교적 높은 반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여성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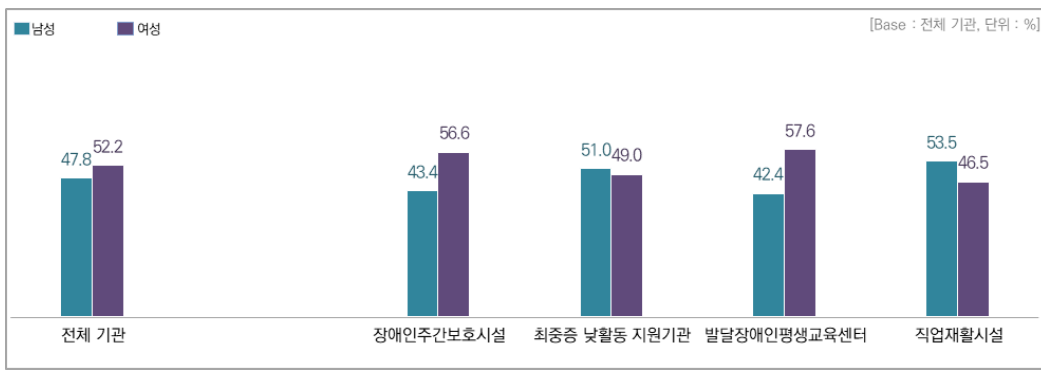


그림 3-21 종사자 성별

표 3-61 종사자 성별

(Base: 전체 종사자, 단위: 명, (%))

		(사례수)	남성		여성	
전체 기관		(1,221)	584	(47.8)	637	(52.2)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69)	160	(43.4)	209	(56.6)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49)	25	(51.0)	24	(49.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76)	117	(42.4)	159	(57.6)
	직업재활시설	(527)	282	(53.5)	245	(46.5)

② 연령(대)

전체 기관의 종사자 연령대는 20대 및 30대 연령대의 종사자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평균 연령은 36.5세로 나타났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30) 이메일 조사(엑셀조사표를 활용한 종사자 및 이용자 인적사항 조사) 결과이며, 온라인조사에 참여한 기관 중 일부 기관이 이메일 조사 미참여로 인해 종사자 현원(1,499명)과는 차이가 있음. 시설장은 미포함임

의 20대 및 30대 종사자 비율이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다.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직업재활시설이 38.9세로 가장 높고,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32.6세) 및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32.9세)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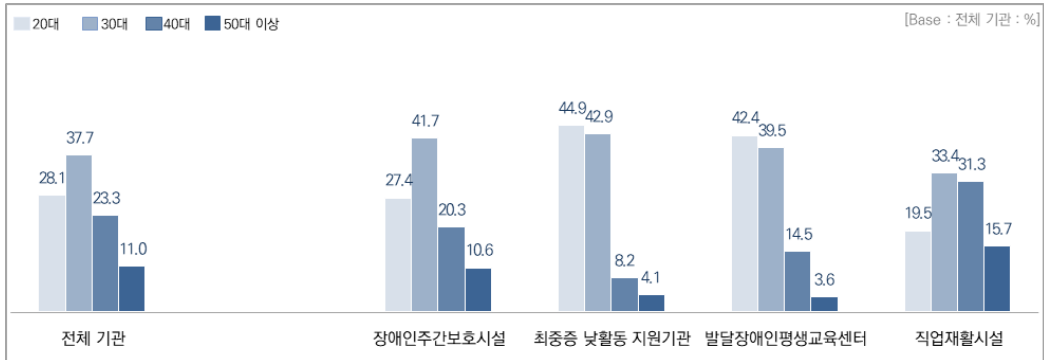


그림 3-22 종사자 연령대

표 3-62 종사자 연령대 분포율

(Base: 전체 종사자, 단위: %, 세)

		(사례수)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평균 연령
전체 기관		(1,221)	28.1	37.7	23.3	11.0	36.5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69)	27.4	41.7	20.3	10.6	36.2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49)	44.9	42.9	8.2	4.1	32.6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76)	42.4	39.5	14.5	3.6	32.9
	직업재활시설	(527)	19.5	33.4	31.3	15.7	38.9

③ 현 기관 재직경력

전반적으로 현재 기관 재직경력이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 3년 미만'인 종사자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평균 재직연수는 3.9년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 3년 미만' 재직 종사자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기관유형별 종사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직업재활시설이 5.1년으로 가장 길고, 반면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2.7년) 및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2.0년)의 종사자 평균 재직기간이 가장 짧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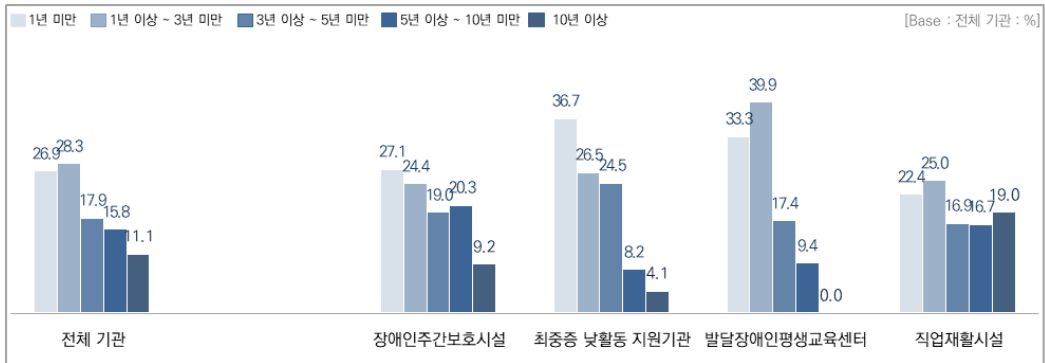


그림 3-23 종사자 현 기관 재직경력

표 3-63 종사자 현 기관 재직경력

(Base: 전체 종사자, 단위: %, 년)

기관 유형	(사례수)	재직경력					평균 재직경력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기관	(1,221)	26.9	28.3	17.9	15.8	11.1	3.9
기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69)	27.1	24.4	19.0	20.3	9.2	3.9
유형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49)	36.7	26.5	24.5	8.2	4.1	2.7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76)	33.3	39.9	17.4	9.4	0.0	2.0
	직업재활시설 (527)	22.4	25.0	16.9	16.7	19.0	5.1

④ 자격사항

전체 기관의 종사자 자격사항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83.9%)의 종사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특수교사/교사', 직업재활시설은 직업재활사 자격 보유자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3-64 종사자 자격사항

(Base: 전체 종사자, 단위: %, 중복응답)

	전체 기관 (사례수)	기관유형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69)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4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76)	직업재활 시설 (527)
사회복지사	83.9	98.1	98.0	76.1	76.7
직업재활사	10.0	1.6	4.1	6.2	18.4
특수교사/교사	6.7	2.7	2.0	24.6	0.6
장애인재활상담사	5.3	1.1	4.1	2.5	9.9

	전체 기관	기관유형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 시설
평생교육사	3.4	1.1	0.0	13.4	0.2
전산/회계/정보처리	1.6	1.1	0.0	1.4	2.3
건강가정사	1.1	1.9	2.0	1.1	0.6
요양보호사	1.1	2.7	0.0	0.4	0.4
작업/물리/언어치료사	0.7	0.0	0.0	2.2	0.4
간호사/간호조무사	0.6	0.8	2.0	0.0	0.6
기타	3.8	2.4	2.0	4.3	4.7
없음	7.1	0.8	0.0	1.8	15.0

⑤ 최근 3년간 퇴사 종사자 수 및 퇴사율

최근 3년간 퇴사 종사자 수를 조사한 결과, 퇴사한 종사자 수는 969명이며, 이는 종사자 정원(1,573명) 대비 61.6%를 차지하여 퇴사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퇴사자 비율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9.0%,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은 100.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98.0%, 직업재활시설 52.6%임³¹⁾으로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퇴사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3-65 | 최근 3년간 실제 퇴사 종사자 수

(Base: 전체 기관, 단위: 명, (%))

		(기관수)	퇴사 종사자 수 (a)	종사자 정원 (b)	종사자 정원 대비 퇴사율 (a÷b)
전체 기관		(269)	969	1,573	(61.6)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235	480	(49.0)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47	47	(100.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296	302	(98.0)
	직업재활시설	(106)	391	744	(52.6)

종사자의 퇴사 사유를 조사한 결과, 1~3 순위 합계 기준으로 '개인 사유'(82.9%)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직'(75.9%), '경력 계발'(34.6%), '업무 과중'(30.3%), '임금 조건'

31)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및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현재 기관 재직경력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 3년 미만'인 종사자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보았을 때, 주로 저연차 종사자의 인력 변동(퇴사)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남을 알 수 있음

(22.8%) 순으로 나타났다. 단, 1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퇴사 이유로는 ‘개인 사유’(39.5%), ‘이직’(33.3%), ‘업무 과중’(10.5%)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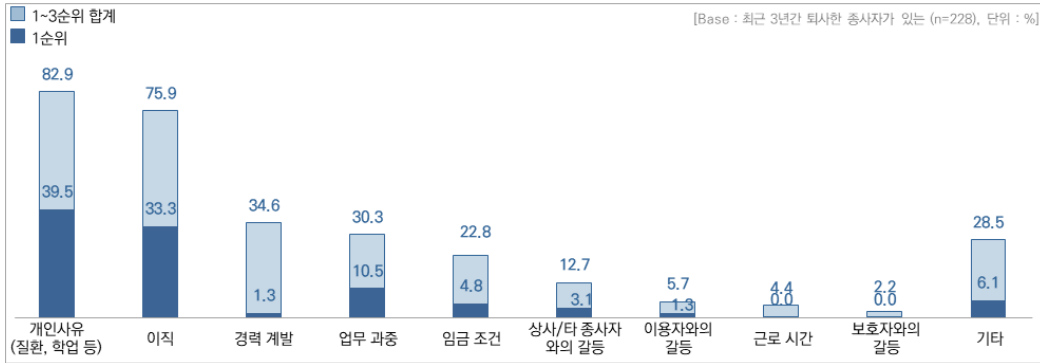


그림 3-24 종사자 퇴사 사유(1~3순위 내림차순)

표 3-66 종사자 퇴사 사유(1~3순위 합계)

(Base: 최근 3년간 퇴사한 종사자가 있는 기관, 단위: %, 중복응답)

	전체 기관	기관유형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 시설
(기관수)	(228)	(91)	(20)	(25)	(92)
개인 사유(질환, 학업 등)	82.9	81.3	90.0	68.0	87.0
이직	75.9	70.3	70.0	88.0	79.3
경력 계발	34.6	35.2	50.0	32.0	31.5
업무 과중	30.3	30.8	35.0	44.0	25.0
임금 조건	22.8	17.6	10.0	36.0	27.2
상사 및 타 종사자와의 갈등	12.7	15.4	10.0	0.0	14.1
이용자와의 갈등	5.7	8.8	5.0	12.0	1.1
근로 시간	4.4	5.5	5.0	0.0	4.3
보호자와의 갈등	2.2	3.3	5.0	4.0	0.0
기타	28.5	31.9	20.0	16.0	30.4

표 3-67 종사자 퇴사 사유(1순위)

(Base: 최근 3년간 퇴사한 종사자가 있는 기관, 단위: %)

	전체 기관	기관유형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 시설
(기관수)	(228)	(91)	(20)	(25)	(92)
개인 사유(질환, 학업 등)	39.5	46.2	25.0	16.0	42.4
이직	33.3	30.8	45.0	40.0	31.5
업무 과중	10.5	3.3	20.0	36.0	8.7
임금 조건	4.8	3.3	0.0	8.0	6.5
상사 및 타 종사자와의 갈등	3.1	3.3	0.0	0.0	4.3
경력 개발	1.3	1.1	0.0	0.0	2.2
이용자와의 갈등	1.3	3.3	0.0	0.0	0.0
기타	6.1	8.8	10.0	0.0	4.3

4) 발달장애 이용자 관련 어려움 및 대처방식

(1)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어려운 점

실천현장에서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어려운 점을 조사한 결과, 1~3순위 합계 기준으로 ‘도전적 행동 대처’(81.4%)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사소통 지원’(50.6%), ‘보호자의 비협조적 태도’(43.5%), ‘신변처리 지원’(39.0%), ‘건강 지원’(24.2%), ‘활동지원’(23.0%)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 응답순위에 커다란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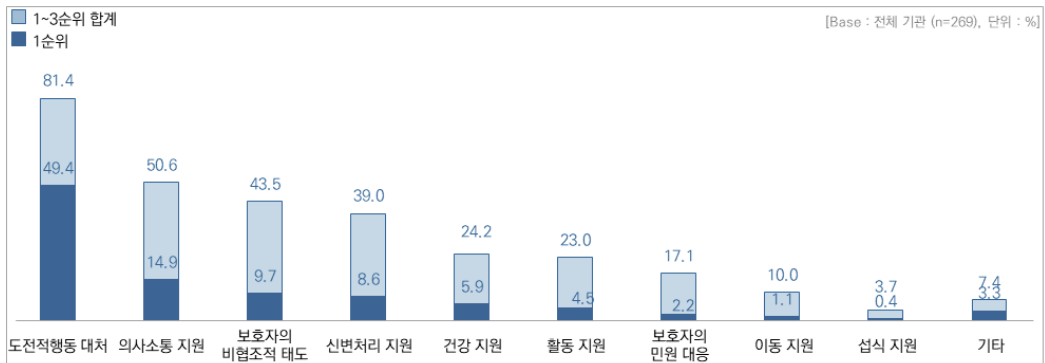


그림 3-25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어려운 점

표 3-68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어려운 점(1~3순위 합계)

(Base: 전체 기관, 단위: %, 중복응답)

	전체 기관	기관유형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 시설
(기관수)	(228)	(91)	(20)	(25)	(92)
도전적 행동 대처	81.4	87.1	90.9	100.0	68.9
의사소통 지원	50.6	46.6	54.5	32.0	58.5
보호자의 비협조적인 태도	43.5	37.1	50.0	40.0	50.0
신변처리 지원	39.0	44.8	40.9	48.0	30.2
건강 지원	24.2	19.0	9.1	8.0	36.8
활동 지원	23.0	22.4	27.3	28.0	21.7
보호자의 민원 대응	17.1	18.1	13.6	28.0	14.2
이동 지원	10.0	9.5	4.5	16.0	10.4
섭식 지원	3.7	5.2	4.5	0.0	2.8
기타	7.4	10.3	4.5	0.0	6.6

(2) 도전적 행동 행동유형 및 대처방식

① 도전적 행동 장애인 수

전체 기관에서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인 수는 1,324명이며, 이는 이용자 현원(5,310명) 대비 2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자 현원 대비 도전적 행동 장애인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7.8%,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83.8%³²⁾,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48.1%, 직업재활시설 9.2%로,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기관의 현원 대비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인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69 실제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인 수

(Base: 전체 기관, 단위: 명, %)

		(기관수)	도전적 행동 장애인 수 (㉑)	이용자(장애인) 현원 (㉒)	이용자 현원대비 도전적 행동 장애인수 (㉑÷㉒)
전체 기관		(269)	1,324	5,310	24.9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644	1,348	47.8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67	80	83.8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317	659	48.1
	직업재활시설	(106)	296	3,223	9.2

32)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의 경우, 뇌병변 시설 4개소와 시각중복 시설 5개소가 포함된 수치임

표 3-70 종사자 현원 대비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인 수

(Base: 전체 기관, 단위: 명)

	기관수 (기관수)	기관당 도전적 행동 장애인수 (a)	기관당 종사자 현원 (b)	종사자 1인당 도전적 행동 장애인수 (a÷b)	
전체 기관	(269)	4.9	5.6	0.9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5.6	4.0	1.4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3.0	2.1	1.4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12.7	12.0	1.1
	직업재활시설	(106)	2.8	6.5	0.4

② 도전적 행동의 행위유형별 이용자 수³³⁾

도전적 행동의 주된 행위유형별 이용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 ‘타해 행동’(29.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해 행동’(26.5%), ‘관심 끌기’(23.0%)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및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경우 ‘타해 행동’의 비율이 다른 유형의 기관 대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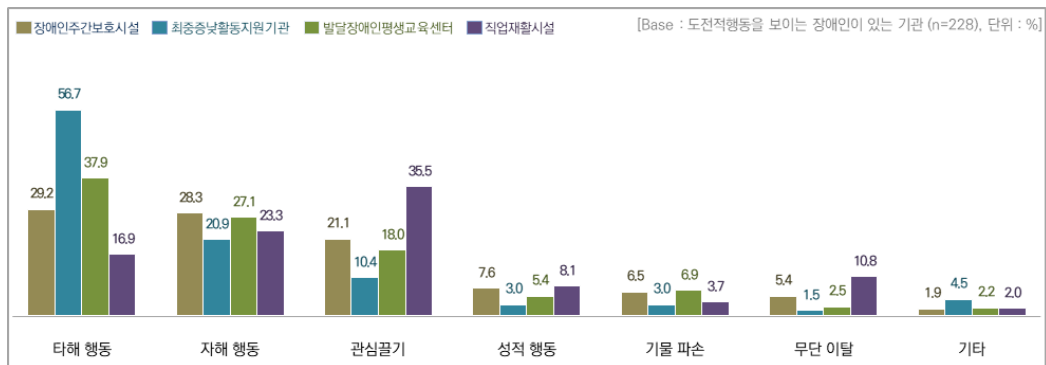


그림 3-26 도전적 행동 행위유형별 장애인 수

33) 이용자가 2가지 이상의 도전적 행동 행위유형을 보일 경우, 발생빈도나 심각성 정도가 높은 행위를 기준으로 주된 행동유형 1가지만 선택하도록 함

【 표 3-71 】 도전적 행동 행위유형별 장애인 수

(Base: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인이 있는 기관, 단위: 명, (%))

	전체 기관		기관유형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 시설				
타해 행동	396	(29.9)	188	(29.2)	38	(56.7)	120	(37.9)	50	(16.9)
자해 행동	351	(26.5)	182	(28.3)	14	(20.9)	86	(27.1)	69	(23.3)
관심 끌기	305	(23.0)	136	(21.1)	7	(10.4)	57	(18.0)	105	(35.5)
성적 행동	92	(6.9)	49	(7.6)	2	(3.0)	17	(5.4)	24	(8.1)
기물 파손	77	(5.8)	42	(6.5)	2	(3.0)	22	(6.9)	11	(3.7)
무단 이탈	76	(5.7)	35	(5.4)	1	(1.5)	8	(2.5)	32	(10.8)
기타	28	(2.1)	12	(1.9)	3	(4.5)	7	(2.2)	6	(2.0)
합계	1,324	(100.0)	644	(100.0)	67	(100.0)	317	(100.0)	296	(100.0)

③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상해 발생빈도

최근 1개월 간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상해 발생빈도를 조사한 결과, ‘5회 이하’가 가장 많았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및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경우, ‘6회 이상~10회 미만’, ‘10회 이상’ 발생빈도가 다른 유형 기관대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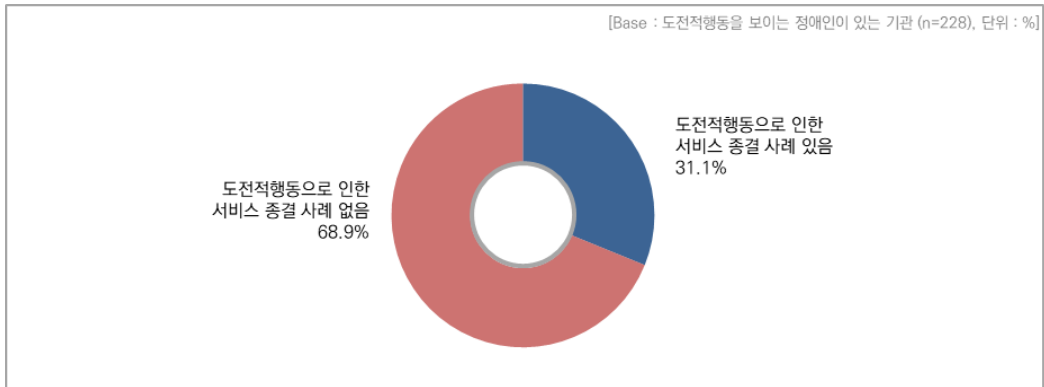
【 표 3-72 】 최근 1개월간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상해 발생빈도

(Base: 도전적 행동 장애인이 있는 기관, 단위: %)

		(기관수)	없음	5회 이하	6회이상~ 10회 미만	10회 이상	거의 매일
전체 기관		(228)	31.6	40.8	9.2	8.8	9.6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04)	21.2	50.0	6.7	8.7	13.5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1)	19.0	23.8	28.6	19.0	9.5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8.0	40.0	24.0	12.0	16.0
	직업재활시설	(78)	56.4	33.3	2.6	5.1	2.6

④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서비스 종결사례 유무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서비스 종결사례가 있는 기관은 31.1%(71개소)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35.6%)과 직업재활시설(35.9%)에서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서비스 종결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림 3-27】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서비스 종결 사례 유무

【표 3-73】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서비스 종결 사례 유무

(Base: 도전적 행동 장애인이 있는 기관, 단위: 개소, (%))

		(기관수)	서비스 종결 사례 있음		서비스 종결 사례 없음	
전체 기관		(228)	71	(31.1)	157	(68.9)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04)	37	(35.6)	67	(64.4)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1)	2	(9.5)	19	(90.5)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4	(16.0)	21	(84.0)
	직업재활시설	(78)	28	(35.9)	50	(64.1)

④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서비스 종결 시 주요 고려사항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서비스 종결 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른 이용자의 안전문제'(72.8%)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용자 본인의 안전문제'(15.4%)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다른 이용자의 안전문제' 외 '이용자 본인의 안전문제'를 꼽은 응답률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높게 나타났다.

【 표 3-74 】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서비스 종결 시 고려사항

(Base: 도전적 행동 장애인이 있는 기관, 단위: %)

		(기관수)	다른 이용자의 안전문제	이용자 본인의 안전문제	종사자의 안전문제	다른 이용자 보호자의 민원	기타
전체 기관		(228)	72.8	15.4	1.8	0.9	9.2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04)	75.0	14.4	1.9	0.0	8.7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1)	42.9	14.3	0.0	4.8	38.1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68.0	24.0	4.0	0.0	4.0
	직업재활시설	(78)	79.5	14.1	1.3	1.3	3.8

⑤ 도전적 행동 대처 문서화된 근거규정 및 매뉴얼 마련 여부

도전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문서화된 근거규정이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 전체 기관의 76.8%(175개소)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89.4%)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92.0%)에서 '도전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문서화된 근거규정 및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재활시설은 56.4%만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75 】 도전적 행동 대처 문서화된 근거규정 및 매뉴얼 마련 여부

(Base: 도전적 행동 장애인 있는 기관, 단위: (%))

		(기관수)	마련되어 있음		마련되어 있지 않음	
전체 기관		(228)	175	(76.8)	53	(23.2)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04)	93	(89.4)	11	(10.6)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1)	15	(71.4)	6	(28.6)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23	(92.0)	2	(8.0)
	직업재활시설	(78)	44	(56.4)	34	(43.6)

⑥ 도전적 행동 대처 신체적 개입 필요 시 사전 동의 절차 마련 여부

도전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신체적 개입 필요 시 동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서면 동의' 66.7%(152개소), '구두 동의' 21.1%(48개소)로 나타났다. 반면, 사전 동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12.3%(28개소)로 확인되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및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대체로 '서면 동의' 또는 '구두 동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사전 동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기관 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3-76 도전적 행동 대처 신체적 개입 필요 시 사전 동의 절차 마련 여부

(Base: 도전적 행동 장애인 있는 기관, 단위: 개소, (%))

		(기관수)	서면 동의		구두 동의		사전 동의 절차 없음	
전체 기관		(228)	152	(66.7)	48	(21.1)	28	(12.3)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04)	94	(90.4)	8	(7.7)	2	(1.9)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1)	19	(90.5)	0	(0.0)	2	(9.5)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18	(72.0)	5	(20.0)	2	(8.0)
	직업재활시설	(78)	21	(26.9)	35	(44.9)	22	(28.2)

⑦ 기관의 도전적 행동 대처방식

기관에서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처방식을 조사한 결과, 중복응답 기준으로 ‘도전적 행동 예방을 위한 욕구해소 활동 촉진’(87.3%)을 실행하는 기관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전적 행동을 자극하는 물리적 환경 개선’(81.1%)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공간적 개입’(79.8%), ‘최소한의 신체적 접촉’(74.1%)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최중증 장애인 낮 활동 지원기관 및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경우, ‘움직임 규제를 위한 장비사용을 통한 개입’과 ‘도전적 행동의 완화를 위한 정신과 약물 관리’, ‘도전적 행동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한 도전적 행동 대처율이 다른 유형의 기관 대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도전적 행동이 심한 경우 서비스 이용 종결’을 통한 도전적 행동 대처율이 다른 유형의 기관 대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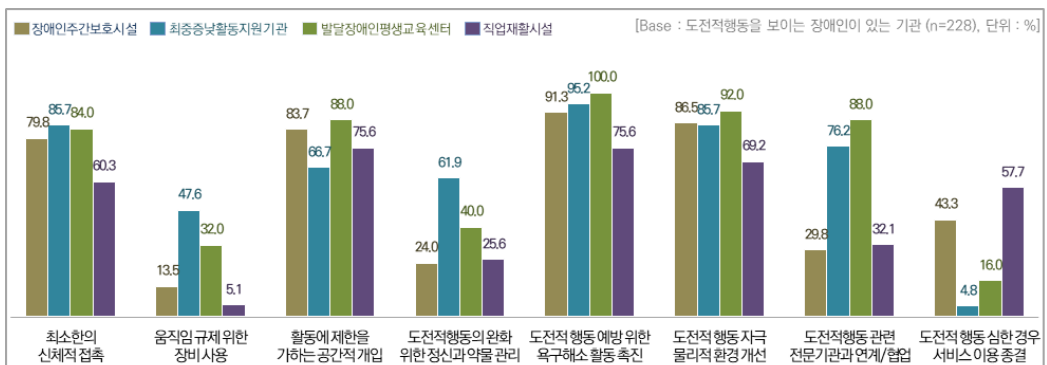


그림 3-28 도전적 행동 대처방식 해당여부 (기관유형별)

표 3-77 | 도전적 행동 대처방식 해당여부

(Base: 도전적 행동 장애인이 있는 기관, 단위: %)

		전체 기관	기관유형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 시설
(기관수)		(228)	(104)	(21)	(25)	(78)
최소한의 신체적 접촉을 통한 개입	해당	74.1	79.8	85.7	84.0	60.3
	비해당	25.9	20.2	14.3	16.0	39.7
움직임 규제를 위한 장비 사용을 통한 개입	해당	15.8	13.5	47.6	32.0	5.1
	비해당	84.2	86.5	52.4	68.0	94.9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공간적 개입	해당	79.8	83.7	66.7	88.0	75.6
	비해당	20.2	16.3	33.3	12.0	24.4
도전적 행동의 완화를 위한 정신과 약물 관리	해당	29.8	24.0	61.9	40.0	25.6
	비해당	70.2	76.0	38.1	60.0	74.4
도전적 행동의 예방을 위한 욕구해소 활동 촉진	해당	87.3	91.3	95.2	100.0	75.6
	비해당	12.7	8.7	4.8	0.0	24.4
도전적 행동을 자극하는 물리적 환경 개선	해당	81.1	86.5	85.7	92.0	69.2
	비해당	18.9	13.5	14.3	8.0	30.8
도전적 행동 관련 전문 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	해당	41.2	29.8	76.2	88.0	32.1
	비해당	58.8	70.2	23.8	12.0	67.9
도전적 행동이 심한 경우 서비스 이용 종결	해당	41.7	43.3	4.8	16.0	57.7
	비해당	58.3	56.7	95.2	84.0	42.3

⑦ 기관의 도전적 행동 대처능력 수준³⁴⁾

기관의 도전적 행동 대처능력 수준을 조사한 결과, 5점 척도 기준 평균 3.74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결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가장 높고(평균 4.13점), 직업재활시설이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평균 3.40점).

34) 도전적 행동 대처능력 관련 8개 항목의 평균(5점척도 평가)이며, 각 항목별 평가결과는 별첨 참조

표 3-78 도전적 행동 대처능력

(Base: 도전적 행동 장애인 있는 기관, 단위: 5점척도 평균)

		(기관수)	5점척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p 값
전체 기관		(228)	3.74	0.724	-	-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04)	3.86	0.584	11.106	0.000**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1)	3.97	0.954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4.13	0.605		
	직업재활시설	(78)	3.40	0.734		

⑧ 도전적 행동 경험 후 후속조치 해당여부

기관 내에서 종사자가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을 경험 후 후속조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슈퍼비전’(93.0%)을 시행하는 기관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해발생 시)치료비 지원’(74.6%), ‘휴식/휴가 제공’(63.2%)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후속조치 해당율이 높은 가운데, 특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다른 유형의 기관 대비 ‘(상해발생 시)치료비 지원’(100.0), ‘휴식/휴가제공’(80.0%)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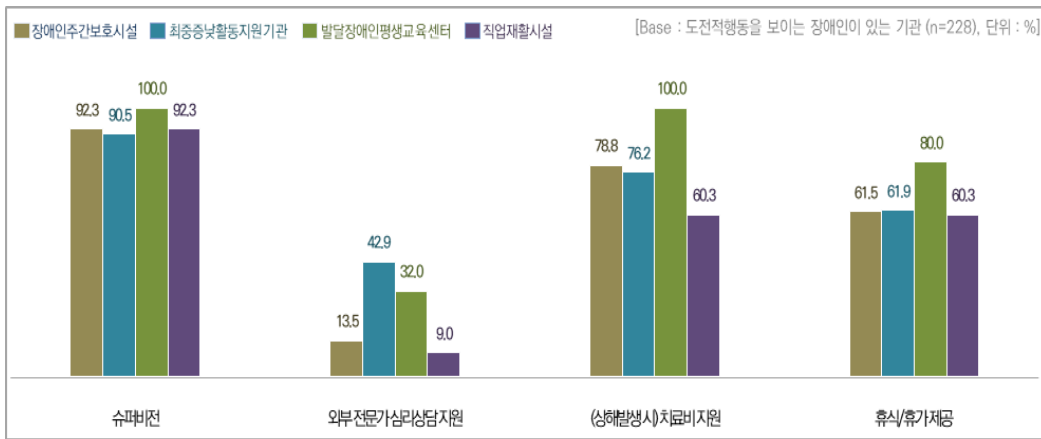


그림 3-29 도전적 행동 경험 후 후속조치 해당여부(기관유형별)

표 3-79 | 도전적 행동 경험 후 후속조치 해당여부

(Base: 도전적 행동 장애인이 있는 기관, 단위: %)

	전체 기관	기관유형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 시설	
(기관수)	(228)	(104)	(21)	(25)	(78)	
슈퍼비전	해당	93.0	92.3	90.5	100.0	92.3
	비해당	7.0	7.7	9.5	0.0	7.7
외부전문가 심리상담 지원	해당	16.7	13.5	42.9	32.0	9.0
	비해당	83.3	86.5	57.1	68.0	91.0
(상해발생 시) 치료비 지원	해당	74.6	78.8	76.2	100.0	60.3
	비해당	25.4	21.2	23.8	0.0	39.7
휴식/휴가 제공	해당	63.2	61.5	61.9	80.0	60.3
	비해당	36.8	38.5	38.1	20.0	39.7

⑨ 종사자 소진 수준³⁵⁾

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를 활용하여 종사자 소진 수준을 정서적 고갈³⁶⁾, 이용자에 대한 비인격화³⁷⁾, 개인적 성취감 상실³⁸⁾의 3가지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정서적 고갈

정서적 고갈 수준은 기관유형별로는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 직위별로는 팀장 또는 팀원의 정서적 고갈 수준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 현원 대비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이용자 비율이 높을수록 정서적 고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35) Maslach Burnout Inventory(MBI) 척도를 사용하여 종사자 소진수준을 평가하였음. 원래 2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3가지 영역별로 각각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 Alpha) 분석 후, 신뢰도가 낮은 항목 7개 항목을 제외하고 총 15개 항목으로 종사자 소진수준을 재분석하였음

36) '정서적 고갈' 관련 7개 항목의 평균(5점척도 평가)이며, 각 항목별 평가결과는 별첨 참조

37) '이용자에 대한 비인격화' 관련 5개 항목의 평균(5점 척도 평가)이며, 각 항목별 평가결과는 별첨 참조. 다른 항목들과 달리 역질문 방식으로 질문하였으며, 역코딩 후 결과를 분석함

38) '개인적 성취감 상실' 관련 3개 항목의 평균(5점 척도 평가)이며, 각 항목별 평가결과는 별첨 참조.

【 표 3-80 】 종사자 소진수준_정서적 고갈

(Base: 전체 기관, 단위: 5점척도 평균)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값	p 값
전체 기관		(269)	2.76	0.773	-	-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2.78	0.796	3.935	0.009**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3.14	0.696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2.98	0.743		
	직업재활시설	(106)	2.61	0.738		
직위	시설장/국·부장	(80)	2.58	0.695	3.221	0.041*
	팀장	(102)	2.84	0.822		
	팀원	(87)	2.83	0.763		
현 기관 재직경력	3년 미만	(83)	2.64	0.797	1.621	0.107
	3년 이상	(186)	2.81	0.759		
장애인분야 재직경력	3년 미만	(30)	2.72	0.837	0.668	0.513
	3년 이상 ~ 10년 미만	(90)	2.69	0.716		
	10년 이상	(149)	2.81	0.795		
성별	남성	(108)	2.66	0.726	1.884	0.061
	여성	(161)	2.83	0.798		
연령대	30대 이하	(119)	2.75	0.773	0.717	0.489
	40대	(94)	2.83	0.795		
	50대 이상	(56)	2.68	0.741		
현원 대비 도전적 행동 이용자비율	20% 미만	(110)	2.59	0.759	4.356	0.005**
	20% 이상 ~ 50% 미만	(67)	2.85	0.748		
	50% 이상 ~ 80% 미만	(58)	2.78	0.803		
	80% 이상	(34)	3.10	0.701		

※ 평균이 높을수록 정서적 고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 유의성 검정 : ** p<0.01, * p<0.05

② 이용자에 대한 비인격화

이용자에 대한 비인격화는 기관유형별로는 직업재활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비인격화 수준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종사자 직위별로는 팀장 및 팀원의 이용자에 대한 비인격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종사자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종사자의 이용자에 대한 비인격화 수준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81 종사자 소진수준_이용자에 대한 비인격화

(Base: 전체 기관, 단위: 5점척도 평균)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값	p 값
전체 기관		(269)	2.22	0.514	-	-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2.16	0.517	2.847	0.038*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2.22	0.453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2.07	0.424		
	직업재활시설	(106)	2.33	0.528		
직위	시설장/국·부장	(80)	2.08	0.445	5.940	0.003**
	팀장	(102)	2.22	0.484		
	팀원	(87)	2.35	0.575		
현 기관 재직경력	3년 미만	(83)	2.30	0.554	1.545	0.124
	3년 이상	(186)	2.19	0.493		
장애인분야 재직경력	3년 미만	(30)	2.39	0.628	2.321	0.100
	3년 이상 ~ 10년 미만	(90)	2.24	0.503		
	10년 이상	(149)	2.17	0.490		
성별	남성	(108)	2.18	0.458	1.166	0.245
	여성	(161)	2.25	0.548		
연령대	30대 이하	(119)	2.30	0.542	3.614	0.028*
	40대	(94)	2.20	0.461		
	50대 이상	(56)	2.08	0.511		
현원 대비 도전적 행동 이용자비율	20% 미만	(110)	2.29	0.476	1.735	0.160
	20% 이상 ~ 50% 미만	(67)	2.12	0.498		
	50% 이상 ~ 80% 미만	(58)	2.18	0.606		
	80% 이상	(34)	2.27	0.472		

※ 평균이 높을수록 이용자에 대한 비인격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 유의성 검정 : ** p<0.01, * p<0.05

③ 개인적 성취감 상실

개인적 성취감 상실은 종사자 직위별로는 팀장 직위의 개인적 성취감 상실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현 기관 재직경력별로는 3년 이상 재직자의 개인적 성취감 상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3-82 】 종사자 소진수준_개인적 성취감 상실

(Base: 전체 기관, 단위: 5점척도 평균)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값	p 값
전체 기관		(269)	2.04	0.693	-	-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1.95	0.696	1.110	0.345
	최종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2.14	0.731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2.07	0.624		
	직업재활시설	(106)	2.11	0.696		
직위	시설장/국·부장	(80)	1.88	0.607	4.479	0.012*
	팀장	(102)	2.18	0.757		
	팀원	(87)	2.02	0.661		
현 기관 재직경력	3년 미만	(83)	1.90	0.628	2.297	0.023*
	3년 이상	(186)	2.10	0.713		
장애인분야 재직경력	3년 미만	(30)	1.98	0.643	0.236	0.790
	3년 이상 ~ 10년 미만	(90)	2.07	0.729		
	10년 이상	(149)	2.03	0.684		
성별	남성	(108)	2.02	0.697	0.489	0.626
	여성	(161)	2.06	0.692		
연령대	30대 이하	(119)	2.03	0.717	0.301	0.740
	40대	(94)	2.08	0.699		
	50대 이상	(56)	1.99	0.637		
현원 대비 도전적 행동 이용자비율	20% 미만	(110)	2.12	0.682	1.450	0.229
	20% 이상 ~ 50% 미만	(67)	2.08	0.679		
	50% 이상 ~ 80% 미만	(58)	1.90	0.734		
	80% 이상	(34)	1.97	0.668		

※ 평균이 높을수록 개인적 성취감 상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 유의성 검정 : ** p<0.01, * p<0.05

④ 전체 합산

전체 항목 합산 점수 기준으로는 종사자 직위별로는 팀장 및 팀원 직위 종사자의 소진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유형, 현 기관 재직경력, 종사자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표 3-83 】 종사자 소진수준_전체 항목 합산

(Base: 전체 기관, 단위: 5점척도 평균)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값	p 값
전체 기관		(269)	2.44	0.526	-	-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2.41	0.532	1.317	0.269
	최종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2.63	0.472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2.50	0.520		
	직업재활시설	(106)	2.42	0.530		
직위	시설장/국·부장	(80)	2.27	0.439	5.724	0.004**
	팀장	(102)	2.50	0.567		
	팀원	(87)	2.51	0.523		
현 기관 재직경력	3년 미만	(83)	2.38	0.556	1.138	0.257
	3년 이상	(186)	2.46	0.512		
장애인분야 재직경력	3년 미만	(30)	2.46	0.597	0.087	0.917
	3년 이상 ~ 10년 미만	(90)	2.42	0.501		
	10년 이상	(149)	2.44	0.530		
성별	남성	(108)	2.37	0.512	1.779	0.077
	여성	(161)	2.48	0.532		
연령대	30대 이하	(119)	2.45	0.554	1.152	0.318
	40대	(94)	2.47	0.523		
	50대 이상	(56)	2.34	0.468		
현원 대비 도전적 행동 이용자비율	20% 미만	(110)	2.40	0.529	1.362	0.255
	20% 이상 ~ 50% 미만	(67)	2.45	0.509		
	50% 이상 ~ 80% 미만	(58)	2.40	0.565		
	80% 이상	(34)	2.60	0.470		

※ 평균이 높을수록 종사자 소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 유의성 검정 : ** p<0.01, * p<0.05

⑤ 소진수준 상위그룹 종사자

전체 응답자(종사자)의 소진수준을 3분위 그룹으로 구분한 후 소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위 33%이상) 종사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또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팀장 또는 팀원 직위 종사자, 장애인분야 재직경력(연수)이 적을수록, 연령대가 적을수록, 현원 대비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이용자 비율이 높은 기관일수록 소진수준이 높은 종사자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표 3-84 종사자 소진수준별 특성

(Base: 전체 기관, 단위: 5점척도 평균, %)

		(사례수)	단위	소진 수준 하위 33% (低)	소진 수준 중위 33% (中)	소진 수준 상위 33% (高)
소진 수준	종사자 소진 수준	(269)	평균(점)	1.85	2.46	2.99
	정서적 고갈	(269)	평균(점)	1.98	2.79	3.51
	이용자에 대한 비인격화	(269)	평균(점)	1.90	2.28	2.48
	개인적 성취감 상실	(269)	평균(점)	1.47	2.00	2.64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6)	%	35.3	34.5	30.2
	최종증 낮활동 지원기관	(22)	%	18.2	27.3	<u>54.5</u>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	28.0	32.0	<u>40.0</u>
	직업재활시설	(106)	%	35.8	33.0	31.1
직위	시설장/국·부장	(80)	%	<u>46.3</u>	<u>40.0</u>	13.8
	팀장	(102)	%	30.4	26.5	<u>43.1</u>
	팀원	(87)	%	25.3	34.5	<u>40.2</u>
현 기관 재직경력	3년 미만	(83)	%	<u>38.6</u>	32.5	28.9
	3년 이상	(186)	%	31.2	33.3	35.5
장애인분야 재직경력	3년 미만	(30)	%	36.7	23.3	<u>40.0</u>
	3년 이상 ~ 10년 미만	(90)	%	31.1	33.3	35.6
	10년 이상	(149)	%	34.2	34.9	30.9
성별	남성	(108)	%	<u>40.7</u>	27.8	31.5
	여성	(161)	%	28.6	36.6	34.8
연령대	30대 이하	(119)	%	31.1	31.1	<u>37.8</u>
	40대	(94)	%	33.0	34.0	33.0
	50대 이상	(56)	%	<u>39.3</u>	35.7	25.0
현원 대비 도전적 행동 이용자비율	20% 미만	(110)	%	<u>37.3</u>	32.7	30.0
	20% 이상 ~ 50% 미만	(67)	%	31.3	34.3	34.3
	50% 이상 ~ 80% 미만	(58)	%	31.0	31.0	<u>37.9</u>
	80% 이상	(34)	%	17.6	35.3	<u>47.1</u>

⑩ 도전적 행동 대처 관련 내·외부 교육 이수 여부

기관 소속 종사자의 도전적 행동 대처 관련 내·외부 교육 이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88.2%)의 기관(종사자)이 도전적 행동 대처 관련 내·외부 교육을 경험(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직업재활시설은 69.2%만이 교육을 경험하였으며, 다른 유형의 기관 대비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3-85 도전적 행동 대처 관련 내·외부 교육이수 여부

(Base: 도전적 행동 장애인 있는 기관, 단위: 명, (%))

		(기관수)	교육이수 경험 있음		교육이수 경험 없음	
전체 기관		(228)	201	(88.2)	27	(11.8)
기관 유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04)	101	(97.1)	3	(2.9)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21)	21	(100.0)	0	(0.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	25	(100.0)	0	(0.0)
	직업재활시설	(78)	54	(69.2)	24	(30.8)

⑪ 도전적 행동 대처 관련 내·외부 교육 이수 여부

도전적 행동 관련 희망하는 교육내용을 조사한 결과, 1~3순위 합계 기준으로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체행동 제시방법'(70.2%)을 선택한 기관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전적 행동 발생 시 신체적 대처 방법'(59.2%), '도전적 행동 예방 전략'(54.8%), '도전적 행동의 원인 및 특성'(41.2%), '종사자의 스트레스 및 소진 관리'(31.1%) 순으로 나타났다. 단, 1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도전적 행동 발생 시 신체적 대처방법'(27.6%)과 '도전적 행동의 원인 및 특성'(26.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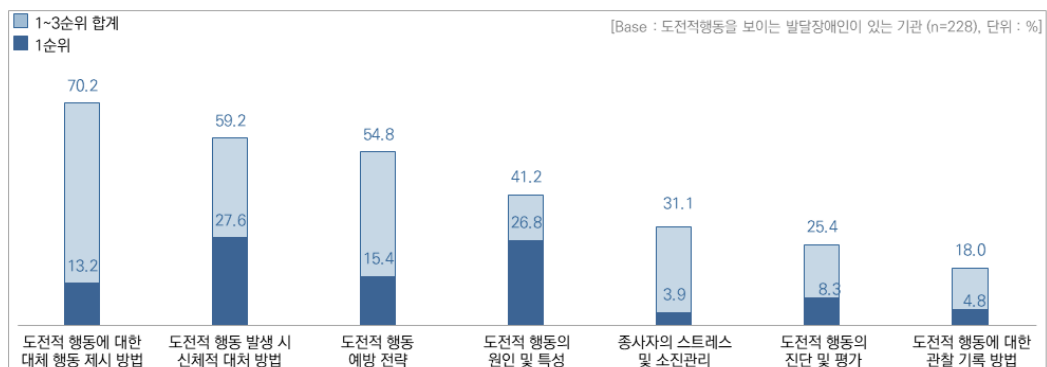


그림 3-30 도전적 행동 관련 희망 교육내용

【 표 3-86 】 도전적 행동 관련 희망 교육내용(1~3순위 합계)

(Base: 도전적 행동 장애인이 있는 기관, 단위: %, 중복응답)

	전체 기관	기관유형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 시설
(기관수)	(228)	(104)	(21)	(25)	(78)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체행동 제시방법	70.2	74.0	61.9	68.0	67.9
도전적 행동 발생 시 신체적 대처 방법	59.2	59.6	52.4	48.0	64.1
도전적 행동 예방 전략	54.8	54.8	61.9	72.0	47.4
도전적 행동의 원인 및 특성	41.2	36.5	33.3	48.0	47.4
종사자의 스트레스 및 소진관리	31.1	28.8	33.3	28.0	34.6
도전적 행동의 진단 및 평가	25.4	24.0	38.1	20.0	25.6
도전적 행동에 대한 관찰 기록 방법	18.0	22.1	19.0	16.0	12.8

⑫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인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기관 차원)

기관의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인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우선 해결과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기존 시설 내 인력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36.8%), 다음으로 ‘시설의 물리적 환경개선’(14.9%), ‘도전적 행동 지원 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14.0%) 순으로 나타났다.

【 표 3-87 】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인 우선 해결과제

(Base: 도전적 행동 장애인이 있는 기관, 단위: %)

	전체 기관	기관유형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 시설
(기관수)	(228)	(104)	(21)	(25)	(78)
기존 시설 내 인력 추가 지원	36.8	34.6	38.1	40.0	38.5
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	14.9	18.3	19.0	16.0	9.0
도전적 행동 지원 전문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 강화	14.0	12.5	14.3	12.0	16.7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강화	11.4	10.6	9.5	12.0	12.8
이용자의 정신과 약물 관리	10.5	12.5	4.8	4.0	11.5
독립적인 특화서비스 마련	10.5	9.6	4.8	16.0	11.5
기타	1.8	1.9	9.5	0.0	0.0

⑬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과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1~3순위 합계 기준으로 ‘기존 시설의 인력지원’(83.6%)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역사회 돌봄 및 낮활동 이용시설 확충’(58.7%), ‘최종증 발달장애인 특화서비스 확대’(55.8%), ‘사회서비스 제공시간 확대’(52.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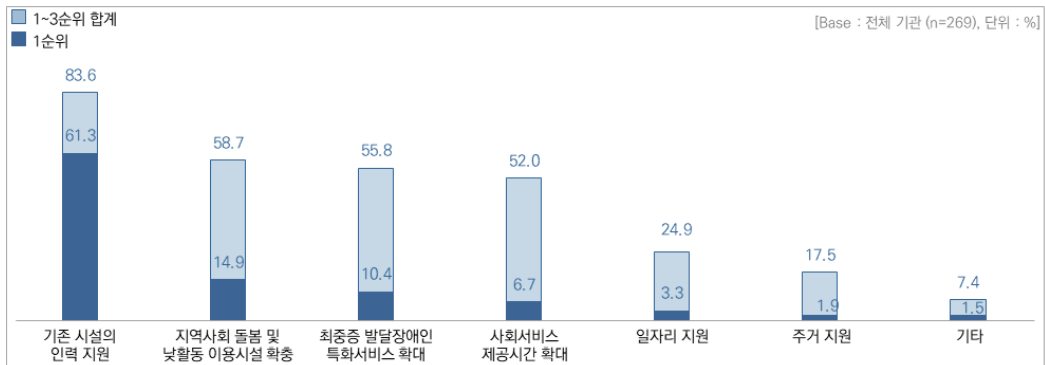


그림 3-31 |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표 3-88 |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1~3순위 합계)

(Base: 전체 기관, 단위: %)

	전체 기관	기관유형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최종증 낮활동 지원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 시설
(기관수)	(269)	(116)	(22)	(25)	(106)
기존 시설의 인력 지원	83.6	86.2	77.3	80.0	83.0
지역사회 돌봄/낮활동 이용시설 확충	58.7	60.3	90.9	52.0	51.9
최종증 발달장애인을 특화서비스 확대	55.8	58.6	77.3	84.0	41.5
사회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52.0	50.0	36.4	48.0	58.5
일자리 지원	24.9	11.2	4.5	12.0	47.2
주거 지원	17.5	22.4	4.5	16.0	15.1
기타	7.4	11.2	9.1	8.0	2.8

3 소결

본 조사는 서울시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의 현황을 점검해봄으로써 정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의 이용기간 및 이용 연령상한 제한 유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체 조사대상 시설 중 이용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시설은 32.3%, 이용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는 시설은 56.5%로 나타났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경우 서울시 운영지침에 따라 최대 5년으로 이용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경우에도 27.6%가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이용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용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는 시설도 절반 이상이고, 이용가능 상한연령은 평균 52.0세로 조사되었다. 특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이용가능 연령상한을 두고 있는 시설이 64.1%로 다른 시설 대비 월등히 높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처럼 이용기간과 이용 연령상한에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는 신규 이용자들의 대기자 적재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발달장애 이용자들의 선호와 선택과는 무관하게 주기적으로 새로운 시설로 옮겨 다녀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자 적재 현상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시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상반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과 같이 특수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이용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용기간과 이용가능 연령상한에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둘째, 도전적 행동을 가진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시설 가운데 입소심사 기준으로 도전적 행동 여부를 고려하는 시설이 56.9%이며, 타 시설 의뢰나 입소 거절의 주요 사유도 '도전적 행동'(32.1%)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자의적 서비스 종결의 사유로도 '다른 이용자의 안전문제'가 26.0%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전적 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들은 비자의적 서비스 종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 우회적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시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기관의 이용자 총 정원은 5,826명, 총 현원은 5,310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 부족 인원은 516명, 충족률은 91.1%로 조사되었다. 기관유형별 이용자 충원율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93.0%,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87.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86.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91.4%로 모든 시설유형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이유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등 새로운 대체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시설 기반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에 대한 수요가 분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넷째, 전체 장애유형 중 발달장애인이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가장 높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장애(89.3%)와 부장애(2.1%) 합산 기준으로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1.4%로 나타났으며, 이중 '구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며, 도전적 행동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6%(479명)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자 중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31.0%)에서 뿐만 아니라 장애인주간보호시설(23.1%)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18.7%)에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시설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포용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의 종사자 소진에 따른 이·퇴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3년간 퇴사 종사자 수가 969명으로 정원 대비 퇴사율이 61.6%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100.0%)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98.0%)의 종사자 퇴사율이 다른 기관 대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업무 과중'으로 인한 퇴직 사유도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20.0%)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36.0%)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3.3%), 직업재활시설(6.5%)에 비해 월등히 높고, 종사자의 소진수준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전적 행동 등을 가진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선순위 기관 차원에서의 과제로는 '기존 시설 내 인력 추가 지원'(36.8%), '시설의 물리적 환경개선'(14.9%), '도전적 행동 지원 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14.0%)이 필요하고,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과제로는 '기존 시설의 인력지원'(61.3%), '지역사회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 확충'(14.9%), '최중증 발달장애인 특화서비스 확대'(10.4%)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4장

현장실무자 초점집단면접조사 (FGI)

Seoul
Welfare
Foundation

www.welfare.seoul.kr



제4장

현장실무자 초점집단면접조사(FGI)

1 조사 개요

1) 목적

본 조사는 현장실무자들의 관점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들 인구집단의 서비스 이용 제약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보완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2)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FGI)는 발달장애인 돌봄 및 낮활동 이용시설 소속 현장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 모집 선정 기준은 근무경력에 따라 실천경험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시설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시설장 및 종사자로 설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각 시설의 협회나 협의체에 연구의 배경 및 취지, 논의주제, 참여방법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을 추천받아서 모집되었다. 이를 통해 총 19명이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 참여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4-1 초점집단면접조사(FGI) 현장종사자의 인적사항

기관 유형	연번	직위	연령대	경력	
				장애인 분야	현기관 경력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	시설장	40	19년 11개월	16년 6개월
	2	팀장	50	29년	4년 8개월
	3	팀장	40	20년	11년
	4	팀장	40	17년 9개월	16년 6개월
	5	팀장	40	6년 3개월	3개월
최중증 낮활동 지원기관	1	팀장	30	13년 2개월	9년 11개월
	2	팀장	30	10년 2개월	10년 2개월
	3	팀장	40	23년 10개월	23년 10개월
	4	과장	50	29년	27년
	5	부장	40	19년	5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1	센터장	40	23년 2개월	4년 3개월
	2	센터장	50	25년 10개월	1년 11개월
	3	센터장	40	11년	7개월
	4	센터장	40	19년 9개월	3년 1개월
	5	센터장	50	24년	3년 11개월
직업재활시설	1	시설장	50	24년	20년 9개월
	2	시설장	40	11년 9개월	6년 3개월
	3	시설장	50	20년 9개월	6년 9개월
	4	시설장	40	18년 3개월	3년 9개월

3) 내용 및 자료수집

초점집단면접조사(FGI)는 시설유형별로 4~5명, 4개 그룹으로 구성하여 그룹별로 대면집단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전에 개발된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토대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 논의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4-2 | 현장종사자 FGI 논의주제 및 세부내용

논의주제	세부 내용
소속기관의 배경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 발달장애인 특성 및 변화 양상(연령대, 장애유형, 장애정도, 어려움 및 요구사항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기관의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중증 발달장애인 특성 기관유형별 적합한 이용대상에 대한 인식(일상생활 수행능력, 의사소통 능력, 도전적 행동 정도, 중복장애 등)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의 장애/제약 요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기간 및 연령 제한에 대한 인식 유사 서비스 지원기관과의 역할 정립 및 차별성 확보방안 지원형태별 적합성에 대한 인식(전담기관 집중지원형, 피라미드형, 개별화된 지원형) 양질의 종사자 확보·유지를 위한 개선과제

2 조사결과

1) 발달장애 이용자의 특성 및 욕구의 변화

(1) 이용자의 특성 변화

① 고령화에 따른 연령의 양극화

기관유형마다, 시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발달장애 이용자의 고령화가 관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일치된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오래 전에 설립된 시설에 소속된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기존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강하게 나타냈다. 그리고 신규 입소자들의 연령대는 대체로 낮아지고 있어서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들 간 연령의 양극화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용자 당사자가 사망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용자의 친형제가 사망하면서 보호자는 고령이기 때문에 있었던 그런 부가적인 문제들,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을 다 같이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01. 주간보호)

한편,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 유형 대비 이용자들의 연령이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들이 곧바로 오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번에 일이 있어서 평교센터 전체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평교센터는 전반적으로 20대 분들이 약 70~80%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평교센터는 조금 더 갓 졸업하거나 초기 성인기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2, 평교)

“저희는 19년도에 설립했다 보니까 연령대가 조금 젊은 편이에요.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있는데, 거의 지금 구성된 분들은 학교 졸업하고 이쪽으로 바로 건너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05, 최중증)

② 이용자의 중증화

발달장애 이용자 연령의 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최근 이용자들이 전반적으로 중증화 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의 경우 타 시설에서 거부나 종결 처리된 발달장애인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곳이다 보니 이용자들의 중증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중증하신 것 같고, 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스스로 잘 안하시려고 하는 케이스들도 많아요. 챌린지는 워낙에 다른 서비스 기관에서 거부를 당하신 경우들이 많으신데, 다른 시설들을 이용하시다가 그쪽에서 케어가 어렵다는 걸로 종결 처리가 되신 분들인 것 같아요.” (#01, 최중증)

“최근의 현상들을 말씀드리면 신규 근로인들은 중증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 기존 근로인들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01, 직재)

이와 비슷하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소속 종사자들도 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이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입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직업재활시설 소속 종사자들 역시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근로조건이 더 좋은 곳들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작업능력수준이 높은 발달장애인은 그쪽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기존 소속 이용자들의 노화에 따른 기능저하가 나타나면서 전체 이용자들의 중증화 현상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주간보호센터든 보호작업장이든 다 빠져나가고, 특수학교에서 거의 신규로 입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증이에요. 가끔 경증이신 분들이 오시기도 하는데 대체로 보호자가 정보가 너무 없거나 부모연대나 이런 데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시고요.” (#04, 평교)

“직업재활시설이 중증화 되어가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장애인 현장 노동시장의 다변화로 인해 근로능력이 우수한 친구들은 복지일자리라든지 아니면 표준사업장이라든지 그런 곳으로 많이 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작업장에 신규로 들어 온 근로인들은 조금 중증화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01, 직재)

반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보통 최종적으로 입소를 결정하기 이전에 적응관찰 기간을 두고 선별적으로 케어가 용이한 경증 위주로 입소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 대비 이용자들의 중증화에 대한 체감도가 덜한 편이었다.

“저희가 과거에는 사실 그냥 대기자 순서대로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적응 관찰기간을 두고, 관찰을 통해 과연 시설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다른 이용자들과 잘 융화될 수 있을지, 도전적 행동이 발생했을 때 감당할 수 있을지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신규 입소를 받다 보니까 오히려 중증도는 조금 더 완화된 것 같기도 해요.” (#01, 주간보호),

(2) 이용자의 욕구 다변화

① 돌봄 외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요구

발달장애 이용자들이 고령화·중증화가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관리·돌봄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도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면, 이전 대비 건강, 치아 및 체력관리, 일상생활 지원, 문화여가 활동 관련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 들어서는 치아관리나 건강관리 쪽에 대해서도 요구를 많이 하세요. 저희는 이용자들이 노령, 중고령이다 보니까 우선 건강이나 체력 그런 쪽에 중점을 많이 두고 하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정적으로 원예를 한다거나 음악을 해도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미묘하게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04, 주간보호)

“변화하고 있는 욕구는 처음에는 자립에 대한 욕구였다면, 지금은 나가서 활동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로 좀 변하는 것 같아요.” (#05, 평교)

② 근로·취업에 대한 요구

최근 중증 발달장애인도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가 다양한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면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 사이에서 근로·취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일자리 정보 및 취업 연계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이동하는 이용자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예전에는 ‘우리 애는 그냥 맡아만 줘도 감사해요’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잠깐만요. 재는 90만원 받고 거기 다닌다고요? 재도 취업할 정도면 우리 애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시면서 보호자들 간에도 아주 미묘한 역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맞는 취업을 시키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직장에서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자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센터의 이슈가 그것인 것 같아요.” (#04, 평교)

“본인의 자녀가 아침에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어디에 계약되어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부모 사후에도 독립적인 부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01, 직재)

③ 자립 및 주거 지원에 대한 요구

자립 및 주거 지원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했다. 과거에는 보호자들이 주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주간에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었다면, 지금은 보호자들이 자녀의 자립 및 주거문제까지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평생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 서비스 내용이 다 자립을 위한 준비 그런 거잖아요. 적응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낮 활동 동안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센터가 이후에 집에서나 그 외의 시간에 본인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인 거잖아요.” (#01, 평교)

“자립에 대한 부분들도 욕구가 커요. 아이가 서른 전에 지원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이런 곳에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거 서비스가 되게 다양화되고 있어서 보호자 교육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알아보러 다니고요, ‘애랑 따로 살고 싶어요’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구 때문에 올해 저희가 자립캠프라는 걸 만들었어요.(#04, 평교)

(2) 이용자의 특성 및 욕구 다변화에 따른 실천현장에서의 어려움

① 종사자의 업무부담 가중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 이용자의 증증화·고령화·욕구의 다변화는 결과적으로 종사자의 돌봄 부담의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나타냈다. 이용자들이 증증화·고령화됨에 따라 스스로 신변처리 및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종사자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전처럼 단순히 발달장애 이용자를 돌보는 역할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자세유지, 생활지원 등의 영역까지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의 범위도 확장되고 있다고 했다.

“주간보호 이용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체력적인 부분에서 다운돼서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업무 난이도나 피로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도전적 행동이 없었다가 생기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02, 주간보호)

“이용자의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활동을 잘 안하시려고하고 움직임이 적어요. 저희가 체육 프로그램을 몇 개 하는데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하시더라도 하나하나 자세를 다 잡아드려야 하고, 그렇다보니 이용자의 비만문제, 위생문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04, 주간보호)

②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 범위의 확대

이전 대비 발달장애 이용자와 보호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요구하는 사항이 광범위해지고 있다는 것도 기관과 종사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증증화·욕구의 다변화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요구들을 모두 수용하는 게 맞는지 고민을 안고 있었다.

“일부 장애인 부모의 경우, 당신 자녀의 능력보다는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으세요. 어머님들이 너무 많은 지식은 정보의 바다에서 다 받아들이시다 보니까 ‘우리 애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요?’ 하세요. 저희가 보기에는 욕심인데.” (#03, 주간보호)

“제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데 직업의 욕구나 자립하고 싶다고 하시는 욕구들이 들어왔을 때 연계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평생교육센터에서는 10명의 교사 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다 맞춤형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나? 이러한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까? 해야 되나? 저는 그게 고민점이 있어요.” (#01, 평교)

③ 종사자의 소진에 잦은 이직과 교체

연구 참여자들은 이용자들의 고령화·증증화를 체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이전보다 기능상태가 좋지 않은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지원인력 수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업무부담은 늘어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소진으로 인해 종사자들이 이직하는 사례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라면서 우려감을 나타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좀 알아서 해주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고령화가 되고 하면서 부모님도 그것을 좀 하시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교사 1명에 요구되는 것들이 계속 점점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교사의 소진이라든지 역량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01, 직제)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어떤 정책과 운영의 변화가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용자의 그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보니, 이 상태로 향후 몇년 동안 지속된다면 우리 직업현장에도 어떤 큰 어려움이나 과제로 부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걱정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02, 직제)

2) 최종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 이용자 중에서도 신변처리에 있어서 전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고, 발달장애 외 중복장애나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이용자를 최종증 발달장애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 혼자서 신변처리가 어려운 이용자

신변처리 가능여부에 따른 지원 난이도에 대한 인식은 기관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신변처리 가능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거론한 반면, 최종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소속 종사자들은 신변처리능력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인식차이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다른 기관 대비 지원인력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신변처리 지원에 대한 부담감

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경우 과거 서비스 이용 거부를 경험했던 최중증 및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종사자들은 신변처리 지원을 자신의 업무 중에 하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제가 주간보호 있을 때는 진짜 신변처리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오래 있던 중년의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신변처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평교체계가 원래 그런 건지 몰라도 직원들의 태도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01, 평교)

“주간보호나 일반 낮 활동 지원 기관과 같은 경우 신변처리라든가 안되시는 분들은 거기다 종사자가 좀 적잖아요. 적다 보니까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결국 평교에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게 좀 가장 큰 어려움이지 않을까.” (#03, 평교)

비록 기관유형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차이가 나타나긴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스스로 신변처리가 안 되는 발달장애인은 주간 돌봄 및 활동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그리고 일부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신변처리 지원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면 자립역량 강화 등과 같은 다른 의미 있는 영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도전 행동은 어쨌든 저희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챌린지2 목적에 맞춰서 대체행동을 제시하는 것은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그건 가능한데 신변처리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면 다른 영역의 역량강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죠. 차라리 저희는 신변처리가 되는 도전 행동이 상당한 분이라도 그것에 대한 세팅은 돼 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내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인긴 해요.” (#02, 챌린지2)

(2) 의사소통능력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이용자

연구 참여자들은 의사소통능력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는 발달장애인은 최중증에 해당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 예를 들면, 구두로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하여 소리나 몸짓으로만 의사표현이 가능한 발달장애 이용자를 고난이도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의사소통의 문제는 단순히 이용자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를 넘어

서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게 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리고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는 발달장애 이용자들은 자신의 요구 사항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전적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가능여부는 최종중 발달장애인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소통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그게 핵심이에요.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전적 행동을 통해 뭔가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죠.” (#02, 평교)

한편, 기관유형에 따라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중요성은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는 기능적 특성 상 작업지시에 따른 작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의사소통능력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저희가 원하는 건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작업지시를 그래도 좀 따를 수 있고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훈련생 또는 근로자였으면 좋겠죠. 그리고 서로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예를 들어서 타인을 가해한다거나 또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렇지 않다라면 시설이용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03, 직재)

(3) 중복장애나 건강문제를 동반한 이용자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 외 정신장애,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신체장애 등을 동반한 발달장애 이용자도 최종중 장애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정신장애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실천역량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중복장애나 건강문제를 동반한 발달장애인들은 기관과 종사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약도 이만큼 달고 다니시고 위도 아프고 장이 안 좋으시고 계속 아프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밤새도록 아파서 잠을 못 잤으면 낮에 자야 되는데 챌린지에 와야 되기 때문에 깨워서 오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종결할 수밖에 없었어요.(#05, 챌린지2)

“정신적 장애가 같이 동반된 발달장애인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정신적인 문제는 저희가 그런 쪽에는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누구도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01, 평교)

“얼마 전에 식사를 하다가 경기를 하셔서 갑자기 쓰러져서 저희가 응급상황이 온 적이 있었는데 물론 잘 대처하긴 했고, 그건 저희들이 당연히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긴 하나 이로 인해서 우리 교사들이 거기에 맞게 추후 발생하는 많은 위험한 상황 때문에 걱정이예요.” (#01, 직재)

(4)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이용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이용자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신변처리가 어렵거나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는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일상생활훈련이나 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를 통해서 대처가 가능하지만 자타해 등의 도전적 행동은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종사자의 소진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적 행동을 나타내는 발달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배제되기 쉽고,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종결로 이어져 여러 기관들을 떠도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고 했다.

“고령이나 이런 쪽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데 너무 도전적 행동이 심한 친구들을 받으면 특히 저희같은 단독시설이나 종사자가 부족한 곳에서는 나머지 친구들이 방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염려가 되고요.” (#05, 주간보호)

“일상생활 훈련이나 의사소통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것은 저희 사회복지사가 계속 훈련을 하고 발전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도전적 행동이 되게 심하신 분들은 저희의 인력과 자원으로는 힘들지 않나 생각도 하거든요.” (#04, 평교)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긴 하나, 교사들이 거기에 맞게 또 추후 발생하는 많은 위험한 상황들이 문제예요. (#01, 직재)

하지만 도전적 행동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행동유형, 빈도, 강도 등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해당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면, 전조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종사자들이 사전개입을 통해 중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처하기가 더욱 어려운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해타해 행동뿐만 아니라 타인 만지기, 자기신체 노출하기 등과 같은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다른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운 집단으로 여겨졌다.

“보통 전조증상이 원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분들은 저희도 정말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고. 강박과 같은 경우는 원인파악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원인파악이 아예 안 되는 분들, 가정에서도 원인을 모르시는 분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소거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어려운 거죠.” (#03, 평교)

“뭔가 이렇게 자해하거나 타해하거나 꼭 그런 도전적 행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 큰 성인 남자들이 저희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지거나 옷을 들추거나 이런 것들이 비밀비재하게 있으니까요.” (#03, 주간보호)

“바지에 손을 집어넣는 등의 성적 행동, 이런 게 계속 패턴이 되고 하루 종일 케어하다 보면 직원은 거의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누굴 때리지 않더라도 성적 행동 하나만으로 여러 사람들을 그만두고 싶게 만들어요.” (#04, 평교)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나 보호자의 비협조인 성향도 이들 집단을 어려운 대상으로 인식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언급되었다. 행동중재를 위해서는 보호자와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일부 부모들은 자녀의 도전적 행동을 처음부터 숨기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도전적 행동 완화를 위해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보호자들도 있다고 했다.

“이용자들을 여기서 단순하게 보호하고 돌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전이할 수 있는 상태로 역량을 끌어올려 주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말하시면서 ‘우리 애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시키면 도전 행동이 더 많이 일어난다’ 하시는 분도 있고, 정보를 처음부터 다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나중에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상황들도 많은 것 같아요.” (#01, 챌린지)

“20대 초반에 있는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약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우호적이신데, 30대 넘어가는 친구들은 약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셔서 훨씬 더 저희가 접근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관계형성은 차라리 30대 넘어간 친구들하고 어머님들하고 더 잘돼 있는데 투약의 문제에서는 접근이 너무 어렵고 너무 조심스럽고요.” (#03, 주간보호)

3)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제약요인

(1) 종사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실천역량 부족

연구 참여자들은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거부 문제는 장애특성뿐만 아니라 이용시설

의 상황적 요소와도 맞물려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나타냈다. 그리고 최종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거부 of 가장 큰 이유로 종사자들의 대처능력 부족을 꼽았다. 과거와 달리 종사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훈련의 기회는 기관유형마다 차이가 있다고 했다.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 대비 그러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많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저희 작업장 직원들은 아직까지는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근로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트레이닝이 아직은 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인 저도 그런 상황에 대한 적절한 어떤 슈퍼비전을 주는 거에도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요. 직원들이 어쨌든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그냥 말이 지원이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상황에서의 대처 정도만 하는 거죠.” (#02, 직재)

다른 기관유형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기회가 많기는 하나,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교체로 인해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 최종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의 경우에 사업초기에 도전적 행동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되었으나, 당시에 있었던 인력이 거의 다 그만둔 상태이고, 그 빈자리는 신규 종사자들로 채워진 상태라고 했다.

“초창기에 챌린지사업 시작했을 때는 교육이 정말 많았거든요. 도전적 행동이란 말이 나온지도 얼마 안됐고 하다 보니까 수요일마다 교육을 계속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점차 기관이 20여개로 늘어나고, 2기가 생기고 이리다 보니까 교육체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1기 했던 분들이 퇴사를 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 거죠.” (#03, 챌린지2)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구분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챌린지에 와계셨구나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팀장이 일일이 다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04, 챌린지2)

(2) 열악한 시설환경

연구 참여자들은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을 제약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시설환경을 꼽았다. 예를 들면,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신체적 장애를 동반한 발달장애인

의 경우 시설의 물리적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단 한 번도 거부한 적은 없는데 거부하는 케이스가 휠체어 타는 친구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휠체어 친구들은 신변처리를 하려면 침상이나 이런 데서 해줘야 하는데 그게 상황이 안돼요.”
(#03, 주간보호)

이외에도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은 장애특성 그 자체보다는 시설환경이 적합하지 않아서 서비스 거부나 종결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밀집도가 낮은 넓은 공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음, 빛 등 도전적 행동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이용자가 도전적 행동을 보일 때 다른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피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시설들은 그러한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공간이 넓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간보호시설이 공간이 좁은 곳이 많아요. 그래서 나눠서 한다는 건 저희는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도전적 행동이 있는 분들은 더욱 힘들지 않을까 생각돼요.” (#04, 주간보호)

“저희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저희 챌린지실 공간이 딱 이 정도 공간이에요. 여기서 도전적 행동이 터지면 대피할 공간이 없어요. 그럼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갔을 때는 또 바깥 환경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02, 챌린지2)

“감각적인 부분, 소리라던가 빛의 작용에 의해서 본인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시설에 그런 장소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제약이 있어요.”
(#02, 평교)

(3) 기존 이용자와 융화의 어려움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기존 이용자와의 융화될 수 있는지 여부가 입소기준에 중대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이용자들이 신규로 이용하게 되면 기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관에서 입소를 허락하게 되더라도 기존 이용자들의 보호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서비스 거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도전적 행동이 있는 친구들을 아예 거부한다기보다 거부할 수는 없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전적 행동이 없는 친구는 어디에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웬만하면 공동생활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01, 주간보호)

“기존의 이용자하고 잘 융화될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저는 어머님들한테 상담할 때 말씀드리거든요. 물론 이 친구가 시설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 가족이 되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친구들도 중요하다고, 다른 이용자분들이 여기 잘 적응해서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는데 새로운 친구가 들어와서, 당연히 불편한 점이 생기겠지만, 그 친구 때문에 너무 많은 갈등이 생기면 어머님이 만약에 우리 시설에 기존에 계셨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바라보시겠냐고요.” (#03, 주간보호)

(4) 주거지와 이용시설 간의 물리적 거리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살고 있는 장소와 이용시설이 위치해 있는 장소 사이의 물리적 거리도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이동에 제약이 있거나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통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 이용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관까지 오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데리고 오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세요.” (#04, 챌린지2)

“지역별로 일단 1차적으로 좀 달라요. 어떤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고,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들은 적는데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분들은 많고 이런 편차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좋은 기관으로만 몰리기도 하고요.” (#03, 평교)

4)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실천현장에서의 개선과제

(1) 서비스 지원방식의 다양화

연구 참여자들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 돌봄 및 활동 시설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크게

전담기관 집중지원형, 장애정도 및 돌봄 요구 수준에 따른 차등화 지원방식, 1:1 개인별 지원 방식, 개인별 및 그룹 혼합 지원방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① 전담기관 집중지원 방식

전담기관 집중지원 방식은 서울시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 기관과 같이 도전적 행동 등을 가진 발달장애인만으로 이용자를 한정하여 독립된 공간에서 집중적인 주간 돌봄 및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원방식의 장점으로 는 도전적 행동 등의 대처에 훈련된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일대일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챌린지처럼 전담기관에서 정말 심한 증증을 케어해준다면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도전적 행동이 심한 이용자에게는 1명의 사회복지사가 투입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3명, 4명이 투입돼도 힘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는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이 지원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04, 주간보호)

하지만 전담기관 집중지원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이용이력이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낙인감이 심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즉,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을 거친 이용자들은 도전적 행동이 매우 심한 이들이라는 낙인을 갖게 되어 나중에 다른 기관으로의 전이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종사자의 돌봄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전담기관에 소속된 종사자들은 업무강도가 심한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장기간 버텨내기가 쉽지 않아 이직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챌린지(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기관)를 갔다가 다른 기관 전이를 한다고 하면 ‘챌린지?’ 하면서 약간의 그런 낙인도 있고, 선생님들조차도 디프레스트된 부분들도 있고요. 기관 안에서도 ‘챌린지는 많이 다치고 힘든 부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01, 챌린지2)

“그 종사자는 무슨 죄인가요. 그리고 전담기관 집중지원 모델에서의 인력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상상이 좀 잘 안되고요.” (#03, 직재)

② 장애정도 및 돌봄 요구 수준에 따른 차등화 지원 방식

장애정도 및 돌봄 요구 수준에 따른 차등화 지원방식은 동일 기관 내에서 이용자들의 장애 정도와 돌봄 요구 수준에 따라 인력배치 기준과 서비스의 강도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동일 운영기관 내에서 도전적 행동이 심한 이용자들로 구성된 반과 도전적 행동이 덜한 이용자들로 구성된 반을 구분하여 그에 맞게 인력 배치 기준, 서비스의 내용을 달리 적용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지원방식은 이용자의 상태 변화 및 욕구에 맞춰서 유연하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와 운영자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저희는 자립반, 비전반 이렇게 해서 3개 반, 2개 반 나뉘져 있고, 오후 시간 때는 말 그대로 막 섞여서 운영을 해요. 그러면 자기주도활동이라고 해서 본인이 요일별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누구랑 하고 싶은지, 어떤 활동하고 싶은지, 카페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그룹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의 조금은 유연한 운영이 굉장히 만족도를 높이는 것 같고, 참여율도 높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4, 평균)

반면,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동일 기관 내에서 경증반과 중증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면 보호자들이 선호하지 않을 수 있고, 종사자들 역시 중증반을 맡게 된다면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 방식은 이용자들 간의 장애정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가능한데, 실제로는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구분이 커다란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피라미드형 모델은 보호자분들이 딱히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고, 담당 교사들도 마찬가지로일 것 같아요. 교사들 어느 누가 중증반을 굳이 가고 싶어 할까요. 이걸 우선 종사자들부터가 반향이 있을 것 같아요. (#03, 평균)

“사실은 저희 시설은 여섯 개 반이긴 한데, 한 반은 좀 취업가능한 반, 또 한 반은 어떤 반, 이렇게 구분이 되면 좋겠는데 모두 다 평이해요. 이러니 처음에 가졌던 구상이 다 틀어졌고 선별해 보니까 전부 그런 분들만 오셨어요. 무작위로 추첨을 하다 보니까 전혀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05, 평균)

③ 개인별 지원방식

개인별 지원방식은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개인별 지원방식처럼 이용자 1명과 종사자 1명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운영방식의 이점은 이용자 개인의 장애정도와 욕구에 맞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이용자 개인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룹형 지원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시간과 공간의 촘촘한 지원인 것 같아요. 그냥 프로그램에 5명 넣고 이런 게 아니라 개별 시간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용자 개인별 지원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지원이 분명한거거든요.” (#02, 주간보호)

“챌린지사업 세팅 자체가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담당자로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표는 4명이 다 달라요. 개별화 서비스에 맞게끔 돼 있어요.” (#02, 챌린지2)

다만, 개인별 지원방식은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개인별 지원방식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은 이용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다른 기관의 그룹형 지원방식으로 옮겨갔을 때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써 지적되었다. 즉, 개인별 지원방식에 익숙해진 이용자가 그룹형 지원방식으로 옮겨갔을 때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협소한 공간과 밀집도 높은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가 챌린지에서 너무 개별화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30명이 있는 데를 오시다 보니까 한 1년은 맨날 두들겨 부시는데 죽겠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본인이 규칙대로만 하면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었는데 저희한테 오다 보니 그룹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02, 평균)

④ 개인별 및 그룹 혼합 지원방식

앞서 언급된 지원방식들의 대안으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별 및 그룹 혼합 지원방식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개인별 및 그룹 혼합 지원방식은 이용자와 종사자를 1:1로 매칭하여 지원하되,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개인별로만 운영하지 않고 집단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운영방식의 장점으로는 다른 이용자들과의 교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행동 모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종사자 입장에서도 1:1 개인별 지원방식의 경우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함께 공존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합류하고. 지금 한 명은 일주일에 두 시간만 합류할 수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온종일 합류해요. 또 한 사람은 오전에 한 시간 반, 오후에 한 시간 정도를 합류하는데 그래서 지금 잘 지내고 있거든요.” (#05, 챌린지2)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 이런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인들이 어떻게 보면 또 모방을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거기에서 어떤 성취욕이라든가 관심을 받고 싶은 그런 것을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쪽은 개별에 대한 지원 모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3, 평교)

(2) 이용기간 제한의 폐지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직업재활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시설 이용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발달장애인들은 낯선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서비스 거부도 흔히 겪기 때문에 이용기간 제한이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이었다.

“실제적으로 대기문제가 몰렸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시기가 인근의 평생교육센터 이용이 끝날 시기랑 맞물렸어요. 주간보호센터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용기간에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저희는 어쨌든 보호자와 같이 지원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01, 주간보호)

“부모님들이 평교센터의 제한기간 5년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셔서 자꾸 차기 이용기관을 고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나면 나가시고 싶어 하세요. 평교센터가 너무 좋기는 하지만 더 이상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에 자리가 나면 거기는 이용기간이 제한이 없는 기관이 많다 보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주간보호를 선택하시더라고요.” (#02, 평교)

그리고 최근 다양한 주간 돌봄 및 활동 시설과 사회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일부 이용시설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기간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기자 적체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순환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용자가 이용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당연히 줘야지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역으로 이용제한을 다 풀면 본인이나 어머님들이 다 선택하지 않을까요? 평교센터 좋다고 해도 10년, 15년 다닐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주간활동도 체계가 잡히면 ‘내 아이는 여기가 더 맞아’라고 선택할 수 있는 걸 풀어놔야지요, 평교는 5년, 주간보호는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이게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01, 평교)

“예전처럼 공급이 좀 부족하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을 때에 특정인에게만 이용 혜택을 장기간 줄 수 없다 해서 제한을 두고 하는 건데. 지금은 여러 가지 복지환경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02, 직재)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 사이에서 이용기간 제한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그 첫 번째 이유로 과거 대비 주간 돌봄 및 활동 시설이나 사회서비스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이용기간 제한을 완전히 풀게 되면 대기자 적체 현상이 나타나 신규 이용희망 이용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주간 돌봄 및 활동 서비스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이용기간 제한을 푸는 것은 시기상조로 여겨졌다.

“지역 간 편차가 커요. 000 이런 데는 1명 모집하는데 10명 와요.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제한을 풀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이미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으니깐. 그러려면 이용기간을 5년으로 해서 순환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자가 없을 시에는 종결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요.” (#04, 평교)

“신규 참여자분들의 진입장벽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어서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있을 것 같아요.” (#02, 챌린지2)

“이용기간 제한은 사실 당사자와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고를 수 있는 데가 많으면 걱정 안 하시겠죠. 수요에 맞게 공급이 충분히 된다고 하면 이용기간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못 받아주는 데가 있고, 많은 분들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04, 직재)

또 다른 이유로는 이용자 입장에서 한 기관에 오래 머물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이용시설이 영구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생활시설처럼 변모될 수 있고, 시설들은 새로운 이용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리 하게 되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관의 운영목적 달성과 기관들 간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용기간 제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용기간 제한이 없으면 이용자에게는 정말 생활시설이 되는 거예요. 이 분이 10년, 15년 있어서 이 분의 자립이라든가, 이 분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보호자들은 아예 신경을 안 쓰거든요.” (#04, 평교)

“이용기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도 내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견제할 필요가 있고요. 챌린지 사업은 지역사회 전이가 목적인데, 여기에 그냥 계속 머물게 하는 것 또한 저희가 시설화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2, 챌린지2)

(3)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연구 참여자들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거부 문제의 핵심은 실천현장에서 이들을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달려있으며, 그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양질의 인력을 확보·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 인권·안전보호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①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

연구 참여자들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록 일부 기관유형에서는 협회나 협의체 주관으로 도전적 행동 등 관련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그렇지 않은 기관유형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도 종사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기관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 소속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도전적 행동 대처를 위한 이론 및 실무교육, 종사자

인권보호 교육 등 실무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꾸준한 학습과 직원교육이 답인 것 같아요. 어떤 사고를 가지고 그들을 지원하는가에 따라서 당사자의 삶의 전반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져요” (#02, 평교)

“노원구에 있는 몇몇 주간보호센터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도전적 행동에 관한 것들이라든지 인권 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교육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없는 한 현실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01, 주간보호)

② 최종증 장애인 다수 이용시설의 인력 증원

기관유형에 상관없이 인력의 부족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언급되었으며, 그 문제의 핵심은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인력배치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었다. 최종증 발달장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돌봄이 용이한 이용자들을 선별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만, 기관유형에 따라 인력 증원이 필요한 배경에 있어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최종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기관의 경우, 종사자 1명 당 이용자 1~2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비해 인력배치 기준이 나은 편이었다. 하지만 종사자 1명이 개인사정으로 부재한 상황이거나 3~4명의 이용자 중 어느 누군가가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종사자 1명이 홀로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기관유형의 경우에는 최종증 발달장애인 이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 인력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자를 선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기본적으로 평교는 12명,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되게 폭력적이에요. 종사자 12명에 팀장이 1명이라는 건 기형적인 조직구조인데 이게 계속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팀장 한명이 어떻게 교사를 겸직하면서 사무행정을 볼 수 있고 슈퍼비전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요.” (#04, 평교)

“신변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도전적 행동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직원 1인이 3명을 감당하기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력이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이런 부분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인력이 더 투입될 필요가 있어서. 그냥 무 자르듯이 ‘평균은 1인당 3명이야’, ‘주간보호는 1인당 얼마야’ 이런 식으로 딱 정형화된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5, 평교)

비록 일부 기관들에서는 사회복지요원이나 보람일자리 등 보조 인력을 지원받고 있기는 하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그리고 오히려 훈련되지 않은 보조 인력이 도전적 행동 등을 보이는 이용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오히려 신경 써야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기도 한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아예 보조 인력을 이용하지 않은 기관들도 있다고 했다.

“저희는 사회복지요원은 도전적 행동에 투입을 못해요. 병무청에서 아주 심각하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사회복지요원들은 그냥 정말 단순한 일만 시켜라.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자원 봉사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람일자리 수급도 원활하지 않아요. 정원이 4명인데 4명을 못 채워요.” (#02, 챗린지2)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50플러스분들도 보호해야 돼요. 직원이 다치더라도 오히려 그 사람들을 빼내야 되는 상황이죠.” (#05, 챗린지2)

③ 업무강도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마련

연구 참여자들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업무강도는 장애정도가 경한 장애인을 돌보는 것에 비해서 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업무강도에 상응하는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숙련된 종사자를 채용 및 유지할 수 없으며, 그것은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이용자들이 많은 기관들의 경우에는 양질의 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금방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단독시설이어서 5호봉 이상으로 묶어놓으면 누구보고 오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직원들이 숙련도를 쌓을 수 있게 5급, 5호봉이나 이것을 폐지하고 그 이상 될 수 있는 직원들을 뽑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입장에서 차라리 직원 1명을 새로 더 뽑는 것보다 숙련도 있는 직원 1명을 더 뽑아서 정예화해서 가고 싶어요.” (#05, 주간보호)

“저희 기관은 거의 70% 정도가 1년에서 3년 미만의 신규 선생님들이란 말이죠. 이번에 한분 나가면서 새로운 분을 구했는데 올해 졸업생이에요. 최중증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고 스킬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몸으로 체득을 하면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것을 배워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나마 조금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시고 이러니까.” (#01, 챌린지2)

“처우나 보상 자체도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시설이나 다 똑같잖아요. 모든 게 똑같다면 이분들이 센터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좀 더 편하거나, 그리고 장애인을 케어하면서 뭔가 교육적인 걸 하더라도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을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03, 평교)

따라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것이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면 단기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산수당과 같은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000에 평교가 하나 생기는데 거기서는 위험수당을 준대요. 수당은 적겠지만 평교 직원들에게 어쨌든 비법정시설이고 하니까 위험수당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01, 평교)

“도전적 행동이라든가 위험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직원이잖아요. 위험수당 같은 걸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05, 챌린지2)

④ 대체인력 지원

연구 참여자들은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이용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종사자가 신체적 부상 및 상해를 입거나 피로누적 등으로 인해 휴식이나 병가가 필요할 때 대체인력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부상 등으로 인해 종사자가 산재보험 처리된 경우에도 기관에서 단기간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었다. 그리고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교육에 참석을 하게 되면 남은 직원이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참여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직원이 이용자한테 팔을 물렸는데 도와주러 가지만 근무에서 빼주고 대체할 수는 없는 상황이 그 직원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다쳤으니 계속 그 안에서 마음도 힘들고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그래도 같이 있으라고 하기에는 그 상황이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05, 챌린지2)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직원하고 이용자하고 분리할 수 있는 조건이 분명히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실상 어떻게 분리 조치할 것이냐. 그리고 어쨌든 직원이 그런 상황이 있어서 충격을

받았고, 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집에 보내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직원이 가면 나머지 업무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인 거잖아요.” (#03, 주간보호)

“손목이 나갔거나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대체휴가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병가를 줄 수도 없고, 대체인력이 올 수도 없는 이 구조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02, 평교)

“직원이 교육을 받게 되면 교실에 못 들어가요. 대체인력 지원이 없다 보니까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던가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03, 평교)

⑤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적 지원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 이용자를 지원하는 기관에 소속된 종사자들은 육체적·심리적 업무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피로누적으로 소진되기 쉽고, 이것이 이·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인력의 상실로 이어져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종사자의 소진과 이직을 예방을 위한 심리적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기는 힘이 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한계에 자꾸 부딪히는데 그런 한계나 갈등에 대해서 그때그때 다 해결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여기서 더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걸 해야 되나. 월급은 똑같은데’ 하는거죠.” (#01, 챌린지2)

“업무 중에 다쳐서 그만두시는 케이스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기관 내에서 대상자랑 씨름을 할 때 다른 직원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들, 이런 것들도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03, 평교)

⑥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체계 마련

장애정도가 심하거나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이용자가 다치거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체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들이 민원제기를 넘어서 법률적인 소송조치를 취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소송과정이나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은 기관 및 종사자가 모두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최종 장애인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면접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종사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일부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 맞는 사회복지사도 되게 많거든요. 도전적 행동이 있는 이용자들을 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도 보호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01, 주간보호)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변호사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노무사도 다 기관이나 법인에 있잖아요. 그런 법적인 지원 체계가 있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03, 주간보호)

“뭔가 크고 작은 일들이 항상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지원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제가 먼저 움직여서 종사자를 보호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위험에 노출됐을 때 보호체계가 작동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01, 평교)

“어떤 때는 경찰서에서 와서 묻는데 너무 화가 나고 초라해지더라고요.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하고.” (#01, 직재)

3 소결

본 장에서는 현장실무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실천현장에서의 어려움, 서비스 접근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보완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초점집단면접조사(FGI)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의 이용자 특성 및 욕구의 다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 이용자들의 고령화·중증화 및 욕구의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순 돌봄 외에 건강관리, 일상적인 활동 지원, 취업 지원, 자립 및 주거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종사자들은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전문성을 넘어서는 역할을 요구받는 상황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소진으로 이·퇴직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념정의 및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현장실무자들은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혼자서 신변처리가 어렵고,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고, 발달장애 외 중복장애나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이용자를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기관유형별 현장실무자들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대체적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현장실무자들의 경우에는 신변처리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거론한 반면,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소속 종사자들은 신변처리능력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도전적 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상관없이 모든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해당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념을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하고 정책 및 서비스 대상자를 명확하기 위해서는 학계·현장·정부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의 서비스 접근성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거부나 기피 현상은 장애 특성 외에도 서비스 제공기관의 상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잦은 인력교체로 인한 종사자의 실천역량 부족, 시설환경의 열악성, 기존 이용자와 융화의 어려움, 물리적 거리의 접근성 제약 등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담기관 집중지원 방식, 장애정도 및 돌봄 요구 수준에 따른 차등화 지원방식, 일대일 개인별 지원방식, 개인별 및 그룹 혼합 지원방식 등 서비스 지원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안정성 담보를 위해 이용기간의 제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질의 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해서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 기존 시설의 인력 증원, 업무 특성을 반영한 가산수당 지급, 대체인력 지원, 종사자의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적 지원,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체계 마련 등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Seoul
Welfare
Foundation

www.welfare.seoul.kr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함의

본 연구는 서울시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서 발달장애인 인구동향과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 운영현황 진단을 통해 서울시 발달장애인 정책 환경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 관할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실태를 살펴보고, 관련 기관 소속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과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중증화

서울시 발달장애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과 동시에 고령화·중증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 등록 발달장애인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달장애인 수는 2015년 29,447명(7.5%)에서 2022년 35,125명(9.0%)으로 19.3%(5,67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발달장애인 내 장애유형별 비중에 있어서도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자폐성장애인의 비중이 2015년 16.2%에서 2022년 21.3%로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자폐성 장애인의 주간 돌봄 및 활동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서울시 발달장애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외에도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

음이 발견되었다. 2015년 이후 연령대별 분포율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10대는 2015년 23.4%에서 2022년 18.7%, 20대는 26.7%에서 2022년 25.8%로 각각 감소한 반면에 3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달장애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 소속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언급되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현장실무자들은 최근 이용자들의 고령화 현상을 체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화에 따른 기능저하를 보이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전 대비 종사자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서울시 발달장애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함께 중증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는 발달장애인 내 자폐성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대비 자폐성 장애인이 의사소통능력 수준이 저조한 편이며(김성희 외, 2020),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사례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aría, Domingo and Araceli, 2023).

발달장애 인구의 중증화 현상이 나타나는 또 다른 원인은 고령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존 발달장애에 더해 노화에 따른 기능 및 인지 능력의 저하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비장애 인구 대비 이른 시기에 조기노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현승, 2021).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발달장애 인구의 중증화 현상은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젊은 연령층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은 성인발달장애 인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복지일자리 등의 새로운 대체서비스로 유입되고, 고령·중증 발달장애인은 전통적인 시설 기반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에 남아 있거나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간 돌봄 및 이용시설의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특성 변화를 반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시설 기반 주간 돌봄 및 활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기관은 142개소, 충족률은 91.1%, 부족 인원은 51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4종 이용시설 가운데 정원 대비 현원 부족 충족율은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상대

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발달장애인들의 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을 지적한 선행연구와 상반된 것이기에 주목되는 부분이다(서원선, 최복천, 이상준, 2021).

전통적인 시설 기반 주간 돌봄 및 활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짐작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최근 다양한 대체 서비스가 새롭게 생겨났다는 점이다. 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일자리사업(예시: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이 새롭게 생겨나고 대상자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기존 시설 기반 주간 돌봄 및 활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면접조사에 참여한 현장실무자들은 최근 시설 기반 주간 돌봄 및 활동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많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 모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기관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시설 기반 이용시설의 이용자들이 사회서비스 바우처나 장애인 일자리로 이동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짐작해볼 수 있는 것은 시설 기반 이용시설의 경우 이용료 부담이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이용시설 이용료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수준이거나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도 이용자와 지원인력이 일대일로 지원되거나 소그룹의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용자 개개인의 장애정도와 선호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존재한다.

시설 기반 주간 돌봄 및 활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화는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입장에서 볼 때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주간 돌봄 및 활동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시설 기반 주간 돌봄 및 활동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재구조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주간 돌보 및 활동 서비스와 시설 기반 주간 돌봄 및 활동 서비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차별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3)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규모와 서비스 이용 장벽요인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적 행동 등을 가진 최종증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 주간 돌봄 및 활동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제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주간 돌봄 및 활동 시설의 이용자 가운데 ‘구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며, 도전적 행동’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 이용자 규모는 9.6%(479명)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이 31.0%로 가장 많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3.1%,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8.7%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로 최중증 발달장애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발달장애인 중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2022년 말 기준 서울시 등록 발달장애인은 35,125명, 이중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약 1,760명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 가운데 주간 돌봄 및 활동 시설을 이용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약 27%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약 1,280명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거절을 당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상당수는 가족의 전적인 돌봄에 의존하여 지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에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어서 강도 높은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기존 서비스 지원체계 이용이 어려운 인구집단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미옥, 2023; Emerson and Enfield, 2014). 본 연구에서도 ‘도전적 행동 여부’(56.9%)와 ‘신변처리 가능여부’(41.6%)가 이용시설 입사심사 시 중요한 고려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기관의 31.2%는 ‘도전적 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을 타 시설 의뢰하거나 입소 거절한 경험이 있으며, 비자의적 서비스 종결한 경우가 있는 경우 주된 사유가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다른 이용자의 안전문제’가 26.0%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특히 도전적 행동 등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은 주간 돌봄 및 활동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하게 되더라도 비자의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장애특성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실천역량 부족 및 잦은 인력 교체, 적합하지 않은 시설환경, 기존 이용자들과의 융화의 어려움, 물리적 거리의 접근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거부와 비자의적 서비스 종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심각한 수준의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기관 및 종사자 입장에서 부담이 상당하여 기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의 서비스 접근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이용시설의 물적·인적 보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4) 종사자의 소진에 따른 잦은 인력교체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담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실천경험을 갖춘 훈련된 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김미옥, 김고은, 2017; Petri et al., 2019). 이에 서울시는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 지원체계에서 서비스 배제를 겪어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양성·배치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종사하는 인력의 경우 업무강도가 매우 높아 소진에 이르기 쉽고, 이는 잦은 이·퇴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간 돌봄 및 활동 서비스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사자들의 현 기관 재직경력은 '1년 미만'(26.9%)과 '1년 이상 ~ 3년 미만'(28.3%)이 과반 이상이고, 평균 재직연수는 3.9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다수 이용 중에 있는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의 경우 1년 미만 종사자의 비중이 각각 36.7%, 33.3%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27.1%)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22.4%) 대비 약 10% 정도 높게 나타났고, 평균 재직기간 역시 최소 1.9년에서 최대 3.1년 정도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퇴사자를 살펴본 결과, 전체 기관의 퇴사자 969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원 대비 퇴사자 비율은 특히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대비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의 소진수준을 기관별로 살펴본 결과, 소진수준이 상위그룹에 속하는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기관도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다수 이용하는 기관에서 종사자의 소진에 따른 이·퇴직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현장실무자들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높은 업무강도로 인해 종사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력 채용이 쉽지 않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이·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보니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경험을 갖춘 인력이 없어서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 주된 원인으로 업무강도를 고려하지 않은 인력배치 기준과 임금수준, 대체인력의 부재, 종사자의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의 부재, 인권문제 발생 시 법률적 지원체계의 부재 등이 지목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와 유지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정책 제언

1) 이용기간 및 이용자 연령상한 제한의 단계적 폐지

혼자서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평생에 걸쳐 돌봄이 필요하고, 특히 도전적 행동 등을 가진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더욱 그러하다(김미옥, 김지혜, 김고은, 2019).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새로운 사람과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로 이동하거나 지원인력이 교체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들을 지원하는 인력의 입장에서라도 이용자의 이력과 성향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보다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서는 잦은 기관 및 인력의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의 상당수는 이용기간 및 이용자 연령상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은 주기적으로 새로운 기관을 찾아서 떠돌아 다녀야만 하는 상황이다. 조사에 참여한 시설 중 32.3%가 이용가능 기간을 3~10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용자의 연령상한이 있는 기관도 절반 이상(56.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기간과 이용자 연령상한에 제한을 두고 있는 주된 이유는 대기자 적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 이용자들이 이용기간이나 연령상한에 제한이 없이 계속 이용하게 된다면 신규 이용자들의 서비스 진입이 어려워 대기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이용자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기관이 과반(52.8%)을 차지하고, 정원 대비 현원 부족 인원수는 516명에 달하고 있다. 물론 본 조사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자연적인 입·퇴소 순환을 예측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최근 대체서비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 기반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에 대한 수요 감소의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의 이용기간과 이용자 연령상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조사대상 시설 중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도전적 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에게 개별화된 집중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도전적 행동을 완화하여 다른 서비스나 이용시설로의 전이를 돕는 완충제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이 어느 정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집중적인 지원을 통한 도전적 행동의

개선효과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용기간을 획일적으로 정해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선정기준 마련

「발달장애인법」이 개정되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긴 하였으나,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념정의는 후속과제로 남겨진 상태이다. 이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념의 등장으로 인해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김미옥, 2023). 즉,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선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은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으로 특정 발달장애인 집단을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명확한 개념 정의와 선정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DSM-V를 활용하여 중증(Sever)과 최중증(Profound)을 구분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하지만 국내에서는 학술적·행정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지자체들에서는 도전적 행동만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김미옥, 2023). 한편, 연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도전적 행동 외에도 일상생활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중복장애에 따른 기능제한 수준과 지원강도 수준을 고려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강정배, 박계신, 손희경, 2021; 김미옥, 2023). 본 연구에서도 혼자서 신변처리가 어려운 이용자, 의사소통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이용자, 발달장애 외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일상적 의료처치 등 건강문제를 동반한 이용자, 도전적 행동이 심한 경우가 실천현장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요소들을 모두 중복적으로 고려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단일 요소나 영역에서만 현저한 기능제약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정책대상의 규모를 추정하고,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전자처럼 모든 기준을 중첩적으로 고려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정책대상의 규모는 협소해지고, 선

정기준도 그만큼 복잡하고 까다로워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후자처럼 단일 요소나 기준만을 고려하게 된다면 정책대상 규모가 그만큼 커져서 예산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서비스 대상자의 범위가 모호해져서 표적화된 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념정의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학계·현장·정부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양질의 인력 양성 및 유지를 위한 개선과제

(1) 전문지식과 실천기술을 갖춘 인력의 양성

2024년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주간 활동 지원 서비스는 개인별 일대일 지원과 그룹 일대일 지원으로 구분되어 추진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23c).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중 주간 개인별 일대일 지원방식은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에 있는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룹형 1:1 지원은 기존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재편하여 2~3명의 이용자를 그룹으로 운영하되 일대일 전담인력을 매칭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운영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개인별 지원과 그룹형 지원 모두 이용자와 종사자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특히, 도전적 행동 등을 가진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대처역량에 따라 도전적 행동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기 때문에 올바른 태도,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McGill, 2014; Petri et al., 2019). 따라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현재 서울시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규모와 지원인력 상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2022년 말 기준 서울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담인력은 46명(개소당 2명),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235명으로 확인된다(서울시 내부 행정자료, 2023). 이들 기관의 이용자 규모는 각각 85명, 508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 기준으로도 일대일 돌봄 및 주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은 312명이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통해 나타났듯이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을 이용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수가 최소 480명, 서울시 전체 발달

장애 인구로 확대해보면 최소 1,760명(전체의 약 5%)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주간 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에 필요한 인력을 미리부터 양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2) 적정 인력배치 기준 마련

도전적 행동 등을 가진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성인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의 이용시설에서도 서비스 거부를 경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강정배, 박계신, 손희경, 2021; 김미옥, 2023). 이에 서울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및 낮활동 공백을 해소하고자 2017년부터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타 기관 또는 시설 이용을 거부당하거나 이용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외에도 학교 졸업 후 갈 곳 없는 성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연장교육을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이들 기관은 최중증 및 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 돌봄 및 활동 공백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인력 및 환경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이용시설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개별화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담인력 및 보조 인력과 이용자의 비율이 4:5로 정해져 있으며, 도전적 행동 대처를 위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담인력이 배치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경우에는 센터 당 이용인원은 30명, 인력배치 기준은 이용자와 교사 1:3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따라서 언뜻 보면 이들 시설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종사자 당 4명)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 당 10~12명)과 비교했을 때 인력배치 기준이 나은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자·타해 등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일대일 상시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이들 기관유형에 소속된 종사자의 소진수준이 다른 기관유형 소속 종사자 대비 유독 높았으며, 퇴사율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의 이용시설에도 적지 않은 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이용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전담시설로 한정하여 일대일 인력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이용시설 소속 종사자들의 업무부담은 해소될 수 없으며, 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기피와 종사자의 이탈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다른 시설에도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대체인력 지원

조사에 참여한 4종 시설 가운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경우, 특정 종사자가 휴가, 병가, 교육 참여 등의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체인력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종사자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가 결근을 하게 되면 나머지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의 경우 2명의 정규인력만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휴가나 교육 참여 등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남은 종사자 혼자서 모든 업무를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 소속 종사자들이 적절한 휴식을 통해 소진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필요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4) 가산수당 도입

면접조사에 참여한 현장실무자들은,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소속된 종사자들은 신규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이유로 열악한 보상체계를 언급하였다. 즉, 다른 이용시설 대비 업무강도는 높은 편이지만 임금수준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 시설은 노동시장에서 기피하는 일자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성인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에는 중증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인력의 경우 기본 서비스 단가에 더하여 가산수당³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 기반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 소속 종사자들은 별도의 가산수당이나 추가급여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기피하게 되고, 이들 기관에 소속된 종사자들은 업무강도가 낮은 기관으로 이직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김고은, 김영광, 2019). 따라서 이들 이용시설이 양질의 인력을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가산수당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9)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중증장애인은 시간당 3,000원,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최중증 발달장애인 1인 집중지원서비스는 기본단가의 150%를 지급하고 있음.

(5) 피해 보상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체계 마련

도전적 행동을 보이거나 발달장애 외 외상 등 신체적 장애를 가진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은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입과정이나 이동을 돕는 과정에서 신체적 상해를 입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유수진, 이은혜, 한정은, 2020). 또한 이용자가 자타해 행동을 보이는 상황에서 당사자나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신체적 개입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오해를 받는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에 따른 피해나 책임은 기관과 종사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부 및 서울시 차원에서 종사자의 피해 보상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나 심리적인 피해를 입은 종사자들에게 치료비 및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이용자 및 보호자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법률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이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 등과 같은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고은, 김영광. (2019).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이 종사자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 종사자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사회복지연구*, 10(3), 216-245.
- 강정배, 박계신, 손희경. (2021).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김미옥, 김고은. (2017).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에 관한 쟁점과 전망. *비판사회정책*, 56(56), 59-94.
- 김미옥, 최복천, 김동기, 이복실, 박광옥. (2018). 최종증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전북대학교*.
- 김미옥, 제철웅, 김지혜, 김고은, 정민아, 박은진, 김오송, 최선자, 문희원, 정은혜, 정준영, 노시경. (2019). 최종증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 사업 운영매뉴얼. *서울특별시·전북대학교*.
- 김미옥, 김지혜, 김고은. (2019). 도전 행동을 보이는 최종증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의 돌봄 경험: 서울시 최종증 낮활동 시범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49(49), 119-143.
- 김미옥. (2023).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2023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회 자료집.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김성희, 이민경, 오욱찬, 오다은, 황주희, 오미애, 김지민, 이연희, 강동욱, 권선진, 백은령, 윤상용, 이선우. (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희, 오욱찬, 이민경, 오다은, 오미애, 박영선, 박광옥, 이동석, 윤상용. (2022).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승, 이의정. (2020). 제2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2020-2025). *서울시복지재단*.
- 김현승. (2021).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발달장애인의 나이 들 지원 실천경험에 관한 연구 : 미지(未知)의 인구 집단. *한국장애인복지학*, 45(45), 5-35.
- 국무조정실. (2023).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성과 자료집*. 대한민국정부.
- 보건복지부. (2022).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3a).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세종: 보건복지부.
- _____. (2023b).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편성*. 세종: 보건복지부.
- _____. (2023c).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추진 설명자료*. 세종: 보건복지부.
- _____. (2023d).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_____. (2023e).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2017). 제1기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16-2020).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2021). 제2기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1-2025).
- 서원선, 최복천, 이상준. (2021). 성인발달장애인 낮시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유수진, 이은혜, 한정은. (2020). 성인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관련 현황 및 종사자의 인식에 대한 연구: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
- 최복천, 변용찬, 황주희, 김미옥, 박희찬, 심석순, 오다은. (2016). 발달장애인 통합적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외문헌]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Washington. Arlington, VA.
- Emerson, E. and Enfield, S. L. (2014). Challenging Behaviou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ía, A. C., Domingo, G. V., and Araceli, P. (2023). Challenging behaviors in adul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nd intellectual disability: A differential analysis from a transdiagnostic approach.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https://doi.org/10.1177/17446295231184>.
- McGill, P. (2014). Interventions and supports for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challenging behaviours: Workshop 1 of 4 Learning Disability Services.
- Petri, C. M., Linda, M. Z., Linda, G., and Anna, T. B. (2019). Evaluating a staff training program on the interaction between staff and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nd challenging behaviour: An observational study. Journal of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44(2), 131-138.

[웹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law.go.kr/>
-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s://kosis.kr/>
-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 <https://www.data.go.kr/>

서울시복지재단-2023-45

서울시 발달장애인 안심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주간 돌봄 및 활동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3년 11월 30일
발행처 서울시복지재단
발행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상철
편집인 류명석

주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전화 1670-5755
팩스 02-6353-0419
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
인쇄업체 (주)케이에스센세이션
I S B N 978-89-6298-845-1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2023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우 04147)

www.welfare.seoul.kr

비매품/무료

93330



9 788962 988451

ISBN 978-89-6298-845-1